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367-0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2014. 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용역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최 인 호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금 태 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공동연구자 김 현 준 (영남대학교 교수)

 문 정 훈 (서울대학교 교수)

 송 재 일 (명지대학교 교수)

 이 진 수 (영남대학교 교수)

 이 철 (아주대학교 교수)

 권 세 훈 (부산디지털대학교 교수)

 서 보 건 (영남대학교 교수)

 박 응 광 (영남대학교 연구원)

 김 상 무 (영남대학교 연구원)

 박 우 석 (아주대학교 연구원)

 박 지 섭 (아주대학교 연구원)

 진 상 형 (아주대학교 연구원)

목 차

제1편 서론	1
제2편 정보화 격차 현황	7
제3편 외국 법제	27
제4편 법률(안) 및 그 제안이유	147
참고문헌	317
부록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333
부록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347
부록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355
부록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3단 비교 ..	361



제1편 서론

제1편 서론

1. 연구의 배경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ICT 융·복합에 기초한 창조농업을 토대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음.
- 이러한 농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ICT 융·복합 및 스마트농정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이 필요함.
-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정보화 수준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
 - ‘11년 농업인의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은 63.6%(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격차 현황: [참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진시킴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국가적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바, 현행 정보화 관련 법률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2. 연구의 필요성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에 관한 입법 필요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특유한 정보화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종래 정보화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토대로 개별 정부부처의 정보화훈령을 통하여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일반법만으로는 개별부문별 정보화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보완하는 개별 정보화 입법이 필요함.
 - 예: 국방정보화를 위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화 역시 그 고유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정보화입법이 요청됨.
 - WTO 등의 개방화로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정보화가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
 - 농촌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농촌의 정보화는 이를 위한 핵심방안이 될 수 있음.
- 국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보화훈령만으로는 정보화와 관련된 대국민적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없음.

(2)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식품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농식품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서의 농식품업 발전의 초석이 되며 이를 지원·육성하는 법률이 필요함.
- 농식품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은 일반법인 「산업융합촉진법」이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농식품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소프트웨어·콘텐츠·정보시스템 및 농식품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은 연구·개발 및 지원 방법에 특수성이 있음.
- 농식품 유통과 소비에 관한 정보화의 지원, 특히 농식품전자상거래를 지원 근거가 필요함.

(3) 농업·농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노력 약화.
- 농업·농촌의 지역적 낙후성으로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이용 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함.
- 정보화 낙후 지역이나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위한 근거가 필요함.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 관련, 국내 법률 검토

- 「국가정보화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舊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과 관련된 국내의 법률 전반을 검토하였음.
- 국내 법률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과 관련된 일부 내용들이 산재하여 있으나, 국가 전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책수단 중의 일부 또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 정도로만 다루어지고 있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
- 특히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특히 농업과 식품산업 분야에서의 ICT 융·복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현행 법률체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음.

(2) 해외 입법·정책사례 조사연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 관련, OECD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입법 사례와 정책사례를 조사하였음 .
- 연구조사 결과,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 각국에서는 농촌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개발과 농촌브로드밴드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농업·농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보다 강력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마련

○ 위와 같은 문제인식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함.

○ 정보화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법률안 제7조), 정보화촉진위원회(제9조), 정보화촉진전문위원회(제10조), 정보화책임관(제11조)의 구성 및 운영, 정보의 공동 활용(제15조) 및 표준화(제16조) 등

○ ICT 융·복합 추진

- 농업인들이 첨단 IT융합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유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 IT융합 지원체계 마련(제26조)
- 농업인 대상 IT기술 교육 확대(법률안 제18조), 전자상거래 지원(제28조) 등을 통한 사이버 농업인 육성 지원 추진
- SW 개발(제24조), 콘텐츠 개발(제25조), 포탈(Okdab 등)을 통한 농업 생산, 경영 및 유통에 필요한 정보서비스 활성화(제27조)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정책 추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농촌정보화 추진

- 농촌의 인터넷 및 무선통신망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원(제30조), 정보격차의 해소(제31조), 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제32조), 농업인에 대한 통신비용 감면(제33조), 무료 데이터 전송을 위한 지원(제34조) 등을 규정

(4) 하위법령안 제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대통령령(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농림식품부장관령(안)



제2편 정보화 격차 현황

제2편 정보화 격차 현황

1. 개 요

농촌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실제로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정보화 격차 현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12년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동 조사에서는 접근격차, 역량격차, 활용격차라는 3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일반 국민 대비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였다. ‘접근격차’란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가능성도의 차이를 지수화한 것이고, ‘역량격차’는 컴퓨터 기반 인터넷 기본용도별 이용기술(컴퓨터 환경설정, 정보검색, 이메일, 전자거래 등) 보유정도의 차이를, ‘활용격차’는 컴퓨터 기반 인터넷 이용시간 및 기본용도별 이용정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의 도움 정도 등을 각 지수화한 것이다.

2012년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격차 조사결과 중 일반국민들과 대비한 농어민들의 정보화 수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1. 정보화 수준 조사결과(%)

구 분	2004	2010	2012
총 합	33.8	61.8	64.8
접 근	51.3	86.2	87.5
역 량	18.3	37.2	39.0
활 용	22.4	45.0	49.8
양적활용	23.5	46.6	51.3
질적활용	19.5	41.2	46.2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도시민 대비 농어민의 정보화수준은 64.8점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로, 2004년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깝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아직 도시민들과 비교하여 상당한 정보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세부 지수별로 살펴보면 접근격차에 비하여 역량격차와 활용격차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 조사에서의 계층별 정보격차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기준으로 컴퓨터 기반 일반국민의 종합정보화 수준을 100%로 가정할 때 소외계층별 일반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 수준은 장애인 83.4%, 저소득층 82.2%, 장노년층 71.2%, 농어민 64.8%로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학력 고령층 비율이 높고 지역적으로도 가장 취약지역인 군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각 지수별 현황을 보다 상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접근격차 지수

(1) 의의

접근격차 지수는 ‘컴퓨터·인터넷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지’,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의 기종 및 인터넷 접속방식이 무엇인지’ 및 ‘현재 정보통신기기 보유정도는 어떠한지’를 계량적으로 측정된 개념이다.

접근격차 지수는 가구당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 이용률, 무선 인터넷 이용률, 가구당 스마트폰 보유율 등을 통하여 측정된다.

(2) 현황

① 가구당 PC 보유율

2012년 기준, 농어민의 PC 보유율은 62.1%로 전체국민에 비해 약 20.3%p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타 소외계층에 비해 고령층 단독거주 가구 비율이 높은 농가¹⁾의 PC보유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수요가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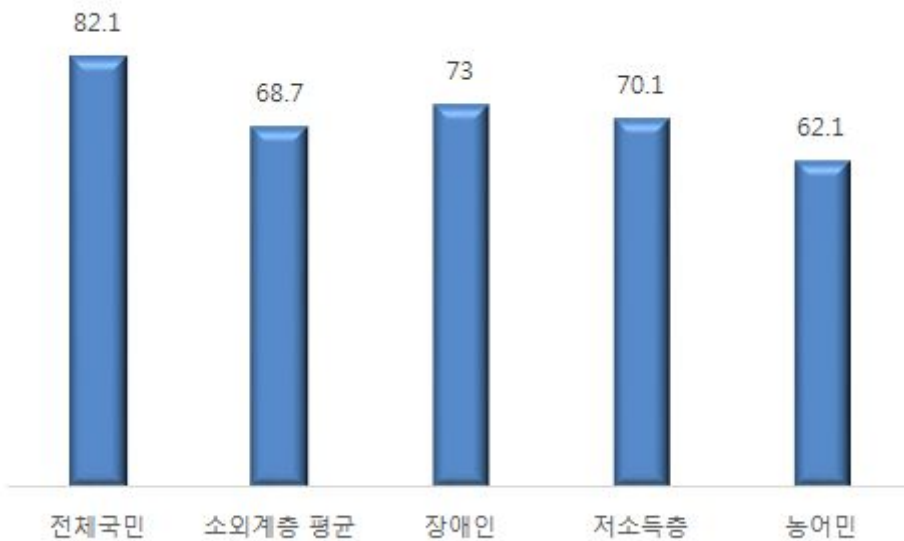


그림 2-1. 2012년 소외계층별 가구 PC보유율(%)

1) 60대 이상 연령층 비율 : 저소득층(30.1%), 장애인(48.5%), 농어민(54.1%)

② 인터넷 이용률



그림 2-2. 2012년 소외계층별 가구 인터넷 이용률(%)

2012년 농어민의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40.2%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기준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78.4%인데 비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40.2%로 무려 38.2%p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이른바 4대 소외계층으로 불리는 저소득층, 장애인, 장노년층과 대비하여서도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소외계층 전반에 대한 일률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소외계층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③ 무선 인터넷 이용률

도시 지역의 경우 유선 초고속 인터넷 접속 비율과 3G서비스, 와이파이, 무선 초고속 등을 통한 무선 인터넷 접속 비율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반하여, 농촌 지역의 경우 인터넷 접속 방법의 비대칭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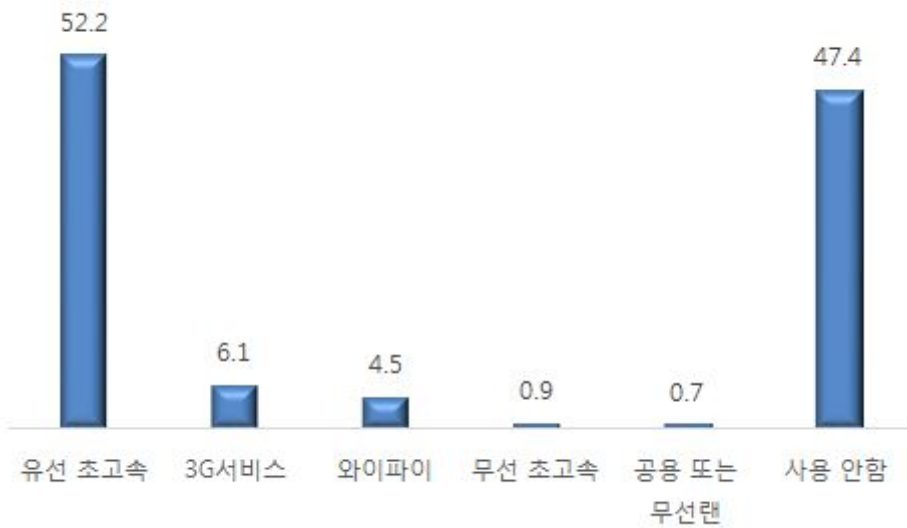


그림 2-3. 농어민 인터넷 접속 방법(%)

보다 편리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농촌 지역에서도 와이파이 등 무선 인터넷 접속이 보다 원활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④ 스마트폰 보유율

2012년도 기준으로, 농어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19.2%로 전체국민의 보유율인 61.5%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 보유율의 증가율 측면에서도 전체 국민의 경우 2011년 대비 21.9%p 증가하였으나, 농어민의 경우 11.9%p만 증가하여, 4대 소외계층 중에서도 가장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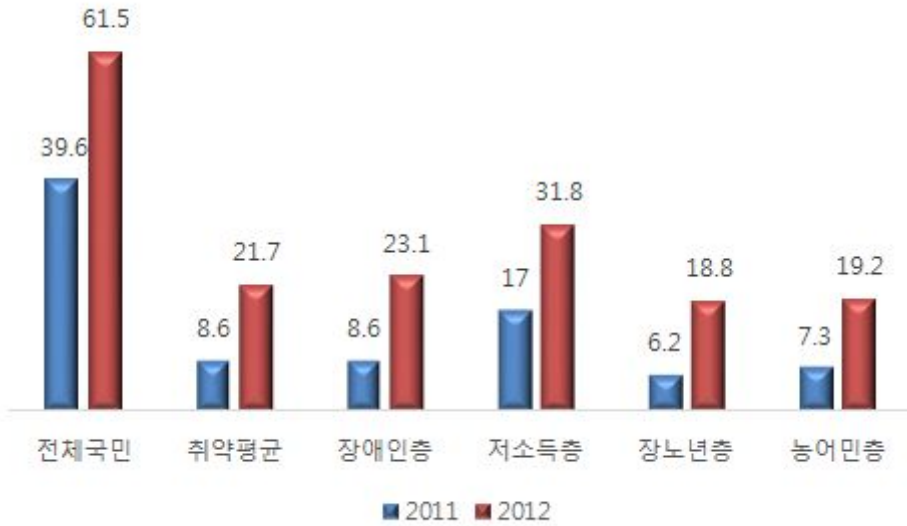


그림 2-4. 2012년 소외계층별 스마트폰 보유율(%)

접근격차를 직업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2. 직업별, 지역별 접근격차(%)

구 분		일반국민 대비수준	일반국민 대비 계층별 수준
직업별	일반국민	100.0	-
	농어민	87.4	8.9↓
	서비스/판매직	101.2	1.2↑
	생산관련직	91.5	8.5↓
	전문관리/사무직	109.1	9.1↑
	주부	93.1	6.9↓
	학생	108.9	8.9↑
	무직/기타	79.5	20.5↓
지역별	도시지역	100.6	0.6↑
	군지역	92.8	7.2↓

(3)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어민은 도시민에 비하여 유선 인터넷을 통한 접속 및 활용 환경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등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도시민과 농어민 사이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유선 인터넷 접근격차를 축소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그에 못지않게 무선 인터넷을 활용한 접근격차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4대 소외계층 중에서도 농어민층이 정보화 접근환경에 있어 가장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를 통하여, 농어민에 대한 우선적 정보화 지원정책의 정당성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정보화 역량격차 지수

(1) 의의

정보화 역량격차 지수는 컴퓨터 기반 인터넷 기본용도별(컴퓨터 환경설정, 정보검색, 이메일, 전자거래 등)로 이용기술을 보유한 정도를 계량화한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정보역량(컴퓨터·인터넷 사용능력) 수준을 100으로 할 때, 농어민의 정보역량 수준 점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2) 현황

2012년 일반국민의 정보역량(컴퓨터·인터넷 사용능력) 수준을 100으로 할 때, 농어민의 정보역량 수준이 일반국민의 39.0%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장노년층(48.0%), 저소득층(76.8%), 장애인(79.0%)의 순으로 정보역량수준이 낮게 조사되었다. 2012년도의 농어민 정보역량 지수는 39.0점을 기록하였는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이는 농어민의 정보역량 수준이 일반 국민의 39.0%에 불과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표 2-3. 농업인 정보역량 일반국민 대비수준(%)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업인	18.3	25.0	29.1	30.5	33.2	35.2	37.2	38.0	39.0

이를 기초로 농업인의 정보역량 격차지수를 산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4. 농업인 정보역량 격차지수(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업인	81.7	75.0	70.9	69.5	66.8	64.8	62.8	62.0	61.0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보다 정보역량 수준이 높은 계층은 남성, 30대 이하 연령층, 전문/사무직·학생, 고졸 이상,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층, 도시지역 거주층인 반면, 일반국민보다 정보역량 수준이 낮은 계층은 여성, 40대 이상, 농어민·주부·생산직·서비스/판매직·무직, 중졸 이하, 월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층, 군지역 거주층으로 조사되었다.

표 2-5. 직업별·지역별 일반국민 대비 정보역량 수준(%)

구분		일반국민 대비수준	일반국민 대비 계층별 수준
직업 별	일반국민	100.0	-
	농어민	39.0	61.0↓
	서비스/판매직	94.5	5.5↓
	생산관련직	67.2	32.8↓
	전문관리/사무직	146.8	46.8↑
	주부	61.9	38.1↓
	학생	143.2	43.2↑
	무직/기타	43.9	56.1↓
지역 별	도시지역	102.3	2.3↑
	군지역	70.9	29.1↓

(3) 정책적 시사점

농업인의 정보역량은 도시민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매년 그 격차가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2008년 이래 최근의 격차 감소 폭이 5.8%p에 불과하다는 점을 볼 때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처방만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보화 역량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농업인의 정보화 역량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 등의 대책을 통한 촉진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촉진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 활용격차 지수

가. 양적 활용

(1) 양적 활용지수 측정

활용지수는 컴퓨터 기반 인터넷 이용시간 및 기본용도별 이용정도, 일상생활에의 도움의 정도 등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평가한다. 이 중 양적인 측면의 양적 활용지수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컴퓨터·인터넷 사용여부 및 사용시간에 초점을 두는 측정개념이다. 양적 활용지수는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여부’와 ‘하루 평균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시간’으로 구성·측정된다.

(2) 현황

4대 소외계층의 양적 활용 격차지수를 평균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1년 41.4점에서 2012년 40.3점으로 전년보다 1.1점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일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국민들의 수준에 비추어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일반국민의 양적 정보활용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4대 소외계층 중에서 일반국민 대비 농어민의 양적 정보활용 수준이 51.3%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장노년층(53.2%), 장애인(74.9%), 저소득층(75.0%)의 순으로 양적 정보활용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2012년 일반국민의 양적 정보활용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일반국민 대비 농어민의 양적 정보활용 수준이 4대 소외계층 중 가장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4대 소외계층의 양적 일반국민 대비수준(%)과 이를 기초로 산출한 양적 활용 격차지수의 값을 나타낸다.

표 2-6. 양적 일반국민 대비수준(%)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장애인	58.6	67.8	68.1	70.5	72.4	74.0	74.4	74.9
저소득층	61.4	69.3	70.0	72.6	72.9	74.1	74.4	75.0
농어민	32.0	38.1	42.4	44.4	45.8	46.6	48.4	51.3
장노년층	33.6	41.7	44.4	45.7	47.7	50.0	51.9	53.2
평균	42.2	50.3	52.8	54.4	55.7	57.5	58.6	59.7

표 2-7. 양적 활용 격차지수(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장애인	41.4	32.2	31.9	29.5	27.6	26.0	25.6	25.1
저소득층	38.6	30.7	30.0	27.4	27.1	25.9	25.6	25.0
농어민	68.0	61.9	57.6	55.6	54.2	53.4	51.6	48.7
장노년층	66.4	58.3	55.6	54.3	52.3	50.0	48.1	46.8
평균	57.8	49.7	47.2	45.6	44.3	42.5	41.4	40.3

이를 계층별로 분석해보면, 일반국민보다 양적 정보활용 수준이 높은 계층은

남성, 40대 이하 연령층, 전문/사무직·학생·서비스/판매직, 고졸 이상, 월가구소득 200만원 이상층, 도시지역 거주층인 반면, 일반국민보다 양적 정보활용 수준이 낮은 계층은 여성, 50대 이상 연령층, 농어민·생산직·주부·무직, 중졸 이하, 월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군지역 거주층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직업별 양적 정보활용 수준 조사 결과, 농어민은 무직 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업군보다 활용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양적 정보활용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국민을 100.0으로 볼 때, 도시지역은 101.7인 반면, 군 지역은 79.2로 나타나 군 지역의 양적 정보활용수준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8. 직업별·지역별 일반국민 대비 양적 정보활용 수준(%)

구 분		일반국민 대비수준	일반국민 대비 계층별 수준
직업별	일반국민	100.0	-
	농어민	51.3	48.7↓
	서비스/판매직	100.4	0.4↑
	생산관련직	75.6	24.4↓
	전문관리/사무직	133.4	33.4↑
	주부	73.1	26.9↓
	학생	130.4	30.4↑
	무직/기타	46.5	53.5↓
지역별	도시지역	101.7	1.7↑
	군지역	79.2	20.8↓

농어민과 군지역 거주민의 양적 활용수준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2013 농촌생활지표조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 조사에서는 농업인의 컴퓨터 사용빈도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농업인들이 인터넷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향후 양적 활용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참고할 가치가 큰 조사결과이다.

① 농업인 컴퓨터 사용 빈도

2013년도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컴퓨터 사용빈도는 ‘거의 매일 사용한다’가 전체의 64.7%를 차지하였으며, ‘1주일에 1~2회사용한다’는 응답이 22.6%, ‘1달에 2~3회 사용한다’는 응답이 4.6%, ‘거의 안씀’은 4.8%, ‘사용할 줄 모름다’는 응답은 3.3%로 조사되었다.

표 2-9. 농업인 컴퓨터 사용빈도

사용빈도별	2005	2007	2009	2011
응답자수 (명)	734 (명)	838 (명)	802 (명)	818 (명)
전체 (%)	100.0	100.0	100.0	100.0
거의매일 (%)	37.9	67.3	67.1	64.7
1주에1~2회 (%)	17.3	19.7	20.4	22.6
1달에2~3회 (%)	7.6	2.4	5.1	4.6
거의안씀 (%)	17.1	10.5	4.2	4.8
사용할줄모름 (%)	20.2	-	3.1	3.3

* 출처 : 2013 농촌생활지표조사 (농촌진흥청)

그동안 지속적인 정보화정책의 추진으로 농촌에도 컴퓨터가 보급되는 등 하드웨어적인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위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컴퓨터를 거의 매일 사용하는 비율이 64.7%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민들과의 정보역량 격차가 말해주듯,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즉 컴퓨터 활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도시와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향후 농촌정보화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단순한 컴퓨터의 보급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품질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 조사결과이다.

②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농어민의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는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46.2%)’과 ‘이용 필요성 부재(25.6%)’가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의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거의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농어업인과 군지역 주민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가능정도를 의미하는 접근능력에서 뒤처지면서 컴퓨터 기반 인터넷 기본용도별 이용기술도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역량격차도 크게 벌어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양적 활용격차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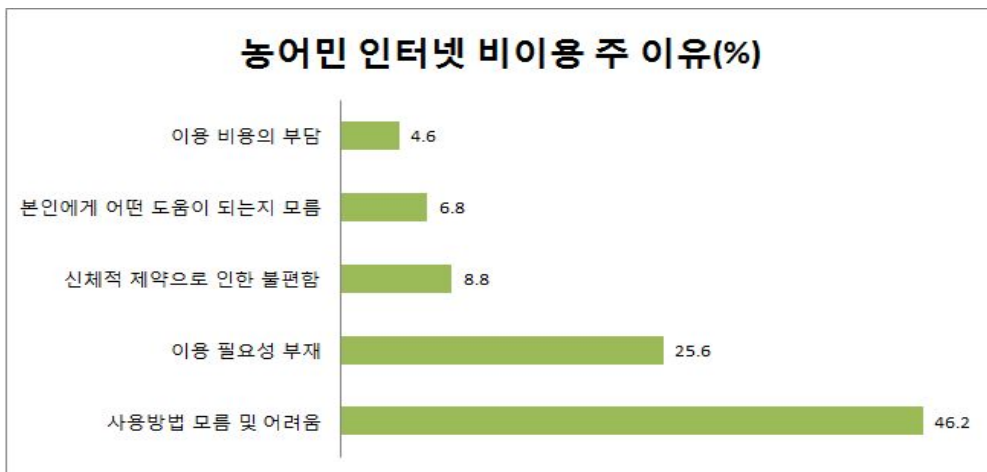


그림 2-5. 농어민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3) 정책적 시사점

농어민은 일반국민은 물론 4대 소외계층과 비교할 때에도 양적 정보활용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농업 부문에 ICT 융합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활용능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소기의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ICT 융합정책의 추진과 동시에 농어민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화 교육 등의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질적 활용 격차지수

(1) 의의

질적 활용지수 측정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사용의 질과 연관된 생산적 정보활용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질적 활용지수는 컴퓨터·인터넷의 권장용도(업무·학업, 가사·개인용무, 여가, 사회활동, 커뮤니케이션 및 교체활동)에 대한 ‘컴퓨터·인터넷의 일상생활 부문별 도움정도’와 ‘컴퓨터·인터넷 세부 권장용도별 이용정도’를 6:4 가중치 기준으로 구성·측정되는 지표이다.

(2) 현황

4대 소외계층의 질적 활용 격차지수는 '11년 43.2점에서 '12년 39.6점으로 전년보다 3.6점 개선되었다. 일반국민의 질적 정보활용 부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2011년 56.8%에서 2012년 60.4%로 일반국민 대비 4대 소외계층 평균 정보화 수준이 전년 대비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일반국민의 질적 정보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농어민의 질적 정보활용 수준이 일반국민의 46.2%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장노년층(57.3%), 저소득층(71.2%), 장애인(72.5%)의 순으로 질적 정보활용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질적 정보활용 수준에서도 농어민이 4대 소외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아래의 표는 4대 소외계층의 질적 일반국민 대비수준(%)과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질적 활용 격차지수의 값을 나타낸다.

표 2-10. 질적 일반국민 대비수준(%)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장애인	53.1	62.0	63.3	64.5	65.8	66.2	69.3	72.5
저소득층	57.0	64.9	67.2	67.6	69.6	70.5	70.8	71.2
농어민	25.5	31.3	32.0	37.5	39.5	41.2	44.4	46.2
장노년층	29.7	39.5	40.6	42.9	45.9	48.3	52.0	57.3
평균	37.7	46.4	48.0	50.1	52.3	54.1	56.8	60.4

표 2-11. 질적 활용 격차지수(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장애인	46.9	38.0	36.7	35.5	34.2	33.8	30.7	27.5
저소득층	43.0	35.1	32.8	32.4	30.4	29.5	29.2	28.8
농어민	74.5	68.7	68.0	62.5	60.5	58.8	55.6	53.8
장노년층	70.3	60.5	59.4	57.1	54.1	51.7	48.0	42.7
평균	62.3	53.6	52.0	49.9	47.7	45.9	43.2	39.6

일반국민의 질적 정보활용 수준을 기준으로 일반국민 대비 계층별 질적 정보활용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정보선도계층인 월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질적 정보활용 수준은 일반국민에 비해 24.1%, 사무직 종사층은 48.3%, 20대 연령층은 49.7%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 저연령층, 전문/사무직·학생, 도시지역 거주층, 고학력일수록 질적 정보활용 수준이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국민보다 질적 정보활용 수준이 높은 계층은 남성, 40대 이하 연령층, 전문/사무직·학생, 고졸 이상,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층, 도시지역 거주층인 반면, 일반국민보다 질적 정보활용 수준이 낮은 계층은 여성, 50대 이상 연령층, 농어민·생산직·주부·서비스/판매직·무직, 중졸 이하, 월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층, 군지역 거주층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직업별 양적 정보활용 수준 조사 결과, 농어민은 무직 층을 제외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나머지 모든 직업군보다 활용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양적 정보활용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국민을 100.0으로 볼 때, 도시지역은 102.3인 반면, 군 지역은 71.2로 나타나 군 지역의 양적 정보활용수준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12. 직업별·지역별 일반국민 대비 질적 정보활용 수준(%)

구 분		일반국민 대비수준	일반국민 대비 계층별 수준
직업별	일반국민	100.0	-
	농어민	46.2	53.8↓
	서비스/판매직	98.6	1.4↓
	생산관련직	69.0	31.0↓
	전문관리/사무직	148.3	48.3↑
	주부	66.6	33.4↓
	학생	132.4	32.4↑
	무직/기타	42.5	57.5↓
지역별	도시지역	102.3	2.3↑
	군지역	71.2	28.8↓

5. 종합적 검토

이상에서 접근격차, 역량격차, 활용격차(양적 및 질적)라는 지표를 통하여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특히 다른 소외계층인 이른바 4대 소외계층에 속하는 집단과의 비교결과를 산출해 보았다. 조사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전체 국민 중에서 농어민이 모든 정보화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군 지역 거주자들이 열악한 정보화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앞에서 논의된 4가지 지표의 값을

직업별, 지역별, 그리고 4대 소외계층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3. 직업별·지역별 일반국민대비 4가지 지표 격차비교(%)

구 분		접근격차	정보역량 격차	양적 활용 격차	질적 활용 격차
직업별	일반국민	-	-	-	
	농어민	8.9↓	61.0↓	48.7↓	53.8↓
	서비스/판매직	1.2↑	5.5↓	0.4↑	1.4↓
	생산관련직	8.5↓	32.8↓	24.4↓	31.0↓
	전문관리/사무직	9.1↑	46.8↑	33.4↑	48.3↑
	주부	6.9↓	38.1↓	26.9↓	33.4↓
	학생	8.9↑	43.2↑	30.4↑	32.4↑
	무직/기타	20.5↓	56.1↓	53.5↓	57.5↓
지역별	도시지역	0.6↑	2.3↑	1.7↑	2.3↑
	군지역	7.2↓	29.1↓	20.8↓	28.8↓

위의 조사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 접근격차, 정보역량격차, 양적 및 질적 활용격차에서 농어민은 무직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위의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하여 산정한 종합정보화 수준에서도 농어민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국민을 100으로 할 때,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은 64.8%에 불과하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그림 2-6. 직업별 종합 정보화 수준

다음으로 4대 소외계층간의 정보화 수준을 비교해 볼 때, 농어민의 경우 취약 계층 중에서도 가장 떨어지는 정보화 수준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농어민 층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4대 소외계층 중에서 항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은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정보화 수준에서 가장 정보화 수준이 떨어지는 시각장애인(77.0%), 뇌병변 장애인(70.6%)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표 2-14. 계층별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 변화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장애인층	65.2	73.9	76	78.8	80.3	81.3	82.2	83.4
저소득층	64.2	73	75.5	78.1	79.5	80.5	81.4	82.2
농어민층	41.7	49.8	54.6	57.9	60.3	61.8	63.6	64.8
장노년층	49.3	58.4	62.6	64.2	65.9	67.5	69.2	71.2
평균	53.3	62	65.9	68	69.7	71.1	72.4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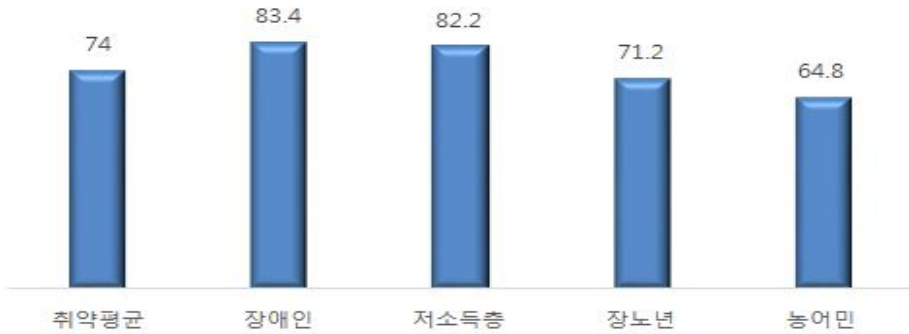


그림 2-7. 2012년 계층별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

결국, 농어민층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은 물론 다른 소외계층과 비교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보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화는 물론이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ICT) 융합을 통한 창조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도 농어민과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 역량 강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화는 단순히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역량을 동원한 새로운 농업을 구현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고 농업을 발전시키며 그 결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률적 지원을 통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촉진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의 정보화 격차가 모바일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입법과 정책지원을 통하여 모바일에서의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정을 구현함으로써 농업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정책은 모바일 분야에 대한 검토와 고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3편 외국법제

제3편 외국 법제

유럽 및 독일의 농업·농촌 정보화에 관한 법·정책

I. 유럽의 법과 정책

1. 정보화 정책의 배경 및 기본방향

(1)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유럽에서의 공동농업정책(영어: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 독일어: Die Gemeinsame Agrarpolitik, GAP)은 회원국들이 세계2차대전을 통하여 겪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in Mitleidenschaft) 식료품생산을 재분배하고 증대했던 유럽통합 초기로 거슬러간다.

오늘날에도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의 농림지역이 90% 이상이라는 점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농업정책이 식료품질, 환경보호, 유통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표준적인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공동농업정책의 역사에서 새로운 획을 그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로써 농업정책이 농업인, 소비자, 환경의 새로운 요청에 적응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확대되는 유럽연합과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농업정책의 계속적 발전에 대한 토대가 될 것이다.

공동농업정책은 최소 가격 보장, 유럽 연합 밖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세 등을 포함하여 가격 보조 계획을 통해 곡물과 경작지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농지가 좋은 품질의 경작 기준(Good Agricultural Condition)을 유지한다.
- 다각화나 생산자 조합을 설립하는 등 농촌부의 발전에 기여한다.
- 환경에 기여하는 농지 운영을 실시한다.

1992년까지 유럽 연합의 농업 지출 비용은 거의 유럽 연합 예산의 61%를 차지하였다. 2013년까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공동농업정책의 예산 비중은 32%에 이를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 연합의 지방 정책에 대한 양은 1988년에 유럽 예산의 17%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그 두 배인 거의 36%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공동정책에 차지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유럽공동체가 만들어질 무렵 유럽에서의 경제기초가 농업이어서 농업에 대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유럽공동체의 발전에 따라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점점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에 대한 비중이 축소된 면도 있다.

공동농업정책의 목적은 농가에게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소비자에게는 적절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식품을 각각 제공하는 것이며, 또 농업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동농업정책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식품의 안전이나 환경 보호, 채산성, 대체연료 등의 중요성에 꾸준히 관심을 더해가고 있다.

【유럽 공동농업정책의 미래】

유럽연합농업장관은 2013. 6. 24 - 25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농업이사회에서 유럽농업정책의 개혁을 공고하고, 유럽의회와의 최종합의안을 작성했다.

그 주된 내용은 농업·농촌·환경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유럽농업정책이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된다는 점에 합의한다. 개혁의 핵심은 실효성 있는 녹색화(ein wirksames Greening)이다. 이를 통해 생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급부를 위한 공공자금(Öffentliche Gelder für öffentliche Leistungen)의 원칙이 더욱 전면에 앞세워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럽공동농업정책의 개혁방향에 따라, 독일에서도 긴축예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럽공동농업정책의 제1기등(직접지불, Direktzahlungen)을 강화하고 제2기등(농촌개발지원, Förderung der ländlichen Entwicklung)에 대

해서도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자 한다.

(2) 공동농업정책의 두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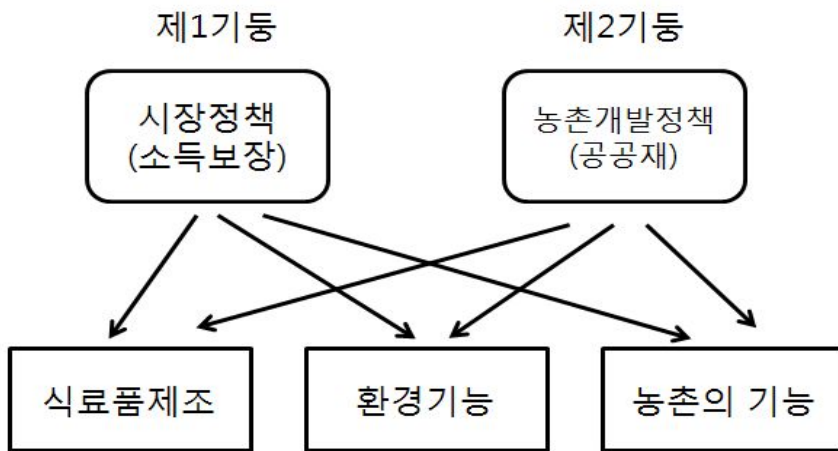
1) 제1기둥

공동농업정책의 제1기둥은 무엇보다 시장규제 및 직접지불을 통하여 농민의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3년 개혁의 결과로서, 그 이전에 생산물과 관련된 지불을 지역연계체계로 바꾸었다(탈연계, Entkopplung). 이러한 지불은 다른 의무의 준수와 연결된다(Cross Compliance).

2) 제2기둥

공동농업정책의 제2기둥은 농업에 있어서 토지 및 환경의 기능 강화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농지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2기둥의 조치는 무엇보다 제1기둥의 내용으로 병행·보완되어야 한다.



출처: 유럽집행위원회(EU-Kommission), 농촌개발정책 2007-2013, Fact Scheet(2007)

그림 3-1. 공동농업정책의 두 기둥

2. 추진체계(실정법 체계)

(1) 법체계 개요

유럽연합에서는 농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법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여기서 ‘법’은 회원국에게 직·간접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거나, 구속력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다양한 법형식(Rechtsakt)을 말한다.

이하의 분류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방대한 양의 농업관련법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분류기준이다. 이 가운데 특히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법에서 농업·농촌 정보화에 관한 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상세는 후술하는 「(3) 농촌지역 정보화촉진에 관한 법」에서 살펴본다.

○ 일반 규정(Allgemeiner Rahmen)

- 재정지원(Finanzierung)
- 지역개발(Ländliche Entwicklung)
- 직접지불(Direktzahlungen)
- 농업구조조치(Strukturmaßnahmen)
- 경쟁력(Wettbewerb)
- 정보 및 통계(Informationen und Statistiken)

○ 농산물시장(Märkte für Landwirtschaftliche Erzeugnisse)

- 농업시장의 공동조직(Gemeinsame Organisation der Agrarmärkte)
- 부문별 실시규정(Sektorspezifische Durchführung)
- 기타 농작물(Sonstige Erzeugnisse)

○ 식료품(Lebensmittel)

- 식품의 질(Nahrungsmittelqualität)

- 생태적 농경(Ökologischer Landbau)
- 유전자변형작물(Genetisch veränderte Organismen)

○ 환경(Umwelt)

- 자원의 관리 및 보전(Management und Erhaltung der Ressourcen)
- 산림원 및 비음식 농작물(Waldressourcen und Non-food-Erzeugnisse)
- 농업으로 인한 오염(Durch Landwirtschaft verursachte Verschmutzung)

○ 유럽연합 확대(Erweiterung)

- 접근을 위한 도움(Heranzuführungshilfe)
- 진행중인 가입협상(Laufende Beitrittsverhandlungen)
- 2004-2007 기간의 연장(Erweiterung im Zeitraum 2004-2007)

(2) ELER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을 통한 농촌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한 명령」(ELER-Verordnung)은 2005년 9월에 최종적으로 의결되었다. 이 규칙은 계속적으로 단일한 프로그램계획·재정지원·평가의 기본틀을 규정하고 있다.

중전(2000-2006)과는 달리 2007년 이후 모든 조치는 오직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ELER)」으로부터만 지원받게 된다.

동 규칙은 농촌의 발전을 위한 다음 3개의 일반적 목표를 가지는데, 이들 목표는 각각 분야별 중점사항에 해당한다.

- 구조조정·개발·혁신의 촉진을 통한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 → 중점사항 1
- 환경과 경관의 개선 → 중점사항 2
- 농촌지역에서의 삶의 질 개선 및 농촌경제의 다각화 촉진 → 중점사항 3

그밖에도 【중점사항 4 - LEADER】가 있지만, 이는 유럽공동체가 추진하는 목표라기보다 개별 농촌개발프로그램의 일 부분으로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목표를 추구하기보다 다른 3개의 중점사항의 목표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것이다.

나머지 3개의 중점사항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점사항 1】

- 인간자원의 강화
- 농림업의 투자촉진

【중점사항 2】

- 낙후지역에 대한 지불의 보전
- 동물보호, 환경보호 등으로 인한 농림업에서의 경영감축에 대한 보조금 (Beihilfe)

【중점사항 3】

농촌경제의 다각화(특히 소기업의 창설, 원거리교통망의 정비)
농촌지역에서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농촌경제·농민, 시골마을 정비, 농촌후계자의 보존)

○ 프로그램계획 및 프로그램전환

프로그램계획 및 프로그램전환은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 토대로서 유럽연합이사회에 확정된 「공동체의 전략적 지침」과 「ELER 규칙」이 있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회원국들은 각자 농촌지역에 있어서 국가의 발전프로그램에 대한 기본틀 및 정책우선을 정리한 「국가 전략페이퍼」를 작성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의 주들을 위한 발전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국가의 전략페이퍼는 무엇보다 다른 정책(가령 구조기금이나 국가조치와 같은 정책)과 함께 ELER조치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이 독일에서 「농업구조 및 연안보호의 개선을 위한 공동체의 임무」(GAK²)와 조화를 이루며 보완되

도록 해야 한다.

3. 정보격차의 해소

(1) 유럽에서의 농촌 정보화와 정보격차

1) 농업지역에서의 정보통신에 대한 액세스

이상의 다양한 법제도 가운데 특히 농업·농촌의 정보화와 관련되는 것은 「일반규정→재정(Finanzierung)」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농업지역에서의 정보통신에 대한 액세스」(Zugang zur IKT in ländlichen Gebieten)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정보 및 통신기술(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ologie, IKT)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지역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회원국들의 지역 및 지방행정청은 그 지역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럽연합 역시 지역정책 및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수단을 통해 이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 위한 광대역인터넷접속’(Breitband-Internetzugang für alle)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2) 입법형태(Rechtsakt)

유럽의회에 대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고지(Mitteilung)인 「농촌지역에서의 현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 [KOM(2009) 103 endg.]에서 이러한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3) 「농업지역에서의 정보통신에 대한 액세스」(Zugang zur IKT in ländlichen Gebieten)의 개요

2) Gemeinschaftsaufgabe zur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 상세한 내용은 후술 참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이러한 고지는 농촌지역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농촌 지역의 수준이 높아짐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가) 종래의 정보격차 현황(Bestehende Ausgrenzung)

이 고지의 중요한 단초는 광역망 인터넷접속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적 격차에 있다. 이는 이미 2006년에 확인된 바이다. 낮은 망접속(Der geringe „Breitband“-Zugang, DSL)은 낮은 인구밀도, 산간벽지, 낮은 경쟁력과 같은 요소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

수치상으로 보면, 2008년에 유럽연합의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인구의 41.7 %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는 인구밀집지역에서는 27.4%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점과 비교된다. 이러한 수치는 특히 2005-2007의 광대역인터넷접속이 농촌보다 도시에서 크게 증대한 점에서 알 수 있다. 2007년 12월 유럽의 농촌지역의 70%만이 광대역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반면에, 도시지역에서는 98%가 접속했다.

다음과 같은 특정한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이 배제되고 있었다.

- 농민(Agrarbetriebe)
- 중소기업인 또는 소기업인
- 젊은 사람(junge Menschen)
- 여성
- 노인 및 취약계층(Senioren und benachteiligte Gruppen)

이러한 농촌과 도시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회원국들은 지역의 행정청이 적절한 기술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모든 국가 및 지방행정 및 기관의 수요는 지원되어야 한다. 이는 전자행정청서비스, 전자보건서비스, 전자교육과 같은 기초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제공은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 가령 웹포털의 개발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더 잘 알게 하고, 이를 통해 관광을 촉진시킬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프로젝트는 지역생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그 공급망을 개선시킬 수 있다.

(나) 행동지침의 제안(Vorgeschlagene Aktionen)

농촌지역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는 다음 3개의 중점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① 인터넷접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확보의 개선(Verbesserte Bereitstellung der für den Internetzugang erforderlichen Geräte)
- ② 내용의 창출(Schaffung von Inhalten)
- ③ 인터넷접속을 위한 새로운 능력의 개발(Entwicklung neuer Fertigkeiten für den Internetzugang)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지원
- 국가와 지역의 행정청을 통한 지원
- 지역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Beteiligung und Kooperation lokaler Akteure)
- 새로운 사업 가능성 및 사업상실에 대한 상황 파악(Erkennen neuer Geschäftsmöglichkeiten und Geschäftslücken)

ELER규칙³⁾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을 농업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보건의 사전배려영역에서 온라인 기반 서비스의 개발

3)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을 통한 농촌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한 규칙」(ELER-Verordnung).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기업의 지원(Unterstützung von Unternehmen)
- 지역의 공역무자(lokal, öffentliche Dienste)
- 청년 등을 위한 모바일 정보통신센터 (mobile IKT-Zentren auch für Jugendliche)
- 공공 인터넷·통신접속망
- 광역망 인프라

농촌지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투자는 LEADER⁴⁾의 틀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다.

- 관광부문에서의 혁신적 통신기술을 통하여
- 생산물분야에서
- 범국가적 지역적 협력을 통한 생태적·문화적 상품(bei ökologischen und kulturellen Gütern)
- 학교교육 목적상(für Schulungszwecke)
- 인터넷접속의 형태로

2007-2013년 농촌개발을 위한 공동의 동반·평가(Der Gemeinsame Begleitungs- und Bewertungsrahmen, GBBR)는 정보통신기술영역에서의 농촌 지역현황의 확인·감독·평가를 위한 기초지원이다.

그밖에 유럽공동체의 재정지원규정 및 정책간의 협력은 유효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결속정책(Kohäsionspolitik)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지원에서 153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예정하고 있다.

좋은 실무의 교환은 농촌지역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농업 및 농촌발전에 관한 총괄부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67명의 정보통신기술 실무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혁신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4) LEADER(Liaison entre actions d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rurale = die Verbindung zwischen Aktionen zur Entwicklung der ländlichen Wirtschaft = 유럽연합의 농촌경제개발을 위한 행동의 연계

(다) 배경(Hintergrund)

유럽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유럽 경기상황프로그램(das Europäische Konjunkturprogramm)은 경제·재정위기의 특정한 측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서 광대역 인터넷접속의 의미를 강조한다. 또한, 통계체계인 "i2010"은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 목표는 인터넷이용자가 2010년까지 2배로 되는 것이다.

II. 독일의 농업·농촌(Ländliche Räume) 법과 정책

1. 독일의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방향

농촌은 낭만적인 목가시(romantische Idylle)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농촌은 경제적 강점을 가지는 지역인데도, 실업·이주·고령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농촌이 미래가 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주도하의 범부처간의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독일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는 농촌을 위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목표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다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높은 삶의 질, 일자리, 건강한 환경
- 지역을 망라하는 광대역망 가설(flächendeckender Breitbandversorgung)
- 유치원, 각급 학교, 병원 등의 고성능의 사회적 인프라구조
- 새로운 소득원, 목적에 맞는 지원 및 신뢰성 있는 사회안전
- 관광과 휴양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경관(Kulturlandschaften)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농촌에서의 삶의 질(Leben auf dem Land)

농촌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번잡한 일상으로부터 떨어져, 자연 속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서 이루어지며, 주민들 간의 유대와 좋은 이웃관계를 가지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인구변동으로 인해 농촌지역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 농촌지역의 지원(Förderung des ländlichen Raumes)

농촌개발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GAP)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0년 농업산출물(landwirtschaftliche Erzeugnisse)에 대한 시장정책 외에 농촌지역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는 농업정책의 제2기둥이 창출되었다.

○ 농지정책(Landwirtschaftliche Flächen)

세계인구가 증대하고, 이로써 식료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에너지작물과 늘어나는 원재료의 경작은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의 한 수단이 된다. 이로부터 독일 농업의 기회와 의무가 나온다.

○ 정보화를 위한 광대역망의 촉진(Breitbandförderung)

연방식품농업소비자부는 주Bundesländer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연결망의 가설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 적절한 비용으로 빠른 인터넷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농촌지역에서의 야외활동(Raus aufs Land)

사람들이 신선한 생산물을 구입하고, 휴가를 즐기고, 흥미로운 여가활동제공을 즐기는 것을 농촌지역의 농가에서 할 수 있다.

○ 녹색직업(Grüne Berufe)의 창출

녹색직업은 농업·식품분야에서 수련직업이다.

축사, 식료품제조, 실험실, 들판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14종의 녹색직업은 밝은 전망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 직업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 브랜디 양조자(Brenner/Brennerin)
- 농업서비스 전문가(Fachkraft Agrarservice)
- 어업인(Fischwirt/Fischwirtin)
- 임업인(Forstwirt/Forstwirtin)
- 원예업자 · 정원사(Gärtner/Gärtnerin)
- 가정농업인(Hauswirtschafter/Hauswirtschafterin)
- 농업인(Landwirt/Landwirtin)
- 농업기술 연구원(Landwirtschaftlich-technischer Laborant/Laborantin)
- 우유기술자(Milchtechnologe/Milchtechnologin)
- 낙농연구원(Milchwirtschaftlicher Laborant/Laborantin)
- 말관리인(Pferdewirt/Pferdewirtin)
- 수렵인(Revierjäger/Revierjägerin)
- 동물사육인(Tierwirt/Tierwirtin)
- 포도 재배자(Winzer/Winzerin)

2. 추진체계

(1) 실정법 체계

○ 정보화지원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는 주 정부들과 협력하여 농촌지역에서 적절한 비용으로 신속한 인터넷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운로드에서 1Mbps 수준의 광대역망의 가설을 목표로 정보화정책을 추진 중이다.

농촌지역에서의 교육 · 보건 · 교통 · 여가 등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정보화의 필요성은 점점 더해져 가고 있어 이러한 수요에 맞추기 위한 광대역망의 가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농촌지역의 미래대응력(Zukunftsfähigkeit)은 증대되는 정보홍수를 처리하기 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해 필요불가결한 광대역망이 필요한 것이다. BMELV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고차원적인 인터넷여건을 제공하고자 한다.

○ 농촌지역에서의 광대역망접속의 촉진(Förderung der Breitband-Anbindung in ländlichen Räumen)

특히 새로운 LTE (Long Term Evolution)-Funktechnologie의 신속한 가설은 농촌지역의 광대역망연결에 기여할 것이다. 2009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 약 220만 가정이 추가적으로 광대역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주된 목표는 농촌지역에서의 인터넷접속 사각지대(이른바 weißen Flecken)를 없애고 고성능인터넷에 대한 빠른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물론 시장 그 자체만으로는 고성능인터넷망을 지역망라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인터넷망을 가설하는데 고비용-저수익이 나타나므로 경제성은 없다. 여기서 모든 관계인(지방자치단체, 통신회사, 재정지원기관, 연방과 주의 정책담당자)가 협력하여 이를 행해야 한다.

이미 2008년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는 유럽공동체의 과제인 「농업구조와 연안 보호의 개선(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의 차원에서 농촌지역의 광역망 가설을 지원해왔다. 이에 더하여 실무상 강한 지원조치의 요구에 대하여, 2012년 1월 초부터 「농촌지역에서의 광역망투자의 재정지원을 위한 농촌의 연금은행의 촉진프로그램(Förderprogramm der Landwirtschaftlichen Rentenbank zur Finanzierung von Breitbandinvestitionen in ländlichen Regionen)」 신청자격이 있는 자는 게마인데, 게마인데단체Gemeindeverbände, 지역의 사단Gebietskörperschaften, 목적단체Zweckverbände, 영업사업자 gewerbliche Unternehmen이다. 이로써 전 독일에서 농촌지역의 광대역망투자를 위한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상의 지원프로그램 외에도 가령 저비용의 케이블설치기술(Micro-Trenching) 또는 건축행위를 할 때 정보화를 위한 배선을 하는 등 서너지효과를 이용함으로써 농촌지역을 위해 가설비용 인하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신속한 지역망라적 고성능의 인터넷망의 가설은 연방정부, 주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이 협력하여

현실화될 수 있다.

○ 광대역망촉진 가능성(Leitfaden zu Möglichkeiten der Breitbandförderung)
최근의 인터넷접속 사각지대(이른바 weißen Flecken)의 제거 및 고성능인터넷망(Hochleistungsnetzen)의 신속하고 전지역에 걸쳐 가설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광대역망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광대역인터넷은 점점 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발전하고 있다. 작업, 쇼핑, 통신 등 많은 분야가 빠른 인터넷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빠른 인터넷에의 접속은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이며, 가족을 위한 생활의 질의 한 부분을 이룬다. 농촌지역이 지역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많은 게마인데에서 빠른 인터넷 접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광대역망접속을 위한 인프라 구축

(Gemeinden und Städte können die Infrastruktur für Breitbandanschlüsse fördern)

유럽집행위원회는 2010년 7월에 「지역망라적 광역망가설을 위한 공공기관의 배선 확보를 위한 연방정부의 대강규정」(Rahmenregelung der Bundesregierung zur Bereitstellung von Leerrohren durch die öffentliche Hand zur Herstellung einer flächendeckenden Breitbandversorgung)("Bundesrahmenregelung Leerrohre")(이하 '대강규정'이라 함)을 승인했다.

이러한 대강규정은 연방·주·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한 인프라구조를 가지고 인터넷네트워크를 가설하려고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각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적 토대가 될 것이다. 이는 특히 시장성이 없어 고성능 네트워크를 가설하지 못하는 곳에서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수단의 조달체계의 의미에서 지원프로그램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기되는 것은 사업자가 지하전선(Erdkabel)을 보다 더 저렴하게 가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자들은 이미 가설되어 있는 지하전선을 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에게 배선망(Leerrohrnetz)을 그에 맞추어 깔아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배선망은 사기업자의 비용을 절감시켜주며, 이는 다른 지원조치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의 보조금법(EU-Beihilferecht)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조금법의 개별심사(EU의 개별통지의무, Einzelnotifizierungspflicht bei der EU)가 지방자치단체의 배선망프로젝트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법적 토대는 새로이 정해졌을 것이다. 배선망의 가설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에 있어서 케이블예정선(Kabeltrassen)의 「배선망에 관한 연방대강규정」(Bundesrahmenregelung Leerrohre)의 규정의 준수에 있어서 기존의 또는 새로이 가설해야 하는 케이블연결망(Kabelverzweignern, 이는 종종 케이블상자[Kästen]이라 불리기도 함)에 있어서 허용된다. 이는 농촌지역에서의 고성능 인프라구조의 가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한 수단으로 배선망을 통한 사기업의 투자를 경감시키는 결정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가설되어야 하는 배선망이나 망의 운영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할 것이다. 「배선망에 관한 연방대강규정」은 입찰공고의 목적으로서 응찰자는 지역의 기반시설이 같은 수준에 있어서 가장 적은 공공급부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는다. 사기업자도 배선망가설사업을 할 수 있는데, 배선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귀속되고, 대여될 수도 있다. 고성능 네트워크의 현실화는 통상적으로 유리섬유케이블(Glasfaserkabel)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밖에도 이러한 수준의 기술은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배선망 가설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는 각 주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2)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계획(2007-2013)

(Nationaler Strategiepla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ür die Entwicklung ländlicher Räume)

1) 농촌지역개발을 국가전략의 내용

(가) 개요

독일에서는 1992년 아젠다 21을 채택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연방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유럽이사회(Rat der Europäischen Union)는 2005.9.20.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을 통한 농촌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한 규칙」(ELER-Verordnung)을 제정했다. 이 규칙은 2007-2013년 기간에 공동농업정책(GAP)의 제2기등의 틀을 형성한다.

농촌정책은 GAP의 제1기등의 개혁을 후원하고 동시에 리스본전략의 전환에 기여한다. 농촌지역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상위 목표를 지향한다.

- ① 구조조정·개발·혁신의 촉진을 통한 농림업의 경쟁력 제고
- ② 환경과 농업의 개선
- ③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 및 농촌경제의 다각화 촉진

이러한 목표들은 3개의 주제별 중점사항과 1개의 방법론적 중점사항으로 전환되었다(전체 4개의 중점사항). 방법론적 중점사항은 이른바 LEADER에 따른 지역 개발전략을 지원한다. 4개의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점사항 1 :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
- 중점사항 2 : 환경과 경관의 개선
- 중점사항 3 : 농촌생활의 삶의 질과 농촌경제의 다각화
- 중점사항 4 : LEADER

나) 중점사항별 검토

○ 중점사항 1 :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Verbesserung der Wettbewerbsfähigkeit der Land- und Fortwirtschaft)

EU지침은 이 중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위(Priorität)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의 농림업 및 식품산업은 양질의 유럽의 소비자 및 세계시장의 다양하고 증대되는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산출물의 개발을 위한 커다란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 중점사항 1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은 강하고 역동적인 유럽의 농식품분야에 기여해야 하며, 이는 지식의 전달, 현대화, 식품순환에서의 혁신과 질에 집중해야 하며, 물적·인적자본에서의 혁신 선도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EU지침에 맞추어 독일 국가전략 차원에서 기초분석⁵⁾을 바탕으로 전략적 종합구상의 실천을 위해, 특히 가치생산의 잠재력을 최대한 잘 이용하기 위해, 다음 목표가 설정되었다.

- 농림업에서 생산성·수익성(Rentabilität)의 개선
- 판매가능성 및 시장구조의 개선
- 생산물 품질의 개선
- 환경·자연보호 및 동물보호의 개선
- 해안보호 및 홍수방지의 개선

① 지식의 확산 및 인간잠재성의 강화

지속가능한 경영관리를 위해 조언, 정보제공, 체계화는 농림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히 실효성 있는 조치이다. 이는 특히 농림업의 생산성·수익성, 환경·자연보호 및 동물보호의 개선, 생산물 품질의 개선시키면서, 경영주와 사원의 전문적·경영적 능력을 강화시킨다. 이로써 농림업 및 식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여건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기술의 이용과 시장여건에 부

5) 예컨대, 농업 이외의 총수입에서의 수입/노동력, 국제적인 비교에서 높은 생산비용, 산출물로부터 한계소득지점이 떨어지는 리스크, 영세규모의 사유림의 소유, 재생가능한 원자재의 의미 증대.

6) 예컨대, 급변하는 시장상황, 우수할당규정의 만료, 농업만으로는 경영에 충분한 소득확보의 전망이 없는 경우

합하고, 증대되는 환경·소비자보호의 요구, 품질확보, 지속가능한 농·축산, 법규범의 신속한 수용(Cross Compliance)에 대한 부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 내외에서의 대안적 소득잠재성의 확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농림업에서의 역동적인 사업자의 개발은 전략적·유기적 능력의 조정과 경영적 관리시스템을 통하여도 촉진되어야 한다.

조언, 평생교육, 정보제공, 체계화는 협의의 농산물만이 아니라 ELER규칙의 【중점사항 2】, 【중점사항 3】의 목표까지 지원한다. 수준 높은 환경·자연·물보호의 조언은 농업인이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Natura 2000, 기후보호, 유럽물관리지침의 보호이익을 위한 농업인의 감수성 및 수용도를 확보하고, 농업환경조치를 효율적으로 취하는데 기여한다. 관련되는 지식의 보급을 통해 물·공기·토양에의 유해물질의 유입, 부적절한 施肥, 바람직하지 않은 토양압착(硬化), 바람·물을 통한 토양유실을 줄이고, 물질순환에 대한 자각의식과 양호한 토양상태와 동식물계(Flora und Fauna)를 촉진시킨다.

② 구조조정, 물적 자본의 계속적 개발, 혁신촉진

농업은 다른 생산부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이다. 따라서 농업투자촉진(Agrarinvestitionsförderung)은 농업·원예·포도재배업의 성장·현대화의 전제조건이다. 농업투자촉진은 생산성·수익성의 개선에 기여하고, 이로써 리스본 전략상의 일자리 확보·창출에 기여하며, 특히 「Göteborg전략」상의 환경·동물보호 친화적 생산절차에 기여한다. 특히 축산·원예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부문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영농후계자의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투자는 전문성이 있는 젊은 농업인의 투자는 그 최초의 영농과 관련하여 특히 장려된다. 예상되는 우유할당의 종료도 투자확대를 통해 지원된다.

가공 및 판매의 촉진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식품업의 기치창출을 위해 제공된다. 특히 경영효율성 개선, 품질개선, 간편식품의 다양성 확대, 새로운 판매시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의 확충·강화를 촉진한다. 특히 우유, 고기, 과일, 야채의 제품분야에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촉진이 이루어진다.

임업-목재업의 촉진으로 EU 및 독일의 임업전략의 고려 하에서 혁신·경쟁·품질개선을 위한 투자만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동기가 부여된다. 특히 소규모 사유림에서 미사용의 목재들은 개발되어야 한다. 임업연합(forstwirtschaftliche Zusammenschlüsse)의 차원에서 목재판매를 포함하는 공동경영적 공동작업의 강화가 여기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농림업분야에서 새로운 생산물이나 혁신적인 절차·기술에 있어서 장래의 판매 및 수익의 기회를 인식하고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생산자와 가공업자간의 공동작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재생가능한 원료의 재배와 가공의 혁신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산라인으로 개발하고 에너지 확보와 물질이용을 위한 원재료를 준비해야 한다.

농림업의 양호한 인프라구조는 농림업용지의 비용면에서 유리한 관리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소유·이용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경지정리(Flurneuordnung)는 생산·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농촌지역의 다른 개발의 측면⁷⁾도 지원한다. 이것은 농업적 이용과 경관·자연보호의 이익간의 상충을 완화한다. 농업구조 개선조치에 평이한 그리고 비용면에서 유리한 조치⁸⁾는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하천의 유역에서 자연적인 또는 자연에 가까운 저수⁹⁾는 홍수방지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에서 기술적인 홍수방지대책도 행해질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방지를 위해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절실하다.

7) 농촌관광, 여가활동, 자연보호, 경제개발.

8) 예컨대, 자발적인 토지교환, 이용상 교환.

9) 예컨대, 농림업용지 등에서 물저장능력의 개선을 통하여, 또는 과거 범람지역의 재이용을 통하여.

연안보호는 바다에 의한 위협으로 인하여 감소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대책의 차원에서 늘려야 하며, 계속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개발구상과 조치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함에 있어서 연안지역에서 경합하는 요청¹⁰⁾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 농산물 및 농업가공품의 품질개선

농산물 및 농업가공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까다로운 기준규범에 적응하기 위해 투자성의 촉진조치와 함께 식료품품질규정에 참여하고, 이에 관한 정보·판매촉진조치를 지원하고, 적절한 조언의 제공이 지원되어야 하며, 또한 추가적으로 관리체계 및 자료체계의 도입이 촉진될 필요가 있다. 이는 EU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또는 재정지원이 없이도 행해질 수 있다.

○ 중점사항 2 : 환경과 경관의 개선 ☞생략

○ 중점사항 3 : 농촌생활의 삶의 질과 농촌경제의 다각화

EU 지침은 【중점사항 3】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순위(Priorität)를 부여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있어서 농촌경제의 다각화와 삶의 질의 분야에 대해서 【중점사항 3】의 분야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수단(재원)은 취업가능성과 성장조건을 창출하는데 일반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기여해야 한다. 【중점사항 3】의 분야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특히 지역적 전략개발의 능력, 양질의 일자리, 조직을 촉진하는데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장래세대에게도 농촌지역이 매력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투입되어야 한다. 교육, 정보, 기업가정신의 촉진은 여성과 청년, 노년노동자의 특별한 수요가 고려되어야 한다.”

10) 예컨대, 환경·자연보호, 관광, 경제개발, 농업, 어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EU 지침에 맞추어, 기초분석¹¹⁾을 토대로 한 독일 국가전략 차원에서, 그리고 전략적 전체구상의 국내적 수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 일자리 및 소득의 확보 및 창출
- 삶의 질과 장래전망의 확보 및 개선
- 재화와 서비스의 최소공급의 유지 및 조달
- 농촌의 자연·문화유산의 유지 및 필요한 경우 재생
- 농촌지역의 여가·농촌지역에서의 여가·휴양가치의 유지 및 개선

다양한 기초상황에 근거하여 다양한 개발기회와 개발방향을 농촌지역은 제공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다양한 발전방향과 발전기회가 나타난다. 그 때문에 장려는 특별한 지역적 강화(예컨대, 농업의 매력적인 지역에서의 관광 또는 지역특산물의 판매)에 투입된다. 특히 해당 농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농촌에 가까운 주변지역 또는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의 경제활동도 지원한다.

① 농촌경제의 다각화

농촌경제의 다각화로 (예컨대 농업경영의 다각화를 통해 비농업활동에의, 즉 농업-상공업의 소규모기업의 창설과 발전), 보완적 수입의 가능성을 개척하고, 취업의 장이 창설·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투자에 대한 조성과 함께, 아이디어나 새로운 지식의 획득(예컨대, 산물과 기술혁신 등), 그리고 구상(전문적·조직적 관점에서), 그리고 현대적인 정보기술의 활용(예컨대, 광고, 마케팅, 부기, 인터넷과 관광분야에서의 객의 정보수집 등)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과 구상, 아이디어는 가령 정보-평생교육정책 및 미디어 활용에 의해 초래된다. 농촌지역의 여가-보양가치의 개선과 유지에 대해서, 취업의 장의 창설확보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이 지원된다. 다양한 경우, 환경-자연보호의 목적과 농업-임업의 목적이 밀접하게 조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지로의 입

11) 지역의 높은 실업율, 불충분한 경제성장, 인가증가의 둔화 또는 감소.

지조건과 농업활동은 관광의 장려에 관한 중대한 조건이다(근교레크리에이션).

② 농촌지역에서의 삶의 질의 개선

지역의 현상 분석(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장래 전망은 지속성의 관점을 배려하면서, 인프라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것은 특히 토지의 제공과 토지이용목적의 조정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이해가 된다. 현대적인 커뮤니케이션구조의 조정이 경제활동상 우선과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재정비의 정책은 농촌지역에서 생활의 질과 구조를 개선한다.

지역적인 발전(영업점, 관광 등)을 위한 구상에 있어서 지자체의 발전과 강하게 연결하는 것은 주민의 강력활동을 육성한다. 이 구상에는 경우에 따라 지자체에서 토지의 조정용지관리의 수단도 포함한다. 특히 구 동독의 각 주에서 토지이용 분쟁의 해결과 생활의 질적 향상이 종종 연결되고 있다. 농촌의 건조물의 이용목적 변경은 토지의 불필요한 소비를 감소시키고, 지자체의 주택구조유지에 기여한다. 그 때, 가능한 활동은 자연적·문화적 유산의 유지의 개선과 발전에 대해서도 목적에 추가한다.

여기에는 가령 높은 자연가치를 가지는 지역, 투자와 결과된 자연(비오톱과 물 자원의 자연적 형성), 섬세한 환경보호에 대한 장려가 포함된다.

문화적 유산(가령, 건조물)의 복구는 특히 종합적인 발전구상과 관련에서 지원된다. 자연적, 문화적 유산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은 다면적이고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각 주에 의해 활동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각 주의 발전 프로그램으로 된다.

③ 직업교육과 영농관리자의 정보

전문적 자격취득의 개선을 위해, 그리고 수입활동을 위해 보급지도, 정보, 기타 장려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방 자립활동을 위해 종종 고액의 개시투자과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계 자격-취득기간 중 수입저하와도 연결된다. 사업대응에 따라 생기는 곤란함은 농촌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완화되고 새로운 활동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교육과 능력개발

농촌지역에서 이 행동의 관계자의 동기부여는 평생교육 및 전문지식의 향상은 지역발전전략의 책정과 실천을 배경으로 목적에 따라 경제적·사회적·생태적·문화적 자극을 준다. 동시에 일상생활의 주변에 매력을 창출하고, 장려한 다음 효과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발전구상의 기초가 되는 지역경영은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구상의 수립, 실행(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시의 지역주민에 대한 전달프로세스를 지역의 이니셔티브로 추진한다.

그 때 특히 젊은 사람과 여성이 지역발전프로세스에 대하여 적절히 참여하기 위한 방법이 중요하다. 자발적인, 시민적인 과제에의 대응이 장려되고, 주민의 특별한 생활상황을 바탕으로 결정된 프로젝트로 행해지는 것도 가능하다.

○ 중점사항 4 : LEADER

LEADER(Liaison entre actions d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rurale = die Verbindung zwischen Aktionen zur Entwicklung der ländlichen Wirtschaft = 농촌경제개발을 위한 행동의 연계

유럽연합의 농촌경제개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지역의 구조적 지원에 기여하며, 유럽 농촌개발을 위한 농업기금 (ELER)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이 지원프로그램의 목표는 자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의 지원으로, 농촌지역의 구조적 지원에 기여하며, 유럽 농촌개발을 위한 농업기금 (ELER)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LEADER사업이란 「Liaison Entre Actions de D'éveloppement de l'Economie Rurale(농촌경제발전을 위한 활동의 제휴)의 이니셜을 딴 것으로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기획하고, 의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원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U의 재정지원책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촌지역의 공적 기관, 민간기업, NGO·NPO, 주민 등이 중심으로 되어 설립하는 그룹이 실시하는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EU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LEADER 사업의 제1기(LEADER I)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간 실시된 후, 제2기(LEADER II)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실시되었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 LEADER+가 실시되고 있다.

EU의 농업정책은 EU 역내의 농업생산력과 식료품자급율 향상을 목적으로 1960년부터 행해져 온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이하 「CAP」)을 목적으로 하지만, LEADER 사업은 농촌에 관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CAP와 공통점이 있다.

다만, CAP가 농업진흥·농가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가격·소득정책(개입매수), 수출보조금, 직접지불과 농촌개발정책(낙후지역대책, 농업환경정책 등)을 행하고 있는데 비해, LEADER사업은 농촌지역전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업을 포함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LEADER사업의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CAP의 수익자는 주로 농가이지만, LEADER사업의 수익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체이다.

LEADER 사업이 시작된 배경에는 CAP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농업협상의 영향, 농촌의 쇠퇴 등이 있다. EU에서 CAP의 두터운 보호는 각 회원국의 농업생산력과 식료품자급율의 향상에 기여하였지만, 다른 한편 재정부담의 증대, 농산물의 생산과잉, 지역간·농가간의 격차확대,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대량사용에 의한 환경악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했다. 또한 WTO 농업협상의 과정에서는 가격지시나 수출보조금이라는 정책수단에 대하여 삭감압력이 더해져, 그에 대신하는 정책에 의해 역내 농업을 보호할 필요가 절실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EU는 지금까지 개입매입가격의 인하, 직접지불의 도입, 환경보호형 농업으로의 전환촉진 등의 개혁을 해 왔다. 중유럽 및 동유럽국가의 신규가입으로 증대한 CAP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과

제가 된 가운데, LEADER 사업은 일부분이지만 대안적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EU 역내의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자의 이농, 젊은 사람의 유출, 고령화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교통이 나쁜 지역 등에서는 도시로 출근하는 것이 어렵고, 향토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게 된다. 농촌이라고 농업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의 진흥도 필요한 상황이다. LEADER 사업은 이러한 내외의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출범한 것으로 농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농촌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EU의 정책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3. 정보격차의 해소

(1) 독일의 광대역망 구축계획¹²⁾

1) 개요

독일은 전통적으로 국영기업이었던 Deutsche Telekom의 망을 중심으로 전화선과 ADSL을 중심으로 망을 구축하였고, 망임대를 통하여 지역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지역통신시장에 참여하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케이블티브이망과 XVDL망을 통하여 광대역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광섬유망의 가설은 더딘 편이다. 2007년만 해도 독일은 연방경제부의 조사에 따르면, 초당 128Kbit 수준의 낮은 전송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2009년 중반까지 1 Mbps(Megabit pro Sekunde)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2008년에 연방수상인 앙겔라 메르켈은 3차 IT정상회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향후 3-4년 내에 평균적인 광대역망 접속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에 광대역망을 통한 인터넷접속으로 기회

12) 길준규, “광대역망 구축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법정정책적 고찰”, 法과 政策研究 11-4, 2011, 12쪽.

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모바일망, 유선티브이망과 기존의 DSL망의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2009년 2월에는 제2차 경기부양책으로 ‘광대역망전략’을 발표하여 광대역망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는 광대역망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이 없으며, 2014년까지는 모든 국민에게 50Mbps의 광대역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2) 광대역망 구축을 위한 입법조치

모든 광대역 통신망의 개선을 위한 공적 지원프로그램에 있어서 원칙이 되는 것은 경제적, 인프라구조적, 지형적 여건에 있어서 시장성이 없는 지역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종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 실행가능성조사 및 자문
- 광대역통신망 또는 지역광대역망의 공급
- 광대역망설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선로의 가설

이러한 지원은 일면 연방·주 또는 유럽연합의 재원으로 조달된다(이른바 공동 재정지원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되는 점은 어떠한 재원을 이용하건 행정은 당해 주정부의 관련부서에 의해 집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의 관련부서는 광대역망지원프로그램의 담당기관이 된다.

전형적인 광대역지원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

운영자의 증설계획을 고려한 불충분한 광대역망의 증명 → 광대역 연결에 대한 수요의 제시 → 사업자가 보조금이 없이는 광대역망의 공급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 공개입찰 등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택절차 → 지원신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3) 광대역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프로그램 및 근거법률

독일의 연방경제·기술부(BMWi)와 연방식품농업소비자부(BMELV)는 주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광대역망 구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농촌의 정보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¹³⁾

(가) 「농업구조 및 해안선보호의 공동체의 개선과제로서의 공동체 농촌지역에서의 광대역망지원」

독일의 농업구조개발계획(Die deutsche Agrarstrukturelle Entwicklungsplanung, AEP)은 농업에서의 전문계획으로서 횡단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이는 법률(GAK-Gesetz) 제1조2항에 따라 사전계획(Vorplanung)의 효력을 가진다.

그 실시는 연방-주의 공동과제로서의 농업구조 및 연안보호(GAK)의 수단으로 지원된다.

내용상으로 AEP는 비공식적 수단으로서 작은 규모의 농촌지역에서 농업의 의미를 확보하고 다른 토지개발수요(가령 주거지역)와의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한다. 그 실효성은 관계자들간의 협의를 지향하는 공동작업 및 공식적 계획업무에서 결과통합의 논의 기초로서의 기능에서 나타난다(특히 지역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이에 관한 근거법률로서 「농업구조 및 연안보호의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약칭 : GAK-Gesetz - GAKG)이 있다.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공동의 과제(Gemeinschaftsaufgabe)

제2조 총칙(Allgemeine Grundsätze)

제3조 지원유형(Förderungsarten)

13) 이하의 프로그램 및 근거법률에 대한 자료는 독일 연방경제·기술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와 연방 식품농업소비자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가 공동으로 발간한 「Möglichkeiten der Breitbandförderung」(2010/2)에 따른 것이다.

제4조 공동의 대강계획(Gemeinsamer Rahmenplan)

제5조 대강계획의 내용(Inhalt des Rahmenplans)

제6조 계획위원회(Planungsausschuß)

제7조 대강계획의 통보(Anmeldung zum Rahmenplan)

제8조 대강계획의 의결절차(Verfahren nach Beschluß über den Rahmenplan)

제9조 대강계획의 실시(Durchführung des Rahmenplans)

제10조 상환(Erstattung)

제11조 연방재원의 반환 및 이자(Rückzahlung und Verzinsung der Bundesmittel)

제12조 시행(Inkrafttreten)

**(나) 지역의 경제구조 개선의 공동체과제에서의 중소기업경영을 위한 광대역
망 연결의 지원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약칭 : GRW)**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은 주정부의 임무이다. 주정부의 임무에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경우는 사안이 연방과 주가 공통적으로 관련되며, 연방의 협력이 생활관계의 개선이 긴요한 경우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의 임무’(Gemeinschaftsaufgaben)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연방과 주는 다음의 조치들을 공동적으로 수행한다.

- 중소기업경영의 설치, 조정, 전환 또는 근본적인 합리화를 위한 투자촉진
- 지역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내부구조의 투자촉진
- 지역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비투자적·기타 기업경쟁력 강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역정책적 후원, 지역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치
- 조치에 대한 평가 및 그와 관련된 지역정책연구

근거법률로 「지역의 경제구조 개선의 공동체과제에서의 중소기업경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광대역망 연결의 지원에 관한 법률」(GRW-Gesetz)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1조 공동의 임무(Gemeinschaftsaufgabe)

제2조 총칙(Allgemeine Grundsätze)

제3조 지원유형(Förderungsarten)

제4조 지역경제촉진을 위한 공동의 조정체제(Gemeinsamer Koordinierungsrahmen für die regionale Wirtschaftsförderung)

제5조 조정위원회(Koordinierungsausschuss)

제6조 실시 및 교시(Durchführung und Unterrichtung)

제7조 재정지원(Finanzierung)

제8조 연방재원의 반환 및 이자(Rückzahlung und Verzinsung der Bundesmittel)

제14조 시행(Inkrafttreten)

(다) 미래투자법률 (Zukunftsinvestitionsgesetz)(약칭 : ZuInvG)

미래투자법률은 2009년 1월, 2월에 의결된 제2차 경기패키지(Konjunkturpakets II)의 전환을 위한 법적 수단이다.

동법의 기본적인 지원목표는 전체경제의 동등성의 저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동법 제1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위한 재원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때 주정부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주정부의 자원분배는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민 인구수에 맞춘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라) 지역발전을 위한 유럽기금(Der Europäische Fonds für regionale Entwicklung, EFRE)

‘유럽연합 지역기금’(EU-Regionalfonds)으로 통칭되곤 하는 동 기금은 유럽연

합 내에서 가난한 지역에 대한 경제적 만회절차를 배려하는 중요한 구조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히 중산층의 기업을 지원하며, 이로써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구조프로젝트를 실시하며, 기술적 지원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2007-2013 기간 EFRE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 일치(Konvergenz)
- 지역의 경쟁력 및 일자리(Regionale Wettbewerbsfähigkeit und Beschäftigung)
- 유럽의 지역적 협력(Europäische territoriale Zusammenarbeit)

(마)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Der Europäische Landwirtschaftsfonds für die Entwicklung des ländlichen Raums)(약칭 : ELER)

이러한 기금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조성된 기금에 의하며, 그 법적 근거로는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을 통한 농촌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한 규칙」(ELER-Verordnung)이 있다.

☞ 이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 본 ELER규칙 참조.

프랑스의 농업 농촌 정보화 정책

I. 프랑스의 농업·농촌 정책 추진 배경

1. 정책 개요

프랑스의 농촌과 농업의 개발은 유럽연합의 농업정책의 한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진다. 즉, 프랑스의 농업 및 농촌정책은 유럽농업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진행된다. 그러한 영향 하에서의 프랑스 농촌정책은 농촌의 사회정책(인구정책, 서비스산업 등), 경제정책(경제활동, 자원, 농촌고용문제), 환경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촌정책은 시골과 도시간의 상호보완성(complémentarité)를 향상시키고, 시골지역의 특별한 자원들을 더욱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1999년 3월 25일 베를린에서 농촌지역의 개발에 의하여 농산물가격과 농산물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AC의 임무를 보완하는 결정을 하였다. 유럽농업정책(La Politique agricole commune (PAC))에 따른 프로그램은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기능의 다양화, 농촌 환경의 보호 및 지속적 개발에 공헌하는 산림지역의 보존의 장려, 시골지역의 경제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1) 2000-2006년 간의 기간

프랑스의 농업정책은 유럽의 농촌정책에 따라서 유럽이 규정한 농촌개발규정에 따르는데, 결국은 농촌개발의 유럽정책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것은 농업분야의 재구조화를 위한 조치, 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적 조치, 시골공간의 관리(Natura

2000), 시골경제, 농촌경제, 농촌개발을 포함한다. 이것은 2가지의 그룹으로 부별 되는데, 1992년의 개혁을 보완하는 조치로서 사전 퇴직, 농촌환경 조치, 산림, 낙 후지역에 대한 체제개혁조치이다. 두 번째로는 농촌개발의 다양성과 현대화조치 이다. 즉, 농촌개발에서 있어서의 투자, 젊은 농업인의 양성, 상업화와 변화를 위 한 투자의 유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에 의한 것보다는 지방정부인 레지옹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2007-2013년의 기간

유럽연합은 2007-2013년 동안 적용될 유럽연합에 의한 농촌개발프로그램을 새롭게 결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농업분야 및 임업분야의 경쟁력강화, 농촌지역의 환경 개선,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과 농촌경제의 다양화, 리더프로그램(programme Leader)¹⁴⁾의 추진이다.

(3) 유럽농촌정책의 프랑스에서의 적용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계획프로그램에 의하여 농촌에 6개의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그 중에서 1개는 해외령에 적용되는 것이고 5개만 본토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랑스 농촌정책은 레지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 농촌정책은 자연으로 인하여 열등한 지위를 가지는 농촌지역에 보상을 해 주는 정책(Les indemnités compensatoires de handicaps naturels (ICHN))으로 구성된다.

2. 정책의 기본방향

14) Liaisons Entre Actions de Développement de l'Economie Rurale:LEADER : 농촌경제개발행위들의 연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1) 농촌활동의 성장의 다양성 확보

프랑스의 농촌은 농업(농촌체험, 농촌 여행, 농촌탐방 등을 포함)이외의 수입을 확보는 측면에 있어서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이하이다, 즉 유럽의 평균은 농업이외의 수입이 농촌소득의 31.2%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프랑스는 23.9%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간의 격차도 심한 편이다. 즉,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 중에서 농업이외의 소득이 45.3%에 달하는 레지옹이 있는 반면에 17.4% 밖에 되지 않는 레지옹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농산물, 질적 산출물, 경관, 재창조의 성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욕구가 농촌사회의 이슈가 되었다. 다양성의 개발은 시골개발의 목표가 되고 있다.

산업과 서비스에 있어서, 프랑스 경제구조는 유럽의 조치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농촌에서의 이차산업은 농촌에서의 농산물생산 보다 그 중요성을 낮은 반면에 농산물의 생산 개발이 더욱 발달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므로 이차산업보다 일차산업의 경제적 무게가 국가전체적 수준에서 보다 농촌지역에서는 훨씬 더 중요성을 가진다.

시골지역에서의 관광산업은 한창 개발 중에 있다. 2004년에 2억400만 유로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골은 제2의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전체 여행객의 35-40%로 시골을 목적지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농촌의 고용에 있어서 보고(寶庫)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로서 발전한 활동으로서 가내수공업은 농촌의 근본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가장 시골지역이 많은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은 지역경제의 절반이 가내수공업에 기초하고 있다.

프랑스의 농촌주민은 2280만명으로 인구의 39%를 차지한다. 그중에서 프랑스 국토의 59%를 차지하는 시골지역의 인구는 1050만에 이르고 1230만명은 도

시주면의 시골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농촌정책의 중요성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은 부분에 속한다.

프랑스 농촌인구에서 주목할 점은 1975년 이래서 매년 0.2%로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순수한 시골마을 보다는 도시 주면의 시골인구의 증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1995년에 시골지역의 인구의 25%이상이 60세 이상이었다. 당시의 프랑스 평균적으로 60세이상은 전체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었다.

프랑스가 유럽전체에 비해서 서비스가 약간 발달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 서비스제공에 있어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서비스제공 기관의 숫자에 있어서 매우 낮아서 자신들이 자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토대를 갖추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프랑스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터넷의 발달이 늦은 편이다. 하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도시와 시골 및 도시주변 시골간의 인터넷발달은 격차는 크지 않은 편에 속한다.

(2) 농촌개발을 위한 국가의 전략

프랑스의 농촌개발정책은 유럽의 농촌개발정책(le Fonds Européen Agricole de Développement Rural (FEADER))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의 농촌정책은 유럽의 농촌개발정책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경제구조를 고려하고 다가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럽의 농촌개발정책(le Fonds Européen Agricole de Développement Rural (FEADER))에서 지원받는 자금의 40-45%를 다음과 같은 농촌경쟁력강화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즉, -농산물 가공활동의 혁신능력의 개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질과 혁신분야를 통합한 농산물 생산과 농산물가공의 적절한 연계
- 목재관련사업의 경쟁력 향상

2) 환경개선과 공간관리를 위해서 유럽의 농촌개발정책에서 지원 받는 자금의 45-50%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지역의 균형발전
- 지속적 농업을 위한 자연자원상태의 보존
- 지역의 지속적 정비 도구로서 숲의 촉진

3) 유럽의 농촌개발정책에서 지원 받는 자금의 10-15%를 농촌경제의 다양성과 시골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 시골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활동의 개발 및 유지
- 농촌지역의 주민을 위한 주택정책의 개발과 관리
- 농촌지역의 문화유산의 관리와 발전

4) LEADER¹⁵⁾에 접근을 실행하기 위해서 5%이상을 지출한다.

II. 추진 체계

1. 기구

(1) 프랑스 농업정보화 협회(Association Francophone d'Informatique en Agriculture - A.F.I.A.)¹⁶⁾

1) 목적

15) Liaisons Entre Actions de Développement de l'Economie Rurale:LEADER : 농촌경제개발행위들의 연결

16) <http://www.informatique-agricole.org/lassociation/>

프랑스 농업정보화 협회는 1993년 6월 23일 관보에 그 목적을 게시하였다.

농업정보화 협회의 목적은 ① 농촌지역과 농업 서비스의 정보 사용과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자연인과 법인들 상호간에 정보를 수집하고 발전시키는 것. 예를 들면, 프로그램 및 시디롬의 사용 및 생산자 (예를 들면 인터넷 사용자), 농업서비스의 조직 및 개발의 기술자, 연구자, 선생

② 교류와 정보에 관한 새로운 기술 및 그것의 사용가능성에 대하여 멤버들에게 정보전달.

③ 국내 및 국제의 교류(특히 유럽연합)의 개발.

④ 농업에 있어서 자동화 및 정보화 시스템의 실현 및 연구에 관한 조직의 활성화 촉진

2) 활동

농업정보화 협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a) 회원들에게 특별한 것과 주요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연감으로 제공한다.

b) 농업정보화 협회는 전자문서의 출간과 포럼 조직을 통하여 문제가 되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 및 업무의 촉진과 상호교류의 가능성을 높인다.

c) 협회는 새로운 기술 및 접근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공론화, 연구, 세미나의 조직을 통하여 지식을 향상시킨다.

3) 협회의 구성정보

a. 협회의 주소 : Association Francophone d'Informatique Agricole (AFIA)
c/o I.S.A.R.A à l'attention de JM FERRERO, 23 rue Baldassini, 69364
LYON Cedex 07

b. 조직의 연락처 :Président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Guy WAKSMAN, Retraité de ACTA Informatique, Paris

E-mail : Guy.Waksman[a]laposte.net

Vice-présidents

Mehdi SINE, Chef de Service SI et Méthodologies, Arvalis - Institut du végétal

E-mail : m.sine[a]arvalisinstitutduvegetal.fr

Jean-Pierre CHANET, Ingénieur de recherche, IRSTEA

E-mail : m.sine[a]arvalisinstitutduvegetal.fr

Secrétaire

Gérald de Cosnac, Responsable du département Management de l'Information, CETIOM

E-mail : sevila[a]ensam.inra.fr

Trésorier

Jean-Marc FERRERO, Retraité de l'ISARA, Lyon

E-mail : ferrero[a]isara.fr

4) 협회의 법적 지위

협회는 프랑스농업정보협회라는 명칭으로 1901년 7월1일 법률과 1901년 8월 16일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협회의 목적은 첫째, 프랑스 언어로 된 농업정보에 관한 연구자, 개발기술자, 프로그램 개발자, 농업정보과 농업정보개발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교수자와 전문가를 모은다.

둘째, 농업에 있어서 정보 및 자동화 시스템의 실현 및 연구에 관한 프랑스 기관의 지식을 촉진한다.

셋째, 회원들에게 새로운 정보기술, 새로운 정보의 사용방법을 농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는 연구세미나를 구성하고 이메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자신의 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전파한다.

5) 협회 회원의 구성

협회 회원은 4종류로 구분된다.: ● Membres actifs (활동멤버)

- Membres d'honneur(명예멤버)
- Membres correspondants(통신멤버)
- Membres bienfaiteurs(후원멤버)

6) 가입요건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총회가 있을 때, 가입신청에 대하여 심사하여 사무국에서 허가를 한다.

7) 회원의 의무

활동멤버는 가입요건에 의하여 가입된 후, 자연인 및 법인의 회원은 협회의 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부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액수의 연간 부담금을 균등하게 지불하여야 한다.

명예회원은 협회에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연간 부담금이 면제된다.

후원회원은 협회의 총회에서 정하는 연간부담금을 매년 기부하여야 한다.

통신회원은 프랑스농업정보화 협회의 활동에 관심 있는 비프랑스의 자연인과 법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은 행정위원회(le conseil d'administration)의 사무국의 제안으로 결정된다.

8) 회원자격의 박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 사임. 사망.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해 당사자가 사무국의 출두명령에 의하여 소명한 결과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자격이 박탈됨.

9) 협회의 재원

프랑스 농업정보협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마련된다.

회원들의 부담금.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기부금.

협회에서 제공되는 것으로부터 얻은 수익.

유럽연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그리고 법적 조건아래에서 모든 다른 종류의 법인이나 협회가 제공하는 보조금.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보조금 및 다른 종류의 재원.

10) 행정위원회(Conseil d'administration)

프랑스 농업정보협회는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이끌어지고 최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2년 임기로 선출되고 매년 위원의 절반을 새로 선출한다.

위원장, 부위원장(다수가능),사무총장 (필요하다면 사무국 구성원도 선출), 회계책임자 (필요하다면 회계실무자도 포함)를 비밀투표로 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

휴가의 경우, 위원은 위원들 중에서 자신의 대리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은 차기 총회에서 교체된다. 위원의 권한은 차기 총회가 열리는 때 즉, 자신의 후임으로 위원이 선출된 때에 끝난다.

행정위원은 협회의 관리, 협회의 발전, 협회의 기능과 같은 협회를 위한 목적 실현에 관련한 모든 작용에 대하여 결정하고 허가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보유한다.

11) 사무국 구성원의 역할

위원장은 총회와 행정위원회를 소집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일반 활동에 있어서 협회를 대표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다. 위원장은 소송에 있어서도 협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아픈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신한다.

사무총장은 행정문서와 서신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리고 위원들의 회의록과 문서의 등록을 담당한다. 사무총장이 공석이거나 아픈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회계책임자는 협회의 자산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그는 모든 지출을 담당하고, 위원장의 감독 하에 모든 수입을 관장한다. 그리고 그는 모든 활동에 대한 회계를 담당한다. 회계책임자가 공석이거나 아픈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권한을 대신한다.

12) 행정위원회의 개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행정위원회는 6개월에 1번 위원장의 소집이나 위원들 중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로서 결정된다. 위원들의 결정이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결권을 가진다.

행정위원회의 위원이 소명 없이 연속적으로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사임한 것을 간주한다. 불가항력이 아니라면 누구도 위원을 대신할 수 없다.

행정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내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협회의 필요의해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다.

13) 일반총회

일반 총회는 통신회원을 제외하고 협회의 모든 회원을 포함한다.

총회는 매년 개최된다.

총회개최일 최소 14일 이전에 협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통보를 받아야 한다. 총회의 일정표는 통지문에 적시된다.

14) 내부규정

내부규정은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세워진다.

이 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은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회의 목적 실현위하여 적용된다.

(2) 농업기술연구 센터(centre d'études techniques agricoles (CETA))

프랑스 농업기술연구센터는 1901년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회이다. 농업기술연구센터는 농업인들이 자신들의 농업과 농산물 보존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협회는 특별한 농업(대규모 농업, 채소 재배, 수목재배, 포도재배 등)을 하는 농민들을 결합시킨 협회이다. 기술위원들은 농장의 방문, 긴급 조치, 특별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협회를 통하여 농민들이 농작물재배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협회의 임무는 작물과 토지의 기능에 따라서 토질을 향상시키는 것, 비료의 계산, 관개의 개량, 생산기술의 향상, 병충해의 관찰과 조치, 병충해 방지를 위한 정보, 적합하고 적정한 농작물의 선택, 기술도구의 사용방법,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의 수집(예, 바이러서, 환경, 법령 등),

농업기술연구센터의 조직

각각의 농업기술연구센터의 가입자는 자신들이 행정 사무국 직언을 선출하고, 그들이 농업기술연구센터를 운영한다. 그리고 위원들은 협회로부터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각 농업기술연구센터는 독립적이지만, 자신들의 활동과 기능을 전국협회의 일원이 된다. 예산에 있어서는 매년 농업기술연구센터의 가입자가 농업재배 면적에 따라서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인 데빠트망의 의회(conseil général)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보충한다.

(3) 농업·농촌정보화를 위한 사례 : 프랑스의 산간벽지 인터넷 제공 및 보조금 지급

프랑스는 산간벽지의 인터넷 제공의 보조금에 대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인 ADSL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위성 인터넷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위성인터넷을 설치하는 비용은 설치비와 장비비를 합쳐서 대략 평균 450유로(원화로 약 675000원)정도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레지용 단위(광역자치단체 단위)나 데빠트망 단위(중간정도의 광역자치단체-우리나라의 도 단위로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다. 보조금 지급의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조금의 지급방법도 위성 인터넷 설치비와 장비구입비를 구별하여 설치비와 장비구입비 모두를 보조해주는 곳이 있는 반면 둘 중에서 하나만 보조해주는 경우 혹은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위성 인터넷을 사용을 위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모두 받는 곳도 있고 전혀 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 현재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중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곳은 50%정도이고 일부지원해주는 곳은 35%, 모두 지원해주는 곳은 15% 정도이다.

II. 농업 농촌정보화를 위한 제도 :

1. 농촌개발네트워크의 구축(Le Réseau européen de développement rural : REDR)

(1) 농촌개발 네트워크 구축의 이유

1) 목적

농촌개발과 관련된 유럽의 법은 각 회원국이 농촌개발영역에서 일하는 행정과 조직들을 통합하는 국가의 농촌망을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망 구축 계획은 농업에 관한 경험과 기구, 정보프로그램의 수립, 교환가능한 좋은 경험들의 분석, 투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상호 교류할 수 있고 농촌간의 협력을 위해서 기술의 축적을 통해서 농촌지역의 활동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망의 기능은 특히 기술적 지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행정적 관리

에 필요한 비용, 관리에 있어서 적용되는 행위형태, 정보시스템의 실현 등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의 국토정비계획은 항상 특별한 도구를 보유하고, 자원의 개발을 촉진하는 농촌지역의 구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정책은 오늘날 농촌지역개발의 받침목 역할을 하는 도구로서 역할과 상호 연대의 망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농촌망 구축 운동은 정부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촌개발의 망은 농업, 임업, 환경, 사회경제적 접근의 더 나은 통합 위한 정당성을 제공하고 국토활용에 더욱 효율성을 갖도록 한다.

2) 망의 역할

농촌망은 경기, 자본화, 정보, 지원, 협력 등에 따라서 서로 결합된다.

농촌개발에 기여하는 망과 사람들을 정의하고, 그들의 관계를 정립한다.

a.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고하고, 정보교환을 조직한다.

- 농촌지역의 특성 : 농촌의 현재 상태, 필요한 것, 개발의 잠재성
- 지역단위, 국가단위, 유럽단위에 맞는 목표
- 농촌지역개발에 기초가 되는 규정들 : FEADER, 유럽단위의 도구, 국가단위의 도구(특히 농촌지역의 개발에 관련되는 법률), 지역단위의 도구.

b. 농촌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을 정의하고 조직한다.

- 기술적 사항, 법률적 사항에 대한 정보화의 가능성 특히 헌법을 통하여 지역행위의 그룹화를 목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공학적 지원
 - 기술 및 법률적 지원
- c. 농촌개발 프로젝트의 내용과 관련하여 좋은 사례들을 자본화하고, 확산시킨다.
- d. 지역단위를 그룹화하여 일관성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담보한다.
- e.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네트워크에 대한 국가단위의 중점사항들과 활동들의 일관성을 담보한다.

(2) 농촌개발 네트워크 구축의 체계

1) 유럽의 네트워크

유럽의 네트워크(Réseau européen): Le Réseau européen de développement rural (REDR)

유럽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기초는 2007-2013 농촌개발규정(règlement de développement rural 2007-2013)¹⁷⁾에 두고 있다.

농촌개발의 유럽네트워크는 2008년 10월에 유럽 전체 차원에서 농촌개발의 활동가들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농촌개발의 유럽네트워크는 EU의 회원국들이 농촌개발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촌개발에 있어서 현 상황과 그에 대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알리는 역할,

시골지역에 있어서의 발전에 대한 정보의 제공,

세미나 및 모임을 조직,

농촌개발정책의 발전과 실행등과 같은 경험의 상호 교환을 쉽게 할 목적으로

17) http://enrd.ec.europa.eu/en-rd-events-and-meetings/events-calendar/en/events-calendar_en.cfm

네트워크를 조직 및 구성 하는 것,

국가간의 협력의 기초와 국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농촌네트워크는 농촌개발과 농업의 일반적 지침(la Direction Générale de l'Agriculture et du Développement rural)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세 3개의 임무로 세분화된다.

. 3가지 업무형태에 따른 지식의 개발 : 주제에 관련된 업무의 그룹, 농촌개발에 중점적 그룹, 국가 주도의 그룹,

. 지식의 공유 : 인터넷사이트, 뉴스레터의 출간, 유럽의 농촌잡지, 회원국가들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의 수집과 경험의 기초자료.

. 협력과 상호교환 : 국가간 협력과 유럽기구의 특별한 원조(Liaison Entre Actions d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Rurale)

2) 프랑스의 국가수준에서의 구축

Réseau rural français = Réseau national + 26 Réseaux régionaux + leur artic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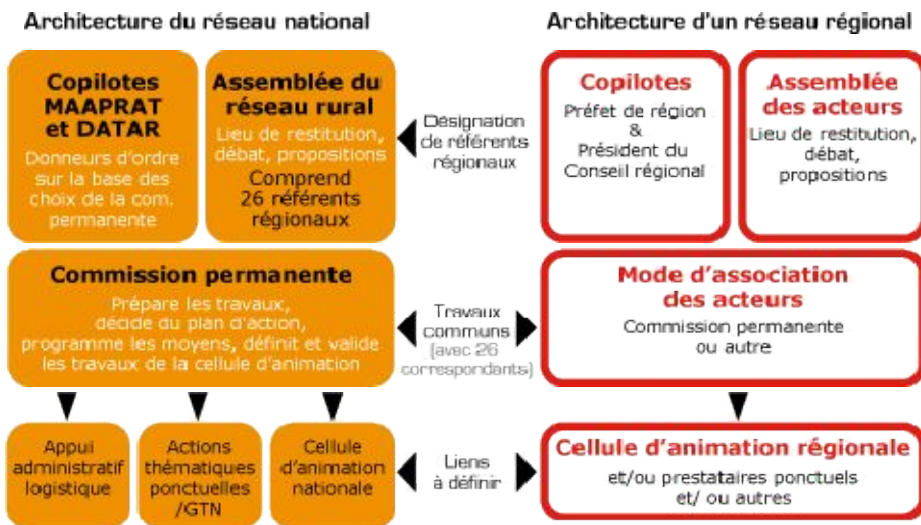


그림 3-2. 프항스 국가수준에서의 구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유럽의 농촌망의 하부 단위로서 프랑스에서는 관리청(l'autorité de gestion (MAP))과 국토경쟁력 및 국토정비의 내무부 위임청(la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et à la Compétitivité des Territoires(DIACT))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가단위와 레지옹 단위에서 수행되는 행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교환의 개선(세미나, 회합, 인터넷 등을 통하여)
- 레지옹단위의 망의 적극적 실현
- 프로그램실현을 위한 정비화 제안
-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다른 활동들과의 일관성 확보.
- 협력 프로젝트의 실행 담보.
- 프랑스 농촌망의 인터넷사이트 구축
- 유럽의 농업정책 수행을 위한 국가 위원회와의 연결 : 즉 프랑스 농촌망의 틀 안에서 수행된 활동들을 유럽에 알리고, 위원회 구성원들의 제안을 수집하면서.

프랑스 농촌망은 국가단위의 망과 레지옹단위의 망을 가지는 활동위원회로 구성된다. 국가위원회에는 MAP와 DIACT를 포함해서 전문가들과 각급 대표자들과 구성되는 집행위원회가 있다.

농촌망의 사무는 유럽의 정책기조에 따라 레지옹 위원회의 틀 안에서 정보와 교류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농촌망의 구성은 전체 레지옹을 총괄하여 이루어진다.

국가단위의 망은 국가 간의 일관성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럽의 농촌네트워크와의 가교역할을 한다.

2008년 4월1일 프랑스농촌네트워크 총회는 기본적 원칙(principes fondamentaux)¹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프랑스의 네트워크와 레지옹의 네트워크

18) http://www.reseaurural.fr/files/01-principes_fondamentaux_du_r_seau-adopt_.pdf

크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프랑스의 농촌 네트워크의 목적은

- 농촌의 전체 활동가들 간의 연결통로의 개설
- 농촌개발의 프로젝트의 통합적 개념 구성
- 유럽농촌개발기금에 의한 재정집행프로젝트의 질적 향상과 유럽 프랑스 레지용 단위에서의 재정집행 가치의 효율성 강화

프랑스 농촌 네트워크는 지속적개발의 원칙과 목적 안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토의 균형적 개발의 비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와 레지용 수준에 적용될 수 있는 행정에 관련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 분업적 업무를 담보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의 실행
- 지역적 단위, 레지용 단위 그리고 국가 단위간의 정보 확산과 협력을 강화할 조치의 실행
- 농촌개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최소단위의 임무에 대한 책임 강화

프랑스 농촌네트워크는 유럽의 다른 국가의 농촌네트워크 그리고 유럽의 농촌 네트워크와 정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프랑스 농촌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 모든 임무에 있어서 농촌개발의 전문가와 조직들을 정의하고 관계를 형성
- FEADER의 프로그램과 주어진 활동들을 정의하고 상호 공유함

농촌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좋은 경험들을 확산하고 자본화한다.

- 기존 업무에 보충적으로 필요한 업무의 요구를 생산.

프랑스는 이와 관련하여 일반총회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기본원칙(dispositions relatives à l'assemblée générale et à la commission permanente)¹⁹⁾을 2009년 12월 17일에 만들었다.

19) http://www.reseaurural.fr/files/principes_fondamentaux_ag_et_cp_3.pdf

3) 레지용 네트워크

레지용 단위의 농촌망은 활동을 확산시키고, 지역의 특별한 사항을 고려하여 뿌리내리게 하고 개발의 지역적 전략을 수행하는 자들과 수익자들의 활동을 독려한다.

그리고 레지용 단위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문제에 대한 활동들을 조직화하고 국가 단위에 이러한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

현재 레지용 단위의 농촌망은 26개 존재한다. 국가단위의 농촌네트워크와 유럽 단위의 농촌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 지역 활동가들에게 적합한 지역 활동을 개발한다.

그 밖에 프랑스 농림부는 농촌과 농업의 개발을 위한 국가계획(Le Programme national de développement agricole et rural (PNDAR))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레지용 네트워크는 프랑스농촌네트워크의 바로 아랫단계의 네트워크이다. 그러므로 프랑스네트워크의 기본원칙들 모두가 여기에 적용된다. 국가단위의 농촌 네트워크에 의하여 구성된 (공동운영자, 전체총회, 상설위원회, 국가의 주제별 구분, 추진의 국가하부 단위) 것들과 유럽 네트워크와 연결됨으로서 레지용 네트워크는 지역의 활동가에게 유익한 것들을 개발한다.

프랑스에는 26개의 레지용 네트워크가 있는데, 지방장관과 레지용 위원회의 의장 혹은 데парта망 의회의 장들과 공동으로 관리된다. 이들은 레지용을 대표해서 다양한 국가적 행사에 참가한다. 그리고 이들은 레지용 네트워크의 활동을 위해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고, 계획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활동의 주제나 형태에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레지용 네트워크의 구성자체는 완전히 자유롭고 다만 레지용 네트워크의 활동은 위에서 언급된 지방장관과 레지용 위원회의 의장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다.

Ⅲ. 시사점

프랑스의 농업정책은 유럽의 농업정책의 연장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농업정책은 유럽의 농업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각종 정책과 법을 운영한다. 유럽은 농촌개발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유럽적 차원에서 농촌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일관된 농촌정책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럽의 농업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프랑스는 국토공간의 관리, 식량과 농업, 숲과 나무, 에너지,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라는 다섯 가지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틀에서 2011년 네 개의 새로운 주제를 새롭게 채택하였는데, 지속적 건설을 위한 지방조직, 농촌의 기업육성, 농촌의 서비스개선, 국토 공간의 계획화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세부적 수단으로서 농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을 전수하여 농촌개발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농촌정보화 법률을 제정하면서 먼저 국가의 농업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그러한 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으로 농촌정보화가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농촌정보화 법률에는 농촌을 정보화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이 국가적 단위와 광역자치단체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단위로 이루어져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정보화의 기본원칙들이 국가단위에서 정립된 후에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지역에 맞는 정보화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정보화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도시근교의 농촌이 있는 반면에 산간벽지와 같이 개인적으로 투자 할 수 없는 농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에서 그러한 정책을 직접 다루고 규정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유럽차원의 농촌개발정책기금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정보 네트워크의 운영이 잘 조직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촌개발과 농촌정보화에 대한 조직의 정립과 예산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농업농촌정보화 법제

I. 미국의 농업농촌 정보화정책

1. 추진체계

(1) 미국의 일반적인 정보화 정책

IT 패권국가를 자부하는 미국은 IT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신기술 확보 및 상용화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국가적 정보화 인프라의 구축을 목표로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미래 정보사회를 대비하여 정보통신 기반을 고도화하는 정책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백악관 내 정보기반전담팀(IITF :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를 구성하여 각 부처별로 추진되던 정보화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범부처적 총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년 부시 행정부는 기존의 정보화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예산권을 지닌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전자정부 및 정보화 프로그램을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2002년에는 OMB 내에 OeG(Office of e-Government)를 설치하여 부처간 중복을 방지하고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정보통신정책은 정부주도의 장기적인 계획 하에 유비쿼터스 관련 핵심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추진의 핵심은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 프로

그램²⁰⁾으로 산·학·관·연에 의한 광범위한 연구개발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다.²¹⁾

미국의 IT R&D 정책 추진의 핵심은 오랫동안 추진되어 온 연방정부 차원의 범부처적 프로그램인 NITRD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은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연구개발(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프로그램'²²⁾의 약자로서, 미국이 유비쿼터스 IT 추진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범부처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IT R&D 프로그램을 말한다. 미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초 연구에서 응용 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연구 성과들은 민간 부문으로 이전되어 상용화를 위한 제품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²³⁾

NITRD 프로그램은 1991년 발의된 고성능컴퓨팅법(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P.L. 102-194)에 의거한 HPCC(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프로그램과 1998년에 발의된 차세대인터넷법(the Next Generation Internet Research Act of 1998: P.L. 105-305)에 근거를 두고 있는 NGI(Next Generation Internet) 이니셔티브로부터 시작되었다.²⁴⁾ 동 프로그램은 HPCC 계획과 NGI 정책 등을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다수의 기관 및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매년 약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는 미국의 IT 부문 연구 개발 프로그램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²⁵⁾

20) http://www.nitrd.gov/apps/steminventory/index.php?title=1890_Facilities_Grant_Program

21) 최호진, 미국 정보통신정책의 추진 동향 및 시사점,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 지역발전연구 제17권 제2호, 2008 참고.

22) NITRD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차원의 범부처적 IT R&D 프로그램으로, 14개 회원기관과 비공식 참여자로 구성된 연방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첨단 컴퓨팅, 네트워킹,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정보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6년에는 국토안보부(DHS)와 국가기록관리청(NARA)이 신규 회원으로 합류하였다.

23) 전통적으로 미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여 왔으나 NITRD 프로그램만큼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정부와 학계 그리고 사회 전체에 미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R&D 투자 중에서 연방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는 R&D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하지만 모든 특허의 40%가 연방 R&D 투자의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4) 이 법들은 연방 기관이 네트워킹과 정보기술 R&D에 대하여 그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그들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현재 동 프로그램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술위원회와 NITRD 분과위원회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회원 정부기관들은 8개의 프로그램 구성분야(PCA : Program Component Areas)의 NITRD 활동과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부처간 실무그룹이나 매달 회의를 통해 공동 협력 업무를 논의하는 각 부처의 프로그램 담당자로 구성된 조정 그룹(Coordination Group)이 각각의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R&D 정책은 NITRD 프로그램에 따라 다수의 정부기관이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제휴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방정부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민간부문에 하여금 상업화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는 불안정한 장기적 연구개발 투자의 위험을 경감시켜줌으로써 민간부문이 시장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연구개발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 발표된 '디지털 번영(Digital Prosperity)'이라는 보고서는 IT기술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설명하면서 IT 기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평가와 이에 맞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IT는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기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 인프라로서 다른 영역의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은 IT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지원하며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8월에는 대통령의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에 의해 NITRD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²⁵⁾ 동 보고서의 취지는 미국의 IT 분야 핵심 프로그램의 전략과 목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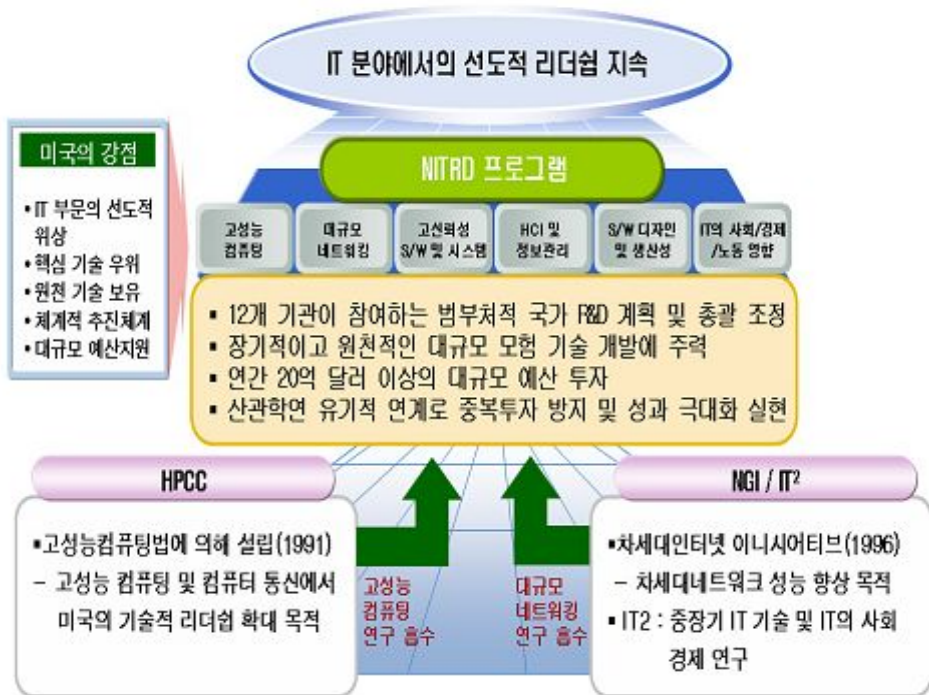
25) NITRD 프로그램의 예산은 행정부의 부처간 R&D 예산 중 가장 우선되는 계획이다.

26) 1991년부터 약 18년 동안 IT분야의 핵심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온 NITRD에 대한 평가는 1999년 대통령정보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s Information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PITAC)가 처음으로 그 성과를 평가한 이후 올해 그 업무를 승계한 대통령의 과학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가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업적을 평가했다. PCAST는 NITRD 프로그램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프로그램 중 가장 모범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 그리고 평가를 통해 추가·보완·수정되어야 될 점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미국이 IT분야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 활동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미국의 유비쿼터스 IT를 포함한 정보화 정책의 추진은 표면적으로는 대학 및 연구소 중심의 실험적 프로젝트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 제품 개발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며 시장 논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민간 부문 연구들이 연방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원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상은 정부 주도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관련 기술 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NITRD 프로그램은 대규모 네트워크,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보관리 등 기술 분야의 원천적인 연구개발은 물론 신기술이 사회와 경제 그리고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영역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05), 「미국의 유비쿼터스 정책 추진 동향」.

그림 3-3. 미국의 정보화(u-IT) 추진 체계

NITRD 보고서에서는 NITRD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즉, NITRD 프로그램을 단순히 실험적 연구개발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21세기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유지, 자국민의 삶의 질 향상, 장기적인 경제 성장 촉진, 국가 보안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목표 달성하기 위해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정보기술 전개를 가속화하며,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미국의 생산성 및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NITRD 프로그램은 정부의 각 부처 및 기관²⁷⁾이 참여한 가운데 부처 횡

27) NITRD 프로그램에서의 기관이란 용어는 연방 정부 산하의 부처, 부처의 주요 실국 또는 연

단적으로 진행되는 8개의 사업구성영역(Program Component Areas: PCA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간 2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있다. 8개의 사업구성영역은 고성능컴퓨팅 인프라와 응용, 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사이버 보안 및 정보보호,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및 정보관리, 대규모네트워킹, 고신뢰성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IT가 사회, 경제, 노동에 미치는 영향 및 IT 인력 양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계와 생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업구성영역에 속한 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담당자들은 매달 관계기관 그룹(Interagency Working Group: IWG)과 조정그룹(Coordination Group: CG)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워크숍이나 비정규모임을 통해 기술계획과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 산하의 NITRD 소위원회(Subcommittee on NITRD)와 기술위원회(Committee on Technology: CoT)는 NITRD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예산안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NSTC의 내부 심의기관이다. 소위원회는 2005년 2월 14일, IT R&D에 대한 IWG(IWG on IT R&D)를 계승했으며, 그 역할은 다기관 NITRD 프로그램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정과 협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위원회는 NITRD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NITRD에 대한 국가조정실(National Coordination Office for NITRD: NCO/NITRD)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NITRD 프로그램에는 건강관리연구및품질청(AHRQ), 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 국토안보부(DHS), 에너지부 산하의 국가원자력보안청(DOE/NNSA), 에너지부 산하의 과학사무국(DOE/SC), 환경보호청(EPA), 국가문서기록보관청(NARA), 항공우주국(NASA), 국립보건원(NIH), 국립표준연구원(NIST), 해양기상청(NOAA), 국가안보국(NSA), 국가과학재단(NSF), 그리고 국방장관실(OSD)과 국방부(DoD) 등과 같은 서비스 기관들이 연구에 참가하고 있다.

12개 이상의 연방 정부 R&D 기관들의 유일한 협력체로서, NITRD 프로그램은

구소 및 실험실을 의미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① 연방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고 21세기 정부와 학계, 산업계의 관심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 유지, ② ‘국가와 국토안전의 증진, 과학, 공학, 수학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 삶의 질을 향상, 장기적인 경제적 성장 장려, 전 생애에 걸친 학습,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첨단 정보기술과 실험적인 정보기술의 전개를 가속화, ③ 정보기술 분야에서 장기적인 과학적, 공학적 연구를 통해 미국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 등이다.

(2) 미국의 농업농촌정보화 정책추진체계

아래에서는 미국에서 농업농촌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농무성(USDA)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정보화 추진체계를 살펴본다.

1) 농촌개발국(Rural Development) 농촌설비과(Rural Utilities Service)

농촌 설비과(Rural Utilities Service, 약칭 RUS)에서는 농촌의 전기, 전화, 통신, 수리시설, 자원재활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나아가 원격교육이나 원격의료와 같은 새롭고 중요한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공공-민간부문간 파트너십을 구축한 결과 수십억 달러의 농촌 인프라 발전이 이루어지고, 수천개의 일자리 창출되고 있기에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불충분한 지역의 농촌설비서비스 보충 전략(Rural Utilities Service Implementation of the SUTA Initiative) 차원에서 정보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법적 근거는 2008년 농업법(Food, Conservation & Energy Act of 2008 (2008 Farm Bill)의 Substantially Underserved Trust Area ("SUTA") 조항이다. SUTA 조항은 농촌설비국으로 하여금 서비스가 불충분한 인디언 부족 공동체에서 전기, 통신, 수리, 하수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재정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2% 이하의 이율 범위 내 재량으로 지원한다. 2011년 10월 14일 농촌설비과는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설비 인프라의 건

설, 개량, 구입을 위한 용자 및 보조금을 부여하는데, 그 법적 근거는 SUTA 고려 요청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한 Section 906 F of the Rural Electrification Act (7 U.S.C. 960f)²⁸⁾이다. SUTA 조항은 2011년 3월 이후 발효되어 농촌설비 과가 브로드밴드 프로그램²⁹⁾을 실시하도록 한다. SUTA 조항의 집행은 하와이, 알래스카, 태평양 도서의 부족 정부, 공동체, 주민들에게 더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미 농무부의 노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SUTA의 집행은 부족들로 하여금 경제발전과 삶의 질을 충족하는 인프라 니즈를 만족시키는 장기적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서, 농촌개발국은 SUTA의 집행에 앞서 30개 부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5일 연방정부와 부족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관계에서 필수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전면 지원을 지시하였다.

또한 농촌개발국은 미국 농촌 원격통신 인프라를 위해 원거리통신 용자 및 보조(Telecommunications Loans and Grants)과 같은 수많은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

(가) 전통적인 전화 용자 프로그램(Traditional Telephone Loan program) :

- 오지 통신, 통신비, 음성 통신 서비스 재정지원에 대한 신용 보증

(나) 농업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Farm Bill Broadband Program)

- 농촌공동체에 대하여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설비의 건설, 개량, 구입에 드는 비용을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재정 용자

- 적용 근거 : 다음 규칙(Rules)

- Federal Register Final Rule February 6, 2013
- Federal Register Interim Rule March 14, 2011
- Federal Register NOSA March 14, 2011

28) <http://www.regulations.gov>.

29) 전기, 통신, 브로드밴드, 수리 및 환경 프로그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정책 대상이 되는 농촌지역(Eligible Rural Areas)은 미국 센서스국(U.S. Census Bureau)의 최근 10년간 센서스 결과로 확정된다. 즉, (a) 인구 20,0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city, town, or incorporated area에 위치하지 않는 지역일 것 (b) 인구 5만명 이상의 city 또는 town에 접해 있거나 가까운 농촌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지역일 것. 농촌지역은 최근 10년간 인구센서스에서 정의된 과밀인구지역(densely populated territory)을 의미한다.

또한 브로드밴드 용자를 받을 자격은 비영리 또는 영리 기관이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1) 법인, (2) 유한책임회사, (3) 협동조합 또는 상호부조조직, (4) 연방에서 인정한 인디언 부족 또는 부족 기구, (5)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또는 그 대리기관, 하부조직을 포함한다.

브로드밴드 용자 서비스를 받는 지역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촌지역 내에 있을 것, (2) 서비스 지역 내 가구의 최소 25%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가구일 것, (3) 서비스 지역에는 3 또는 그 이상의 지역교환통신사업자(incumbent service providers)가 없을 것, (4) 재정 서비스는 농촌시설과(RUS)의 대부 또는 보증의 어느 것도 중복되지 않을 것, (5) 재정 서비스는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시설과의 노력 이전에 곧 적용될 다른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브로드밴드 용자는 농촌지역에서 브로드밴드 속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장비의 건설, 개선, 구입 또는 기타 이와 다른 서비스 제공에 필요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것; 만약 일정한 상황 및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임대 비용 등에만 사용된다.

(다) 브로드밴드 접근 용자 프로그램(Broadband Access Loan program) :

- 농촌공동체에 대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 및 시설의 건설, 개량, 구입에 대한 재정 지원

(라) 원격교육 및 원격의료 프로그램(Distance Learning and Telemedicine

program, 약칭 DLT) :

- 농촌 학교에 대한 전자 교육 자원 도입과 농촌 건강 의료 보조를 개선
- 융자, 보조, 융자 및 보조 융복합을 통해 첨단 원거리 통신 기술은 농촌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의료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원격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교육 및 의료를 실시하는 주식회사(corporations), 파트너십 기업(partnerships) 등 모든 기업체, 인디언 부족 또는 부족 단체, 주립 또는 지방정부, 콘소시엄, 그리고 민간 영리 및 비영리 기관은 프로그램 대상에 해당하지만, 개인은 해당되지 않음
- DLT 100% 보조금은 경쟁방식을 통해 선정되고, 지원금은 50,000~500,000 달러
- DLT 100% 융자 방식은 비경쟁방식을 통해 매년 선정되고, 지원규모는 \$50,000 ~ \$10,000,000
- DLT 보조/융자 혼합방식은 매년 비경쟁방식으로 선정되고, 지원규모는 \$50,000 ~ \$10,000,000

(마) 공동체 소통 보조 프로그램(Community Connect Grant program)³⁰⁾ :

- 현재 경제 성장과 공공 안전 서비스를 위한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 선정된 농가에 대한 재정 지원

(바) 브로드밴드 주도 프로그램(Broadband Initiatives Program, 약칭 BIP)

법적 근거는 미국 회생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약칭 Recovery Act)이다. 이 법은 경제 위기 동안 전국적으로 경기 부양 도모, 그 중 브로드밴드 서비스 접근권 제공을 통해 모든 미국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브로드밴드 주도 프로그램에 따른 융자, 보조, 융보조 융합정책은 미국 농촌 지역에 걸친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접근과 품질을 급속도로 개선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Recovery Act의 입법목적 달성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9월 30일까지 총 3.529십억달러

30) <http://www.gpo.gov/fdsys/pkg/FR-2012-11-16/pdf/2012-27631.pdf>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총320개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80만 농가, 364,000 기업체, 32,000 선도기관이 혜택을 보았다. 또한 31개 인디언부족지역과 125개의 빈곤지속지역도 혜택을 보았다.³¹⁾ 이 프로젝트는 25,000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여 broadband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각 농촌공동체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BIP 위성 프로그램(BIP Satellite Program)³²⁾이 있는데, 이상 broadband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사용자들에게 위성 broadband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사설 위성 업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 원격통신 인프라 융자 프로그램(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Loan Program)

농촌지역 원격통신 서비스를 설비하고 개선하는 전화선, 설비, 시스템의 개선, 확대, 건설, 구입 그리고 운영에 대하여 재정지원할 목적으로 적격 대상 기관에 대하여 장기적인 직접 융자와 신용보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모든 설비는 broadband 서비스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은 주민이 5,000명을 초과하는 도시 지역 내 구역은 포함되지 않는 육지와 섬을 가리킨다(섬에는 태평양 내 미국령 포함한다.³³⁾ 인구는 통계청 조사가 기준이다. 농촌지역에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차 제공하려 하는 법인, 1949년 10월 28일 현재 농촌지역에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단체, 협동조합, 비영리기구 등은 포함하지만, 개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대상의 자격은 RE Act의 입법목적에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및 인력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기업체일 것; 신청 당시 24개월 이내 중죄를 저지른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 연방 세금을 미납한 법인은 제외; the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2012, P.L. No. 112-55에 따른 요건을 구비한 법인일 것 등이다. 신청은 매년 접수하며, 비경쟁

31) 인디언 부족지역의 정의는 다음 법령 참조: An Indian tribe, as defined in section 4 of the Indian Self-determination and Education Assistance Act (25 U.S.C. 450b)

32) <http://eligibility.sc.egov.usda.gov/eligibility/welcomeAction.do>

33)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and the Republic of Palau

방식, 용자의 형태는 현금 형태의 비용 용자(Cost-of-Money Loans), 보증용자, Hardship Loans의 3가지이다.

(2) 정보화담당관(CIO, Chief Information Officer)³⁴⁾/정보화담당관실(OCIO, Office of CIO)

정보화담당관실(OCIO)는 USDA의 정보기술의 개발, 전파, 보안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는 7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목표는 정보화업무를 통한 USDA의 다양한 사업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해 관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며, 고도로 숙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조직의 사명으로 USDA OCIO는 USDA 모든 사업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농산업 정보 기술을 개발, 전파, 보안 등이다.

전략적 목표로는 ① 모든 USDA의 전략적 우선 순위 및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과업 중심 및 사업 주도형 정보투자 강화하고, ② 정보자원의 확보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독, 책임, 계획 수립하며, ③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보안 정책 및 운영을 통합하여 사전 예방 및 강력한 보안 환경을 구축한다.

OCIO의 책임사항으로는, 정보화담당관(CIO)은 문서화작업 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과 정보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의무에 일치하도록 USDA 정보 관리 강화 원칙을 준수한다. 구체적으로는

- 공식 온라인 저장소(official online repository)에 모든 USDA 부서 규정, 공지 사항, 설명서 및 사무 문서의 관리
- USDA 기록 관리 프로그램
- USDA는 관리 프로그램 양식
- USDA 정보 수집

34) 홈페이지 <http://www.ocio.usda.gov/>.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정보 품질 활동
- 전자정보 또는 정보기술에 관한 제508조(Section 508)의 준수

(3) 미 농무성의 정보화 체계

정보화정책, FOIA, 전자정부를 통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개인식별정보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현재와 관련된 전략적 계획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육성한다. 정책과 정보기술(IT) 전략 기획을 주도한다.

정보 자유 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약칭 FOIA)에 따라 CIO는 특히 장관, 차관, 여러 유관기관과 FOIA법에 따라 FOIA 책임을 감독한다. FOIA 기능은 농업 부문에 대한 중요한 기능이며, 법령에 의해 집행한다. PD(Policy and Directives) 부서는 FOIA 책임자로서 FOIA 서비스 센터를 지도하고 FOIA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연간 FOIA 보고서를 준비하는 등의 정책 요구 사항, 연간 FOIA 책임자의 보고서 준수를 촉구할 책임이 있다. FOIA 서비스 센터는 USDA에 대한 FOIA 정책을 개발하고 매월 FOIA 임원 회의를 실시하고, 교육을 개발하고 법무부의 최고 FOIA 책임자의 회의에 참석한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USDA의 연방 법률에 의해 위임되는 임무의 일환으로 수집하고 사용하는 개인 식별 정보 (PII)에 대한 업무 처리도 한다.

그리고 전자 정부 관련 USDA 차원의 정책, 표준 및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한 절차의 개발 및 구현에 대한 감독과 지침을 제공한다. PD의 전자 정부 오피스, 전자 정부 대통령령 및 업무라인뿐만 아니라, 전자 정부에 관한 관리 및 예산 부처에 대하여 USDA의 연락을 위한 센터 역할을 한다.



그림 3-4. 미 농무성의 정보화 시스템

이와 관련된 법령(Laws & Regulations)으로 먼저 법률로는 “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29 U.S.C. § 794d”³⁵⁾가 있다. 508 법령이란 연방기관의 '전자 및 정보기술(EIT)은 직원 및 일반인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액세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이다. 508 법령에서는 연방정부에 의해 개발된 모든 전자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요구 사항을 수립, 유지, 조달한다. 전자 및 정보 기술 등 관련 용어는 "2000년 12월 21일 발행 규정에 액세스위원회“에 의해 정의되어 있다.

다음 농무부 고시로서 “전자 및 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³⁶⁾이 있다. 이 규칙은 제508조의 구현에 관한 USDA 기관 및 직원 사무실에 지침을 제공한다.³⁷⁾

35) Final Rule (<http://www.access-board.gov/sec508/standards.htm>); Text to Speech (<http://www.access-board.gov/508.htm>)

36) 최종 규칙 (<http://www.access-board.gov/sec508/summary.htm>)

37) (<http://www.usda.gov/procurement/policy/advisories.html>) USDA AGAR Advisory No. 49 Regarding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Procurements; Regarding Additional Resources for Implementation of 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ND Instructions Specifically Addressing Purchase Card Users

2.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해소

(1) 이론적 근거 : 보편적 역무이론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하는 이론적 기반은 보편적 역무이론이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문헌은 주로 미국의 보편역무개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³⁸⁾ 그러나 미국에서 보편역무의 역사적 생성은 대륙법계인 우리와는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규정하기 위하여 미국의 보편역무발전을 우선 개관해 보기로 한다.

미국에서는 1876년에 처음 전화기가 발명되면서 통신서비스(당시는 전화서비스)가 시작하였다. 물론 이는 전화발명자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중심으로 벨 회사가 설립되었고, 이 회사가 1885년에 설립한 장거리 전화를 위한 자회사가 오늘날의 'AT&T'로 발전하였다. 이 회사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Bell system을 이용하였으므로 '벨계열'이라고 불리우며 이후의 AT&T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전화)통신시장은 1907년부터 벨의 전화특허가 만료되면서 종전의 벨계열전화회사와 다른 회사간에 나뉠대로의 경쟁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회사간의 (통신)망을 둘러싼 경쟁으로 각 회사가 회사간의 상호접속을 거부하면서 시장경쟁에 따라 기업간의 인수합병이 빈번하였다. 물론 미국의 초기 전화회사들은 장거리망을 가진 벨계열의 AT&T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영세한 지역전화회사들이었다.

이러한 초기 통신시장상황에서 유일한 장거리전화회사인 AT&T 사장인 테오도어 베일이 자사의 마케팅 전략으로 1907년부터 '전 미국에 적당한 가격에 기본 전화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목표하에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정책 그리고 보편역무"(One system, one policy and universal service)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였다. 이는 벨시스템으로의 통신시스템 단일화를 통하여 사실상 AT&T의 미국 전화시

38) 많은 것 대신에 김형찬, "보편적 서비스 비용분담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논의의 개요와 미국의 사례", 『정보통신정책』 제10권 제18호, 1998.10.1, 1쪽이하 홍명수,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경쟁정책", 『인권과 정의』 2005년 3월호, 132쪽 이하. 이는 우리 통신법이 여전히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자 등에 의하여 연구되는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장독점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미국정부는 이 제안을 군사적·상업적·정치적인 이유에서 ‘전 미국에 걸쳐 통신망을 가설한다’는 생각하에 국가정책으로 승인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자사독점화전략을 국가적인 필요에 따라 승인한 것이다. 나아가 미국정부는 이러한 AT&T의 전미국에 걸친 통신망 가설을 위하여 ‘연방보편역무기금’을 설립하여 민간사업자(AT&T)의 고비용 저수익 지역의 전화설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연유에서 연방장거리 전화서비스는 ‘보편역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오히려 ‘경쟁’이 대중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AT&T라는 사기업인 ‘하나의 통신회사’에 집중시킴으로서 이루어진 자연독점이었다.

따라서 AT&T는 이러한 미국정부의 지원하에 전화서비스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후의 통신시장에서도 공룡과 같은 독점기업으로서 성장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한 기업의 마케팅 아이디어가 정부의 지지하에 자연독점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성립한 것이 보편역무의 개념이자 명칭이다. 아울러 이러한 AT&T의 천하통일은 1934년 미국 「통신법」에도 보편역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모든 국민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적절한 설비로 적절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된 것이다.

(2) 보편적 역무이론의 법제화

미국에서 보편역무는 이미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법제화되었다. 즉 「통신법」 제1조에 “모든 미국국민에게 가능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전 미국 및 전 세계를 덮는 유·무선 서비스를 충분한 설비와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공해야 하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에서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통신서비스”로 규정되었다.

한편 미국 통신법에서 보편역무는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천하며, 보편역무로 판단하는 기준은 교육, 공중보건, 공공안전에 대한 필요성, 보급정도, 공중통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신망에 의한 제공여부,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보고 있다.

보편역무의 범위는 「CFR 54.101」과 「보편적 서비스 개혁명령」(FCC 97-157)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Single-Party서비스(가입자선로의 배타적 이용권), PSTN에 대한 음성 수준의 접근, 시내통화(local usage), Touch-tone 또는 DTMF 방식에 의한 신호방식, 응급전화(E911 또는 911), 교환원서비스, 장거리 교환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저소득가입자에 대한 toll limitation 서비스이다. 이외에도 학교, 도서관지원제도(E-rate 제도)는 학교와 도서관, 의료시설에 대해 모든 전기통신서비스와 교실간의 내선연결 및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보편역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크게 1) 저소득층의 지원(Low Income

Support), 2) 고비용지역에 대한 지원(High Cost Support), 3) 교육·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저소득층 지원은 연방통신위원회와 주정부가 서로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한다. 고비용지역지원은 통신망이나 설비의 가설비용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기금을 형성하여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 교육·의료기관지원은 종전에 우리나라의 정보화촉진기금과 비교하였던 ‘E-rate기금’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3) 최근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 광대역망 정책도 포함되는가.³⁹⁾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은 광대역망을 통한 IT 인프라 투자이다. 미국은 2008년 리먼사태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확대재정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경기부양 및 투자의 일환으로 2009년에 「경기부양법」(America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를 제정하면서 2009년에서 2019년간 총 7,870억달러의 투자예산을 확정하였고, 그중 420억달러를 광대역망 구축에 배당

39) 길준규, 광대역망 구축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법정정책적 포괄, 법과 정책연구 제11집 제4호, 2011.12 미국사례 참조.

하였고, 이에 따라 의회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게도 광대역망분야의 투자계획을 요구하였다.⁴⁰⁾

따라서 연방통신위원회는 2010년 3월에 2020년까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광대역망서비스, 인프라구축, 투자와 혁신 등을 포함하는 ‘국가광대역망계획’(Connecting America - National Broadband Plan, NBP)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1억 가구에 2015년까지는 20/50 Mbps, 2020년까지는 50/100Mbps, 학교, 병원 등의 공공시설에는 1G bps의 다운로드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⁴¹⁾ 이는 2000년 이후 증가하는 광대역망에 대한 접속률 및 이용률에 따라 보급률을 확대시키므로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⁴²⁾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우선 모든 미국인이 광대역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사회 각분야에서의 광대역망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까지 6대 추진목표를 보면, ① 미국 내 1억 이상의 가구에 최소 다운로드 속도 100Mbps, 업로드 속도 50Mbps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 최대 초고속 인터넷 시장 구축, ② 농어촌 지역에 전화서비스를 지원하던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에서 ‘커넥트아메리카 기금(CAF)’을 출연하여 최대 155억 달러를 조성해 빈곤계층과 농어촌 인터넷 확산을 위해 투자, ③ 학교, 병원 및 공공기관 등에는 최소 1Gbps 초고속 광대역통신망 접속 환경 제공, ④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운용 가능한 전국 무선브로드밴드 공공안전, ⑤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⑥ 미국이 그린에너지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미국인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 등이다.

아울러 광대역통신망 구축을 위한 4가지 기본 정책방향을 보면, ① 경쟁강화정책 : 활발한 시장경쟁을 통한 소비자복지, 기술혁신 및 투자정책 설계, ② 정부소유자산의 효율적 활용 : 정부가 관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재배치, 운영 및 경쟁 진입장벽 완화, ③ 광대역망의 보편적 이용환경 : 미국 전

40) 이상윤, “미국 국가 광대역 계획(NBP)”, 『DigiEco Focus』, 2010.9, kt경제경영연구소, 2쪽.

41) 전수연, “주요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정책과 주파수 할당계획”, 『정보통신정책』 제23권 제13호, 2011.7.16, 1쪽 이하.

42) 윤미영, “미국,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브로드밴드 계획’ 발표”, 글로벌IT트렌드, 201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④ 광대역망 활용 및 여건조성 : 복지, 에너지, 교육 분야 등에 광대역망 활용 극대화 및 관련 법, 정책, 표준 등 개혁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혁신과 투자, 제2부는 정보격차의 해소, 제3부는 국가적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⁴³⁾

(4) 농촌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9.5.22. 농촌 지역의 브로드밴드 전략구상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명은 “Bringing Broadband to Rural America : Report on a Rural Broadband Strategy”⁴⁴⁾이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은 신기술이 아닌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디지털 격차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빈부격차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교육, 보건의료, 공공안전의 질 향상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미국 경제 활성화, 국가 결속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촌 브로드밴드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전략 추진 내용으로는 첫째, 농촌 브로드밴드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방 부처 간 · 연방정부 · 주정부 간 조율을 촉진하고 브로드밴드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 합리화, 기존의 연방 농촌 브로드밴드 또는 농촌 이니셔티브 조율, 특정 연방 부처 프로그램 및 농촌 브로드밴드 요구사항에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브로드밴드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브로드밴드 가용성에 대한 정보, 브로드밴드 배치 및 기반시설에 대한 기술, 브로드밴드 매핑(Mapping), 브로드밴드 수요의 촉진 및 지속방안, 네트워크 비용 등에 관한 평가가 필요함을 밝혔다.

43) 이상윤, “FCC, national Broadband Plan 발표(I)”, 「전파방송통신저널」 제24권, 2010.4, 41쪽 이하.

44) (Report on a Rural Broadband Strategy, 5,22; IDG News, 2009.5.27.

셋째, 농촌 브로드밴드에 대한 장애요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농촌 브로드밴드에 대한 상태 및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의 완료 등 농촌 브로드밴드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가 노력의 측면에서 차기 FCC 위원장은 현재부터 약 1년 동안의 농촌 브로드밴드에 대한 상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3. 농업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응용

농업에 대한 ICT 융복합과 관련하여 미국은 NITRD 프로그램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전공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미 농무부(USDA)가 주무부처가 되는 총 17개의 연구개발 투자프로그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와 같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표 3-1. NITRD STEM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중 미 농무부 주관 프로그램

순번	투자프로그램	내용	담당 기관	프로그램 성격
1	1890 Facilities Grant Program	1890개 농업관련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인력 양성 사이버 교육	NIFA	Agency Workforce Mission
2	1890 Institutions Capacity Building Grants Program: Extension	1890개 기관의 능력양성	NIFA	General STEM
3	1890 Institutions Capacity Building Grants Program: Teaching	1890개 기관의 강사교육	NIFA	Agency Workforce Mission
4	4-H Science, 4-H Youth Development Program	4-H 관련 청소년 과학 교육	NIFA	General STEM
5	AITC Secondary Postsecondary Agriculture Education Challenge Grants (SPECA)	고교3년생에 대한 차세대 농업 교육	NIFA	Agency Workforce Mission
6	AgDiscovery	학생들의 농축산업 전반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2~3주 단기교육	APHIS	Agency Workforce Mission
7	Agriculture in the Classroom	주별로 운영되는 농업관련 문헌, 정보, 지식 교육	NIFA	General STEM
8	Alaska Native-Serving and Native Hawaiian-Serving Institutions Education Competitive Grants Program	에스키모, 하와이 원주민에 대한 특별 교육	NIFA	Agency Workforce Mission
9	Distance Education Grants for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Insular Areas (DEG)	원거리 소외지역을 위한 특별 정보화 교육	NIFA	Agency Workforce Mission
10	Food and Agricultural Sciences National Needs Graduate and Postgraduate Fellowship Grant Program	농식품과학분야 대학원 과정 교육	NIFA	Agency Workforce Mission
11	Higher Education Challenge Grants (HEC)	농축산전공자 채용을 위한 추가 교육 부여	NIFA	Agency Workforce Mission
12	Higher Education Multicultural Scholars Program (MSP)	다문화 가정 출신을 위한 대학교육 기회 부여	NIFA	Agency Workforce Mission
13	Hispanic_serving Institutions Education Grants Program	히스패닉계를 위한 대학교육 기회 부여	NIFA	Agency Workforce Mission
14	NIFA Fellowship Grants Program	농축산전공자에 대한 특별 보수 재교육	NIFA	Agency Workforce Mission
15	New Era Rural Technology Competitive Grants Program (RTP)	바이오에너지, 펄프, 제지산업과 같은 신농업교육	NIFA	Agency Workforce Mission
16	Resident Instruction Grants Program for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Insular Areas	농촌주민에 대한 STEM 대학 교육 기회 부여	NIFA	Agency Workforce Mission
17	Women and Minorities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Fields Program (WAMS)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STEM 교육 및 우대 프로그램	NIFA	Agency Workforce Mission

4. 농업 농촌 정보의 이용, 상호운용성, 표준화, 통신비 지원 기타

(1) 브로드밴드 데이터 개선법 (Broadband Data Improvement Act, 약칭 BDIA)

브로드밴드 데이터의 수집을 향상시키는 법으로서, 2008년 10월 10일, 의회는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도입 및 배치에 대한 향상된 연방 데이터를 제공하는 BDIA를 통과시켰으며,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평가 유형을 추가시켰다.

(2) 경기회복법(Recovery Act)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으로서, 2009년 2월 17일, 의회는 경기회복법을 통과시켰으며, 동법은 FCC에게 “미국의 모든 시민이 브로드밴드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을 개발할 것을 명시하였다. 2010년 2월 17일까지 FCC는 의회에 모든 미국인이 강력한 브로드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도록 명시하였다.

(3) Broadband Internet Access Act :

농촌지역 초고속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저리용자를 제공하는 것이 내용이다.

(4) Community Telecommunications Planning Act :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등이 취약지역에서 통신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5) Internet Freedom and Broadband Development Act :

초고속 인터넷 보급 촉진을 위해 시내전화사업 진입을 규제하는 법이다.

II. 미국의 농업농촌정보화 지원 법제

미국에서 농업농촌정보화만을 위한 연방차원의 일반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농업농촌정보화는 일반적인 정보화 법령이나 특히 농업법(Farm Bill)의 일부조항에 프로그램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도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측면에서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브로드밴드 전략이 중점이라고 볼 수 있다.

1. 연방법제

(1) 미국 농업법(Farm Bill)

미국은 필수품 지원, 영양 지원 및 보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과 식량 정책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 정책의 기본 법적 체계는 약 5년마다 발생하는 입법과정을 통해 설정되는 농업법(Farm Bill)이다. 2008년 농업법(정식 명칭 : 2008 년 식품, 보존 및 에너지 법)은 2012년까지 효력이 있었다. 따라서 2012년 미국 농업법(S. 3240, H.R. 6083, S. 954, H.R. 1947, 이른바 2012년 농업개혁, 식품, 일자리 법, 2012년 연방 농업개혁 및 리스크 관리법, 2013년 농업개혁 및 식품, 일자리 법, 2013년 연방 농업개혁 및 리스크 관리법⁴⁵⁾은 2012년 5월 4일 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동년 6월 21일 일부만 통과되었다. 따라서 2008년 법도 부분적으로 계속 적용되고 있으며, 2013년 5월 14일 농업법안이 다시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2012년 미국 납세자 구제 법안(ATRA)은 2013 회계연도/작물연도 또는 일정연도 말까지 변화없이 2008년 농업법 규정 대부분을

45) Agriculture Reform, Food, and Jobs Act of 2012, the Federal Agriculture Reform and Risk Management Act of 2012, the Agriculture Reform, Food, and Jobs Act of 2013, and the Federal Agriculture Reform and Risk Management Act of 2013.

연장하고 있다.

농업법은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지보전프로그램(Conservation Programs)
- 농업 및 농산물 정책(Farm & Commodity Policy)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식품 및 영양 지원(Food & Nutrition Assistance)
-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Policy)

농촌정보화는 이 중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Policy)과 관련되며, 농업법 제6편 농촌개발(TITLE VI—RURAL DEVELOPMENT)에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해당 조문에 관련 내용을 밑줄로 표시한다.

• 하위 A편 농가 및 농촌 개발 통합법(Subtitle A—Consolidated Farm and Rural Development Act)

- 제6005조 브로드밴드를 이끄는 공동체 시설 보조(Sec. 6005. Community facility grants to advance broadband.)⁴⁶⁾

• 하위 B편 1936년 농촌 전자화 법(Subtitle B—Rural Electrification Act of 1936)

Sec. 6101. Energy efficiency programs.

Sec. 6102. Reinstatement of Rural Utility Services direct lending.

Sec. 6103. Deferment of payments to allows loans for improved energy efficiency and demand reduction and for energy efficiency and use audits.

Sec. 6104. Rural electrification assistance.

46) Section 306(a)(20)(E) of the Consolidated Farm and Rural Development Act (7 U.S.C. 1926(a)(20)(E)) is amended— (1) by striking “state” and inserting “State”; and (2) by striking “dial-up Internet access or”.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제6105조(서비스가 아주 충분하지 않은 신탁령 Sec. 6105. Substantially underserved trust areas.)

Sec. 6106. Guarantees for bonds and notes issued for electrification or telephone

purposes.

Sec. 6107. Expansion of 911 access.

Sec. 6108. Electric loans for renewable energy.

Sec. 6109. Bonding requirements.

제6110조(농촌지역 브로드밴드 원격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Sec. 6110. Access to broadb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rural areas.)

Sec. 6111. National Center for Rural Telecommunications Assessment.

제6112조(농촌 브로드밴드 종합전략)(Sec. 6112. Comprehensive rural broadband strategy.)

Sec. 6113. Study on rural electric power generation.

- 하위 C편 기타(Subtitle C—Miscellaneous)

제6201조(원격 교육 및 원격 치료)(Sec. 6201. Distance learning and telemedicine.)

Sec. 6202. Value-added agricultural market development program grants.

Sec. 6203. Agriculture innovation center demonstration program.

Sec. 6204. Rural firefighters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 assistance program.

Sec. 6205. Insurance of loans for housing and related facilities for domestic farm labor.

Sec. 6206. Study of rural transportation issues.

(2) 2008년 농업법(Farm Bill 2008)⁴⁷⁾

2008년 6월 19일 미국 의회는 「2008년 농업법」을 제정하였으며, FCC 위원장은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장관과의 조율을 통해 2009년 5월 22일까지 의회에 ‘포괄적인 농촌 브로드밴드 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6장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에 농업농촌정보화 관련 내용이 있다.⁴⁸⁾⁴⁹⁾

첫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화 프로그램(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rograms)이 있다. 원격의료 및 원격교육(Telemedicine and Distance Learning)에 대하여 2008년 농업법은 원격의료 및 원격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재인가를 해주었는데, 미 농무부가 원격교육과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건축과 함께 농촌 공동체에 대한 보조와 용자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100백만달러의 기금 인가하여, 2002년 이후 누적 지원분은 170백만달러 이상에 달한다. 회계연도 2012년도 동안 프로그램 재인가하며, 농촌 의료 보장

47) http://www.usda.gov/documents/Bill_6124.pdf; <http://webarchives.cdlib.org/sw1vh5dg3r/http://ers.usda.gov/FarmBill/2008/Titles/TitleVIRural.htm#communication>

48) http://www.rurdev.usda.gov/utp_farmbill.html

49) Title VI: Rural Development

Funds planning, coord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rural 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s. Emphasizes value-added agricultural activities, including renewable energy and locally and regionally produced agricultural products. Funds water and waste disposal application backlog. Prioritizes broadband expansion to underserved areas. Establishes a regional collaborative investment program. Revises definition of "rural" for program eligibility.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시설의 기술 인프라 개선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농촌 병원 및 기타 건강 센터의 정보 기술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원격 의료 및 원격 교육에 필요한 기존 보조에 덧붙여 농촌지역에 공공도서관에 대한 특별지원도 인가하였다.

둘째, 브로드밴드 프로그램(Broadband Programs)이 있다. 2008년 농업법에서는 농촌지역 브로드밴드 통신 접근 개선을 위한 보조, 용자, 용자보증제를 인가하고 있다. 기금은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농촌 거주 문맹 퇴치를 위한 브로드밴드 서비스 장치 및 시설의 건설, 개량, 구입 등을 위한 것인데, 2002년 이후 1.22십억달러의 용자가 40개 주 582,000 농가, 1,263 농촌마을에 대하여 지원이 될 것이다. 문맹 퇴치와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오는 프로그램도 재인가하여, 2008~2012 회계연도 동안 매년 25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될 것이다. 아울러 전국 농촌 브로드밴드 전략 개발을 위한 장관에 대한 지침을 신설하였다. 농촌 원격정보화 평가를 위한 전국센터(National Center for Rural Telecommunications Assessment)에 대한 인가도 하였다.

셋째, 지방 방송 접근 프로그램(Local Television Access Programs)이 있다. 2008년 농업법은 지방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위성 방송 송출국, 지방 방송 송출을 위한 80백만 달러 규모의 용자보증을 인가하였다. 이 기금은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공공 TV 방송국에 대한 기금 지원을 인가한다.

농업법 제14편에는 농촌지역 컴퓨터에 대한 지원(Excess and Surplus USDA Computers to Rural Areas)이 있다.⁵⁰⁾

이는 농촌지역 컴퓨터 과부족(Excess and Surplus USDA Computers to Rural Areas)에 관련된 것으로서, 2008년 농업법 이전에는 유사한 조항이 없었

50) Title XIV: Miscellaneous

Expands provisions targeting socially disadvantaged farmers and ranchers, enhancing outreach, access, and reporting related to USDA program participation. Clarifies USDA Homeland Security Office responsibilities and provides guidance on coordination with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perations. Addresses rural development, agricultural labor supply, animal welfare, closure of USDA Farm Service Agency offices, and reducing methamphetamine production.

다. 농촌지역 시, 구, 지자체 정부에 대한 분배 가능한 컴퓨터 과부족 문제에 대하여 장관에 권한을 부여한다.

Ⅲ. 시사점

미국의 정보화 추진 동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자국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는 점이다. 미국은 자국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향후 도래할 정보화 시대, 즉 유비쿼터스 IT 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즉,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자국이 처한 여건과 현재까지의 노력을 통해 확립한 장점들을 적절히 반영하여 고유한 특성을 살린 맞춤형 유비쿼터스 IT 발전 전략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둘째, 범부처적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미래 정보화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필요한 기술을 연구 개발함에 있어서도 특정 부처나 기관이 아닌 범부처적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관련 기관들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짜임새 있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오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예산의 통합적인 집행을 위한 NITRD 프로그램은 범정부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콘트롤타워로서 협의체를 이끌고 있으며, 농업농촌정보화 관련 연구개발(R&D)도 산·학·관·연에 의한 광범위한 연구개발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다.

셋째, 수요자 기반의 과제해결적 접근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유비쿼터스 IT를 통한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급자 기반의 기술적 접근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국민중심적 접근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즉,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성공 확률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자 기반의 과제해결적 접근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넷째, 농업농촌정보화와 관련하여서는 그 추진체계가 미 농무부인데, 그 안에서도 정보화담당관실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농촌개발국에서는 실행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로서 5년마다 수립, 시행, 소멸되는 한시적인 성격의 유니버스 농업정책을 모아놓은 미국 특유의 농업법(Farm Bill)에서 정보격차를 중심으로 규정하되, 연방차원의 NITRD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도록 유기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록

1. 관련문헌

- 검색 : 미 농무성 경제조사국(Economic Research Service, 약칭 ERS) 51)

- **Rural Internet at a Crossroads⁵²⁾** : Peter Stenberg

○ 광대역 인터넷 기술은 전국에 걸쳐 현재 널리 사용할 수 있음

- 연방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모든 미국 가정의 95 %는 가정 내 광대역 인터넷 연결(초당 4메가바이트의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

- 이러한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없는 가구의 5%는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

- 이러한 가정 중 일부는 느린 속도에서 사용할 수 광대역이 있지만 액세스할 수 있는 농촌 가구의 약 30%는 여전히 광대역 회의 현재의 기술 표준이 없음

○ 2010년 모든 도시가구의 73퍼센트와 모든 농촌가구의 62%가 인터넷 연결

- 대부분은 케이블 TV 가입, 또는 고급 광섬유 전화회선방식, DSL과 같은 광대역 기술을 사용

- 2010년 인터넷 가용 가구의 경우 도시 96%, 농촌의 92%가 광대역기술 사용

○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초고속 인터넷 가용성의 보편성은 주로 광대역 인터넷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의 인식 개인과 사회 전체 이익을 기반으로 연방 통신 정책 목표

- 광대역 인터넷 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점은, 일부 가구에서 가정 광대역 인터넷 연결을 하지 않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달라짐

-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기술의 가용성의 부족

51) <http://www.ers.usda.gov/topics/rural-economy-population/rural-development-policy.aspx>

52) <http://www.ers.usda.gov/amber-waves/2013-july/rural-internet-at-a-crossroads.aspx>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농촌 지역의 경우, 이러한 부족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높은 비용(도시의 같은 인터넷 시장과 비교할 때)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수요의 결과 때문
 - 예외가 있지만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기 때문
 - 농촌 가구는 도시 가구가 가입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광대역 서비스의 부족이 2배나 높음
- 광대역에 의해 제공되는 지역에서 인터넷 가입 가구들은 광대역 기술을 통한 가입을 선택하여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광대역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구는 브로드밴드가 너무 비싸거나 하여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함
- 케이블 증가 투자는 농촌 거주자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광대역 인터넷 기술의 보편적인 사용을 보장하지는 않음

일본의 정보화와 농업정보화

I. 정보화 정책의 배경

컴퓨터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이 널리 시민행동이나 기업활동에 침투한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오늘날 정보시스템은 우리들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활의 다양한 방면에서 정보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에 의해 우리들 생활은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오늘날 이렇게 풍부한 사회를 역사적인 변천 속에서 본다면, 농업의 시대에서 공업의 시대로 변화하여 정보지식의 시대라는 큰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풍요로운 사회를 만든 계기라고 볼 수 있다. 농업의 시대에서는 토지를 근원으로 작물을 생산하는 것을 사회의 기본으로 하였으나, 18세기 산업혁명에 따라 공업의 시대가 시작됨과 자본설비를 근원으로 제품을 제조 유통시키는 것이 사회의 기본이 되었다. 그래서 정보 지식의 시대에서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지적재산이나 다양한 지혜나 노하우를 창조하여 공유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회로 실현된 것이다. 즉, 기계화가 노동의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화는 지적생활의 대체를 목적으로 하여 지식집약형의 사회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는 일본에서는 1990년대 컴퓨터와 휴대폰의 보급으로 진전되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정보화와 관련하여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업합의에 따라 쌀의 일정량 수입 및 그 외의 농림수산업의 관세의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일본의 농업수산업과 농촌도 보다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고, 농업도 그에 따른 변화 없이는 국제화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된 것이다.

1994년 8월에 나온 농정심의회보고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하는 농정의 전개

방향'에서는 대규모의 개별경영체의 육성, 농업경영자의 자립과 그에 대한 지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임할 수 있는 경영체질의 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음이 주장된다. 다시 말하면, 국제경쟁 속에서 일본의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 혹은 생산자의 실정에 맞추어 농업조건을 변혁하고 생산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종사자가 기상정보와 시장정보 등을 포함하는 각종의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자신의 농업경영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먼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농정심의회보고에서는 의욕적인 농업자에 대한 기술정보의 제공과 함께 소비자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내외의 농업, 농촌의 현상에 관한 정보, 녹색혁명을 포함하는 고품정보의 제공 등의 활동을 전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농촌 지역이나 지식집약산업으로서의 농업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소비자요구에 따른 생산의 측면에서 정확한 피드백, 유기농·무농약 등 생산현장의 다양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것, 연구의 측면에서 신기술의 생산, 식료·농업·농촌에 관한 폭넓은 정보교류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렇듯 국제화시대를 맞아 일본의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대해 정보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II. 추진체계

1994년 12월에 나온 과학기술회의자문 제21호 '첨단적 기반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첨단적 기반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의 협력과 함께 정보수집을 도와주는 과학기술, 사고판단을 도와주는 과학기술, 행동을 도와주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의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하게 된다.

한편, 농림수산시험연구기관의 연구네트워크인 마핀(MAFFIN)은 1993년 국제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1994년에는 과학기술청이 신설한 '연구정보정비·省电의 네트워크추진제도'에 따라 기관과의 네트워크인 아이엠네트(IMnet)가 정비되었다. 1995년에는 각 시험연구기관을 연계하는 회선의 고속화를 추진

하여 농림수산업계의 시험연구기관 사이의 정보교류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농림수산업기술회의 사무국에서는 새로운 정보이론이나 정보처리기술의 농림수산업에의 응용·실용화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도의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기관에서 하는 정보연구의 방향, 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업에서 고도정보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보화와 농업정보화의 계기 속에서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게 되어 농업정보화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1999년에 성립한 신농업기본법과 2000년에 제정된 고도정보화통신네트워크 사회형성기본법의 제정이며, 이 두 가지 법률을 바탕으로 일본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Ⅲ.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격차는 대상 간에 방송이나 통신의 정보량에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며, 정보기술(IT)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않는 자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 혹은 다루는 정보량이 적은 자를 정보약자라고 부른다.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는 개념과도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정보격차의 문제는 도시와 농촌,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도 파악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정보통신단말기의 사용을 통한 정보통신의 사용비율에서 기존 남성이 접근성이 높았던 것이 현재는 거의 동등한 비율로 그 불평등은 완화되고 있다. 그 외에 정보격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역문제로서 특히, 도시와 비교하여 농촌 등 지방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정보통신단말기 가운데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인터넷의 사용빈도의 문제에서 정보수집능력이 낮은 사람을 정보약자라는 말을 생략하여 「情弱」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도시이외의 지역에서 그 비율이 높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정보격차의 또 다른 형태로서 방송·통신의 격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보수집능력의 격차로 확대되었다. 최근에 행정기관의 온라인시스템, 학교교육이나 취업활동, 정보를 중심으로 한 각종사업에서 브로드밴드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어, 농촌이나 외딴 섬 등의 도시를 벗어난 곳에서 행정의 온라인시스템이나 학교의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지장이 발생하고,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취업 기회에 영향이 있는 등, 디지털 디바이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상디지털방송, 브로드밴드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특히 농촌, 외딴 섬) 및 지상파 민영방송으로 수신 가능한 채널수가 적은 지역에서 젊은 층이 이탈하는 인구유출 등이 발생하여 過疎化가 촉진되는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중반이후에 인터넷 등의 컴퓨터네트워크(정보기술)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부터 정부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2001년에 e-Japan 전략 등 일본 국내에서 정보기술의 보급을 정부주도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일본 정부는 지역과소화에 따른 농촌과 외딴섬의 문제 대책으로서 u-Japan정책에서 「차세대 브로드밴드전략 2010」을 발표하여 2008년도까지 「브로드밴드 제로 市町村」 일환으로 그 지역에서 ADSL·FTTH·CATV 등의 브로드밴드회선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0년까지는 「브로드밴드 제로 지역」의 정책으로 어떠한 종류의 브로드밴드회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을 해소하도록 하여, 초고속브로드밴드(FTTH 등)를 90%이상 되도록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IV. 농업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응용

1. 농업기본법과 고도정보화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기반확보

(1) 법제정의 내용

1999년에 성립한 신농업기본법에서는 농업종사자 중심이었던 구 기본법을 수정하여 소비자의 시점에서 파악하고 식료의 안정공급, 농업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 농촌의 진흥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⁵³⁾.

2000년에 제정된 고도정보화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IT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 두 가지의 법체계는 농업의 정보화에 있어 핵심적인 두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제도와 시책이 수립되게 된다.

(2) 농업기본계획의 수립⁵⁴⁾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는 이전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분야마다 다양한 시책을 수정·확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식료 분야에서는 식생활지침의 책정 등이,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생산법인의 주식회사형태의 도입·가격안정제도의 수정과 품목별경영안정대책의 도입 등이, 농촌분야에서는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의 창설 등이 강구되었다. 또한 食과 農의 재생계획(농림수산성 2002년)에 따라 식품의 안정의 확보 등 소비자에게 관심을 옮긴 농업정책의 전개, 쌀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 도시와 농촌의 공생·교류의 추진, 바이오·일본종합전략에 근거한 계획의 추진 등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농촌기본법이 제시하는 4개의 이념은 식료의 안정공급의 확보, 다면적 기능의 발휘, 농업의 지속적 발전, 농촌의 진흥이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상 주요한 시책은

- 식생활지침의 책정, 예측할 수 없는 때의 식료안정보장매뉴얼의 책정

53) 食料・農業・農村基本法関連情報

<http://www.maff.go.jp/soshiki/kambou/kikaku/NewBLaw/newblaw2.htm>,

「21世紀における農林水産分野のIT戦略の公表について

<http://www.maff.go.jp/soshiki/kambou/joho/it-sen/it-sen.htm>

54) http://www.library.maff.go.jp/GAZO/60002064/60002064_03.pdf 平成 16년(2004) 보고서에서 참조(국회보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농지법의 개정과 농업생산법인에 주식회사형태를 도입, 가격안정제도의 수정 및 품목별경영안정대책의 도입
- 중산가지역등 직접지불제도의 창설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식료, 농업 및 농촌을 둘러싼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농업기본계획을 2005년 3월 수립하게 된다.

그 변화의 내용으로는

- 식품의 안전 및 건전한 식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BSE, 부정표시)
- 다양화, 고도화하는 요구(식품산업의 수입농산물의존의 증대)
- 농업의 구조개혁의 지연(농업자의 감소, 고령화, 규모 확대의 지연)
- 다면적 기능이나 농촌에 대한 기대(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대한 요청)
- 글로벌화의 진전(WTO, EPA교섭, 아시아국의 경제발전)

새로운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먼저 기본적 시점은 향후 10년 정도를 내다보는 계획을 책정하고, 계획기간 중에 해나가야 하는 개혁의 방향과 그 실현을 위한 과정을 명확하게 표시하고자 한다. 그 개혁의 시점은

- 효과적 효율적으로 알기 쉬운 정책체계의 구축
- 소비자의 시점에서의 시책을 반영
- 농업인이나 지역의 주체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촉진
- 환경보전을 중시한 시책의 전개
-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파악한 공격적인 농정의 전개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표에 의한 시책의 계획적 추진을 도모하였다

- 식료자급율의 목표
- 자립적인 농업경영의 육성
- 기업 등의 농업 진입의 촉진
- 여성 참가의 촉진
- 환경 자원을 중시한 시책체계의 구축

- 식품의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의 확보
- 바람직한 식생활의 실현
- 농산물 식품의 수출
-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창의 의욕의 환기

2. 농림수산분야에서의 IT 전략 확립

위의 2개의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업분야에서 구체적인 정보책방침의 하나로서 21세기 “농림수산분야와 IT 전략”이 2001년에 책정되어 디지털콘텐츠의 충실, IT인프라의 정비, 정보의 향상 등의 중요정책이 포함되었다. 농업분야에서의 정보화가 국가정책으로서 진행되었다.

또한 0157이나 BSE문제, 유기 무농약 재배를 포함하는 식량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개정JAS법에 의해 生鮮식품의 원산국표시의 의무화나 「牛海綿狀腦症対策特別措置法」에 따른 소의 표식장치나 개별정보관리 등 식품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⁵⁵⁾이 강구되었다.

이 당시 2000년과 2001년 농림수산성의 예산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도정보통신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도시 농촌간의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 해소·정보네트워크의 구축에 따른 효율적 물관리 시스템 정비 등 농업관계시설의 고도정보화의 추진·산지재해의 예고·높은 파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재해정보시스템의 정비 등에 11억円 이상을 예산으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분야에서 IT혁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업 농산어촌IT추진프로젝트(도시와의 정보격차시정을 위해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it법을 활용한 생산 경영의 고도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농림지의 관리, 계능정보를 활용한 품종개량사업), 식품유통 등 고도정보화 프로젝트(시장동향에 대응한 생산 등에 들어가는 전자데이터(EDI)등을 활용한 유통모델의 개발·실증, 바코드를 활용한 식품의 생산·제조이력정보의 개시 등), 전자정부추진프로젝트 (신청서 작성 등의

55) 本庄克彦, 農業情報流通システム—次産業の情報化に向けたNTT R&Dの取り組みNTT技術ジャーナル, 200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온라인의 추진, 정보보완대책의 강화 등)를 위하여 99억円을 지불하여⁵⁶⁾, 정보화 비용으로만 한해 110억円 이상을 지불하였다.

오늘날 일본의 농림수산성에서 정보화를 담당하는 부서는 통계부 관리과의 정보화추진반에서 농림수산분야의 정보화의 기화·조정, 추진을 담당하고 있다.

3. 농림수산성의 정보화추진

(1) e-Japan 전략수립

이 당시 일본 정부와 농림수산성의 정보화추진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00년 11월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형성기본법이 성립되어 모든 국민이 IT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였고, 그 후 2001년 1월 IT전략 본부가 설치되어 본부장인 내각총리대신이 e-Japan전략을 발표하고 2005년에 세계최첨단의 IT강국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이에 중점계획으로 동년 3월에 정부가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시책이 발표되고, 2002년 6월 e-Japan중점계획-2002가 발표되었다.

(2) 주요사업사항

- ① 세계최고수준의 고도정보화통신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초고속인터넷의 지리적 격차의 시정
- ② 교육 및 학습진흥과 함께 인재육성을 위하여 약 1만명을 대상으로 한 농림업 종사자, 보급직원 등에 대한 IT강습
- ③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IT화가 상대적으로 늦은 농림수산업분야 등의 IT화를 위한 충실한 시책을 도모
- ④ 행정의 정보화 및 공공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추진을 위하여 식품안전과 신뢰성에 관한 정보제공의 충실화를 위하여 소고기 이력정보시스템,

56) 平成13年度 農林水産予算の概要についてhttp://www.maff.go.jp/j/budget/pdf/h13_gaisan.pdf.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추진

- ⑤ 디지털화를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시책과 제휴하여 정보통신기반의 정비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충실 등을 추진하였다.

(3) 중요정책

- ① IT 인프라의 정비: 관련기관과 제휴하여 다양한 수법에 의한 고속인터넷망 등의 정비를 추진
- ② 디지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의 정비: 기업적 경영지원(농업정보의 신속한 정보, 정밀농업, 지역산물 지역소비시스템의 구축), 전자상거래의 추진과 소비자에의 정보제공(유통시스템의 정비나 새로운 시스템도입), 농산어촌지역의 편리성의 향상(도시와의 네트워크화, 방재시스템의 정비), 자원관리의 고도화(농지, 산림의 GIS정비)
- ③ 인재육성: 정보활용도의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거주자의 연수, IT지도인재의 확보 육성을 추진하였다⁵⁷⁾.

(4) 실제운용

1) IT를 활용한 농업정보사례 수집 및 공개

일본의 농림수산업성 통계부 농촌정보진흥반 홈페이지에는 농어촌에서의 IT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IT 활용에 따른 농림수산업의 효율화, 생산성의 향상, 농어촌의 활성화 등을 실현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정보 활용 사례가 있으며, 예를 들어 2012년의 경우 JGAP에 대응한 농업 작업관리를 위한 대장기록시스템의 구축, 위성리모토센싱을 사용한 보리수확지원 시스템구축(北海道), 트랙터의 GPS제어시스템의 도입, 딸기

57) 政府及び農林水産省における情報化への取り組み
http://www.maff.go.jp/j/study/other/e_mura/01/pdf/data04.pdf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하우스생산에서 재배환경의 자동제어시스템구축, 청과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이력관리시스템구축(宮城),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정보등록시스템구축(埼玉), 센서네트에 의한 보이는 농장화의 구축과 이를 응용한 원격조정의 효과검증시스템(神奈川), 옥수수재판에서 온도습도관리시스템구축, 야생동물대책으로 원격감시를 위한 시스템구축(長野), 쌀 재배의 인재육성 시스템의 구축(滋賀), 낙농업의 원격감시시스템구축(岡山), 계란구매에서 고객의 구매이력시스템구축(熊本), 야채재배에서 재배환경의 자동제어시스템구축(熊本) 등 매년 IT를 활용한 농업정보사례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 농림수산통계시스템을 통한 정보 통일작업

기존의 농림수산관련 통계시스템은 각각의 기관에서 분산하여 처리되어 왔다. 즉, 농림수산성 공동이용 전자계산기 시스템, 농림수산 통계정보 처리 시스템, 농림수산 통계정보 종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3개의 시스템이 2006년 12월까지 운영되다가 2007년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일체적인 시스템으로 농림수산통계시스템이 구축되게 된다.

이 농림수산통계시스템에는 범용패키지(ETL트루, Excel등) VB, 오픈 COBOL이 있었으나 2012년 1월부터는 기술기반의 일체화를 위해 범용패키지로만 된 농림수산통계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통계 공동이용 시스템인 통계표관리시스템, 온라인조사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작동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자원의 효율적 활용, 업무처리프로그램의 표준화, 공통화, OCR기기 최적배치, 운용 보수의 거버넌스 강화 등의 목적과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⁵⁸⁾

4. 지역정보화 지역활성화

(1) ICT 지역 활성화의 종합적인 지원체제의 정비

총무성에서는 2007년부터 지역정보화 어드바이저 제도의 파견을 실시하고 있

58) http://www.maff.go.jp/j/kanbo/joho/densi_seihu/d_densan_system/pdf/h22_gaiyou.pdf

다. 이것은 정보통신에 의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접근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정보화 어드바이저를 파견하여 성공모델을 구축하는 지원체제의 정비를 함과 동시에 노하우를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정보통신개조개혁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정보통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성공사례를 집적하여 널리 공유할 목적으로 ICT 지역 활성화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

(2) 지역에서 ICT 이용 및 활용의 추진

정부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의료부족,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의 치안저하, 재해대책,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재생 등)의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을 이용한 체계를 실시·추진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 문제해결을 이룩하고 지역에서 정보통신을 촉진할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지역 ICT이용 및 활용 광역연계사업

전국 각 지역에서 공공적인 분야에 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ICT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복수의 도시 또는 광역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면 및 인재육성 활용면에서 과제 등을 추출하여 표준사양을 책정하고 얻은 성과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 ICT 이용 및 활용광역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지역고용창조 ICT프로젝트

지역에 근거한 고용창조를 추진할 목적으로 2010년에 공공서비스 분야(교육, 복지 등) 및 지역산업분야(관광, 지역특산물 등)에서 ICT 이용 및 활용의 체계를 지원함에 따라 지역고용의 창출, 지역인재의 유효한 활용을 도모하는 지역고용창조 ICT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3) 지역정보 플랫폼의 활용추진

지역정보 플랫폼은 지방공공단체 등의 다양한 정보시스템들이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적 실시를 위해 각종 정보시스템이 담당하는 업무면 기술의 규칙(표준사양)이다. 지역정보 플랫폼을 활용함에 따라 윈스톱으로 주민서비스가 향상되고, 사무의 효율화 등이 실현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전국지역정보화추진협회와 협력하여 지역정보 플랫폼 표준사양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지방공공단체간의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의해 주민의 편리성이 향상됨과 동시에 한층 더 행정의 효율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V. 농업정보화를 위한 주요시책

1. 90년대 농업정보화

(1) 정보기반정비의 전망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업분야의 현장에서는 정보기반의 정비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늦지만 급속하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촌 등에서의 정보기반정비에 대해서는 도시나 일반기업에 비하여 지체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분야 독자의 것이 필요하며, 지역성이나 생산형태의 차이 등에 따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하드보다도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압도적인 큰 비용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많은 분야는 상품화에 의한 저비용이나 소프트웨어품질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관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수가 적기 때문에 비즈니스로서 성립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시판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비교적 많고 개발의 용이한 재무 회계소프트

등이다.

(2) 농업·농촌의 정보화

일본 사회전반에 걸쳐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정보화에 의한 농업경영의 발전이나 지역을 활성화를 위한 농가단계, 농업단체, 지방공공단체, 국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농가단계에서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영농목적으로 컴퓨터의 도입이 진행되어, 91년의 보급대수는 9000대로 1988년에 비해 3배가 증가하였고, 지역 단계에서는 유선방송도입, 영농지원이나 지역 활성화를 하고 있는 마을과 농협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서 농업개량보급원의 정보 제공이나 교환을 하는 「普及情報네트워크시스템(普及VAN)」, 국가의 통계정보, 행정정보를 컴퓨터통신에 의해 제공하는 「農業農村情報시스템(RAIS)」 등이 추가되었다⁵⁹⁾.

(3) 행정정보시스템구축

1999년까지 행정의 정보화를 진행하는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성의 발행물인 백서의 CD-ROM化, LAN의 연장, 통계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동이용화, 품종등록 등의 각종 인·허가절차의 전자화, 인터넷에 의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이었다.

(4) 기상정보의 이용사업

기상정보를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지역농업기상정보센터의 설치계획

59) <http://www.maff.go.jp/hakusyo/nou/h05/html/SB1.3.3.htm> 平成5年度 農業の動向に関する年次報告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5)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을 위한 개발사업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으로서 1995년부터 총액 50억円 정도의 예산으로 水田 및 물 관리나 방목되는 소 관리의 고도화에 필요한 하드, 소프트웨어개발 추진.

(6) 식품산업의 정보화 추진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정보화를 경제구조개혁의 중요한 기둥으로 인식하고, 식품산업부문에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된 성과를 가미한 고도의 전자화 정보화된 생산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1) 정보화가 지연되고 있는 生鮮식품유통의 분야에서 거래전자화의 공통기반의 구축을 통한 생산에서 소매단계에서 유통에 관한 정보화추진(거래전자화의 중요한 요소인 표준상품코드, 표준거래선 코드의 개발; 전자화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의 종류, 통신방법, 데이터교환 양식에 대한 표준개발; 거래전자화에 따라 중소식품유통업자등의 업무운영과정의 재구축을 위한 방법의 개발)

2)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역의 식품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수주, 배송, 대금결제 등의 재택거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3) 온라인으로 소비자의 식탁정보를 수집, 중소식품제조업자, 농업자등의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식품의 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개발

4) 중소외식점에서 고객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보증발주 시스템의 실용화 등의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2. 2000년 초기 농촌정보화사업

1999년의 신농업기본법과 2000년의 고도정보화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기본법에 따라 2000년 3월에 농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식생활지침의 책정 등 식료소비에 관한 시책, 바람직한 농업구조의 확립을 위한 시책, 중산간 지역등의 진흥에 관한 시책에 중점을 두어 계획이 발표되었고, 2001년 “농림수산분야와 IT 전략”에 따라 다양한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도정보화 거점시설 정비사업

정보통신기술은 농업경영이나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나 고도화, 도시와의 교류 등 다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고도정보화의 비약적인 진전가운데 농림·농촌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21세기 농림수산 분야의 IT 전략에 따라 기업적 경영지원등의 관점에서 정보내용이나 정보의 이용활용시스템의 충실화, 민간주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농업자들의 정보교류의 향상을 일체적으로 하기 위해 고도정보화 거점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⁶⁰⁾.

(2) 정책평가의 적극적 활용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림수산성 정책평가 기본계획 등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의 추진, 행정의 설명책임의 철저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책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중 국민의 의식이나 관심, 시책에의 의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책의 입안 등에 반영함과 동시에 정책입안의 투명성의 확보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이나 메일, 매거진 등의 각종매체 수단을 활용하여 정책과제나 시책내용 등 국민의 요구에 따른 정보의 수발신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 일환으로서 광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는 통계정보센터에서 직접 국민으로부터의 요망·의견을 대면하여 듣는 방법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보를 제공·수집하는 개최회 등을 실시하였다.

60) 2004년도예산 <http://www.maff.go.jp/j/council/hyoka/keiei/04/pdf/03-01.pdf>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또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 및 다양한 주체의 참가와 연대라는 주제 하에 지역의 자주성과 창의의 발휘 등의 관점에서, 국가와 지방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 하면서 진행함과 동시에 지역의 자주적 조직의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방단독시책에 관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공공투자의 분야에서는 지역주민·NPO·민간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의 참가와 제휴를 촉진하여 민간주체의 자금이나 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수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동시에 국가의 관여가 축소됨에 따라 시정촌이 보다 높은 자유도를 가지며 지역의 창조력을 활용한 개성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였다.⁶¹⁾

(3) IT 전략을 위한 농림수산성의 구체적 사업내용

현재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업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며 그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분야의 정보화시책

농업농촌 행정정보시스템화 조사, 식물방역정보 종합네트워크 구축사업, 보급정보 로컬네트워크 긴급정비사업, 농림수산성 행정정보 시스템구축, 전국농업개발 보급협회사업 중 신보급정보 네트워크시스템 정비운영사업, 어획관리정보처리시스템개발 및 정비사업, 고향과의 정보수발신·교류고도화지원사업, 농어촌지역에서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한 농촌문화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설의 정비사업,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지역만들기를 이루기 위해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을 하기 위한 무선정보시설 등의 정보거점시설의 정비, 산지에서 방재시스템의 정비, 어항·어촌에서 안정정보전달시설 등의 정비사업, 어업무선안전지도 정보전달사업, 어장형성상황 등을 정확하게 예측과악하는 어장환경조사시

61) http://www.library.maff.go.jp/GAZO/60002064/60002064_61.pdf 第2部 平成16年度 食料・農業・農村施策 262, 이보고서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4년의 식료·농업·농촌의 동향 및 강구한 시책과 함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2005년도에 강구하려고 하는 식료 농업농촌시책에 대한 보고서 참조.
(http://www.library.maff.go.jp/GAZO/60002064/60002064_00.pdf 참조).

스택의 정비,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정비 상호이용의 추진,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의 정비사업, 산림 임업정보처리고도화대책, 지리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등 추진사업, 국토공간 데이터기반의 정비사업.

2) 정보처리의 향상, 인재육성, 교육의 정보화사업

농업농촌정보화 인재육성 지원사업, 농어촌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농업교육, 연수 실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처리거점시설의 정비사업, 농업대학 등에서 정보처리에 관한 연수교육, 농업대학간 정보처리에 관한 연수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3) 네트워크 인프라정비사업

전원지역 멀티미디어 정비사업, 영농정보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농촌형 CATV시설 등의 정보처리시설의 정비사업, 어항 어촌에서 고도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어업무선국 재편시설정비사업, 광케이블망의 정비추진사업.

4) 기초적 첨단적인 연구개발

식품상업정보거래 실천 모델사업, 식탁의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발사업(식탁정보시스템).

5) 상호운용성 상호접속성의 확보

生鮮식품 등의 거래전자화의 기반개발, 기상정보·지역농업고도이용대책사업,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대책추진사업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전국추진사업 중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발신정보의 정비, 농촌지역공업 등 도입지원사업, 生鮮유통 정보화의 보급촉진, 국제자원관리 시스템의 사업 중 조업정보수집해석사업, 농업·농촌활성화 농업구조개선사업 중 과수산지재편활성화 추진사업, 농업경영육성 생산 시스템 확립사업 중 광역생산 출하시스템 확립형 사업, 유기야채 등 생산출하정보기반정비사업, 외식산업정보화지원추진사업, 도매시장의 정보권능 등의 고도화를 위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도매시장을 축으로 하는 생선식품 등 유통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서 고도화시스템 구축사업, 지역식품 전자상거래추진사업 도매시장운영의 고도화를 위한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 목재이요상담 및 정보제공기능강화대책사업⁶²⁾.

3. 2005년 농촌정보화사업

2005년은 신농업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여기서는 농업의 구조 개혁에 따른 글로벌화의 진전, 환경보전을 중시한 시책의 추진, 농지의 지역자원의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 등이 발표되었다.

이 시기 일본은 e-Japan 戦略II에 따라 「食」 분야에서 IT의 이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이용시스템의 개발, 보급, 농업경영의 IT화, 농어촌지역에서 정보통신기반의 정비를 등을 일체적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食」 분야의 I T이용활용촉진사업

1) 유비쿼터스食의 안전 안심시스템 확립: 최첨단 정보처리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의 기록 등의 자동화 간편화를 진행하여 리스크 관리의 강화나 소비자가 간단히 입수할 수 있는 안전 안심정보시스템의 구축(이러한 시스템은 농약을 포함하여 생산자재의 적정사용의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유통의 발본적인 합리화, 알리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심정보의 비약적인 고도화의 성과가 있었다).

2)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생산유통이력정보파악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구축, 정보관련 기기나 분석기기의 정비를 추진.

3) 농업경영의 IT화

62) <http://warp.ndl.go.jp/info:ndljp/pid/284573/www.kantei.go.jp/jp/it/990422yosan1.html>

의욕있는 농업자가 인터넷을 활용한 쌍방향의 영농정보의 수발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과 동시에 고도의 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농업경영의 IT화(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 지원).

4) e-마을만들기 계획의 추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정보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e-마을 만들기 계획(농어촌의 정보화를 위한 기본방침)에 따라 고속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케이블 등의 시설을 설치(건강한 마을 만들기 교부금, 강한 수산업 만들기 교부금으로 지원).

(2) 전자정부구축

1) 국민의 편리성·서비스의 향상

행정서비스의 24시간 365일 원스톱화를 이루기 위해 동식물검역검사절차 전산처리시스템 24시간 접수를 추진.

2) 공공분야에서 정보화의 추진

전국단위로 정비되어 있는 농지관련지리정보의 일원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행정과 지역주민이 산지재해의 정보를 상호전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산림만들기 교부금지원)⁶³⁾.

4. 2006년 농업정보화

농림수산분야의 정보화와 전자정부의 추진에 따라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등에 근거하여 식료 농업 농촌관련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이용시스템의 개발 보급 등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자정부구축계획에 따라 행정운영의 간소화,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에서 행정의 정보화를 추진하였다. 2005년도와 비슷하나, 차이가 있는 정

63) <http://www.maff.go.jp/j/budget/2005/pdf/5-22.pdf>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농산어촌의 진흥에 유용한 정보처리기반의 추진

농업자의 농산물 생산이나 판매 전략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산물직매소 등에서 소비자요구, 판매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그 대응책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농산물생산에서 농업기상재해의 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농업자에게 제공

2) 전자정부의 추진 등을 위한 IT 업무개혁

예산효율이 높은 간결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각 업무·시스템의 최적화계획에 근거하여 종합식료국에서 정보관리 및 국유림사업개발업무에 관한 시스템, 농림수산성 공동이용 전자계기시스템의 최적화를 실시한다.

3) 공공분야에서 정보화의 추진

지역에서 농지이용집적 등의 진행하기 위해 농지에 관한 지도정보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보급개발 및 인재육성을 추진한다⁶⁴⁾.

5. 2008년 농촌정보화에 대한 평가

정보통신기반의 정비는 브로드밴드의 서비스지역이 전체 세대율의 90퍼센트를 넘고 진전하여 정보통신기술은 도시에서는 90퍼센트를 넘고, 도시외 지역에서는 80퍼센트를 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은 농촌지역에서 지역자원의 활용에 따른 지역 활성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족이라는 조건 불리성을 극복하고, 산업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한 생산농업의 소득 감소율은 적고 인터넷 판매 도입율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업·농촌 활성화에서 지리적 공간정보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⁶⁵⁾ 지

64) <http://www.maff.go.jp/j/budget/2006/pdf/10.pdf>

65) http://www.jipdec.or.jp/project/jka/2008/kiban/20_06.html

역농업이 고령화, 일손부족에 따른 경작기의 방치나 식료자급율의 저하 및 지역 과소화의 진전에 대한 대응 등의 과제를 안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장, 산지 및 소비기간의 위장, 잔류농약의 문제 등 식품의 안전과 안심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는 대책 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농촌은 새로운 활성화의 방책으로서 소비자를 산지에 불러오고 농산물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도시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운동에 참가하여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기획과 함께 실천해 나갈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

한편, 식품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의 틀어 넘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이나 농촌자원을 이용한 비즈니스의 형태로, 지역특산물의 개발이나 관광객의 유치, 전통예능이나 역사풍도 등 지역자원을 동원한 농촌종합산업화, 비즈니스화가 촉진되고 있다.

6. 2009년 정보화의 새로운 대응

세계의 경제위기와 함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기술이 필요하게 되어 정부의 IT전략본부는 2009년 7월 “I-Japan 전략 2015”를 발표하게 된다.

이 전략에 따르면, 떨어진 지역 간이라도 기업 소비자간을 직접 연결하여 지방의 산업, 농림수산업, 전통문화, 관광자원 등의 저력을 발휘하여 지역 생산제품이나 농산품등의 부가가치의 향상, 교류인구의 증가를 도모하여 국제경쟁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농림수산물이나 전통공예품, 관광 등의 정보를 국내외의 미디어나 네트상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소비자와 관광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 활성화에 관해서 전국적인 전개를 도모하고 그 일환으로서 개별지역의 실정에 맞는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나 실시간 이용자의 능력 향상 등의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지역정보화에 관한 어드바이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원격의료, 아동고령자의 보호 등 다양한 방재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⁶⁶⁾.

7. 2012년도의 정보화추진조사

농업·농촌 정비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사업실시에 관한 각종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정비·보수·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농업·농촌정비사업의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정보의 전자화, 공유화(CALS·EC)를 진행하여 전자정부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CALS·EC란 사업의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사업계획단계, 조사측량, 설계정산, 입찰계약, 공사시공 등의 사업실시단계, 사업완료후의 유지관리단계)에서 각 정보를 전자화하고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공유·교환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화·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⁶⁷⁾.

8. 2013년 농촌정보화에 대한 사업

일본은 최첨단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IT종합전략본부에서는 IT정보자원의 이용을 통한 미래를 창조하는 국가비전으로서 세계최첨단 IT국가창조선언(2013년 6월 14일 각의에서 결정)을 책정하였다.

이 창조선언에서는 앞으로 2020년까지 세계최고수준의 IT이용 및 활용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혁신적인 신산업·신서비스의 창출과 모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회의 실현, 국민이 건강하게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계 제일의 안전하고 재해에 강한 사회의 실현, 공공서비스가 원스톱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라는 3가지 항목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농업분야에서는 IT를 활용한 일본의 농업 주변산업의 고도화·지식산업화

66) <http://www.kantei.go.jp/jp/singi/it2/kettei/090706honbun.pdf>

67) <http://www.maff.go.jp/j/aid/hozyo/2012/nouson/pdf/122.pdf>, 일본농림수산성 2012년도 예산안; http://www.maff.go.jp/j/aid/hozyo/2013/nouson/pdf/nouson_117.pdf, 일본농림수산성 2013년도 예산안.

와 국제전개(made by japan농업의 실현)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2015년까지 기업의 농업 진입이나 농업경영의 법인화의 추진을 위해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농업경영의 신규진입, 후계자의 원활한 확보나 대규모화를 추진한다.
- ② 2016년까지 농업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생산방식AI(Agri-Informatics)농업을 구축하는 것이다.
- ③ 2017년 이후 AI농업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기술의 해외전개를 실시한다.
- ④ 2018년까지는 농업관련 주변산업에서 AI농업 등의 실시로 얻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상품과 세트로 판매하는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전개하고 업계의 주요수입원의 하나로 성장시킨다.
- ⑤ 2020년에는 농림수산물 등 수출액이 1조円을 돌파할 예정이다⁶⁸⁾.

VI. 농업 및 지역 정보화를 위한 지원

1. 농촌지역 IT화 추진지원사업의 실시

농촌지역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기반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으로 정보통신기반의 정비가 늦은 농촌지역에서 농산어촌활성화 프로젝트 지원교부금 등에 따라 정보통신기반의 정비를 예정하고 있는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⁶⁹⁾.

68) <http://www.kantei.go.jp/jp/singi/it2/kettei/pdf/20130614/siryou4.pdf>

69) http://www.maff.go.jp/j/budget/review_taisyuu_jigyuu/pdf/0251.pdf

2. 지역정보통신기반정비추진교부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기반의 정비를 지원하고 지역간의 정보격차를 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향상 및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서비스종류에 따른 사업의 구분을 폐지하고 케이블 티비, ADSL 등 지역간의 정보격차를 시정함에 필요한 시설을 폭넓게 지원의 대상으로 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ICT 기반정비를 추진한다. 교부대상은 조건불리지역⁷⁰⁾에 해당하는 市町村(교부율1/3), 조건불리지역을 포함하는 합병 市町村(1/3)⁷¹⁾등을 대상으로 한다.

3. 지역인트라넷 기반시설정비사업

지역의 교육, 행정, 복지, 의료, 방재 등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공민관, 시청 등을 초고속으로 접속하는 지역공공네트워크의 정비를 위한 지방공공단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대상이 되는 경비는 시설과 설비비, 용지취득비, 도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⁷²⁾.

4. 무선시스템 보급지원사업(휴대전화 등 영역정비 지원사업)

휴대전화 등은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서비스로 되어 있으므로 지리적인 조건이나 사업채산상의 문제로 이용이 곤란한 지역이 있어 이들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가능하게 하고 보급을 촉진하여 전파의 이용에 관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파의 적정한 이용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은 지리적으로 조건이

70) 조건불리지역이란 과소지역, 벽지산간, 외딴 섬, 반도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말한다. 각 지역에 대한 지원에 각각 山村振興法過疎地域自立促進, 特別措置法, 離島振興法, 半島振興法, 特定農山村地域에서 農林業等の活性化를 위한 基盤整備促進에 관한 법률, 豪雪地帯対策特別措置法 등에서 개별적으로 두고 있다.

71) <http://www.town.takko.aomori.jp/000000so3ya000470.pdf>

72) <http://www.town.takko.aomori.jp/000000so3ya000470.pdf>

불리한 지역(과소지역, 산간벽지, 섬)에서 市町村이 휴대전화의 기지국시설을 정비하는 경우나 공익법인이 기지국의 개설에 필요한 전송로 시설설비를 정비할 경우에 당해기지국 시설이나 전송로의 정비비용에 대해서 교부금을 지원한다.⁷³⁾

5. 농산어촌활성화 프로젝트 지원교부금

정주나 두 지역간 거주, 도시와의 지역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종합적이고 기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교부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한 사업내용으로 농산어촌활성화에 필요한 기초형성을 위한 지원(생산기반이나 생산기계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 정주환경의 정비(지역의 실정에 맞는 선진적인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비 확충 등), 지역간 교류의 촉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⁷⁴⁾.

VII. 농업정보화를 위한 주요법제

1. 정보화를 위한 법제도

일본은 세계최첨단의 IT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IT기본법(2000년 7월)의 제정을 시작으로 ‘행정의 정보화 및 공공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의 추진’, ‘전자상거래 등의 촉진’, ‘세계최고수준의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형성,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의 확보’, ‘교육 및 학습의 진흥과 함께 인재의 육성’의 각 분야에서 네트워크 사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1) 기본적 방침으로서 IT기본법

일본의 정보화의 기본적 방침은 (IT기본법) 즉,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

73) <http://www.town.takko.aomori.jp/000000so3ya000470.pdf>

74) <http://www.town.takko.aomori.jp/000000so3ya000470.pdf>.
http://www.maff.go.jp/j/kasseika/k_project/pdf/nyo.pdf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성기본법에 의해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1990년 11월 29일).

1)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라 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급격하고 대폭적인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의 형성에 관한 시책을 신속하고 중점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내각에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추진전략본부가 설치되어 e-Japan전략 등이 책정되었다.

2) 정의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란, 인터넷 그 외의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유롭고 안전하게 다양한 정보 또는 지식을 세계적 규모로 입수하여 공유하고 또는 발신하는 것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이고 활력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3) 기본이념

(가)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형성의 의의

모든 국민이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를 쉽고 주체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가지며, 그 이용 기회를 통하여 개개의 능력을 창조적이고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향수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

(나) 기본적 시각

경제구조개혁의 추진(전자상거래의 촉진, 신규사업의 창출), 여유와 풍부함을 실감할 수 있는 국민생활의 실현(저렴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 개성이 풍부하고 활력으로 충만한 지역사회의 실현(지역에서 취업기회의 창출, 다양한 교류기회의 증대), 민간주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등이 공정한 경쟁의 촉진등 환경정비를 하는 적절한 민관의 역할분담,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의 기회 및 활용능력의 격차의 시정, 고용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

4) 시책의 기본방침

-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의 확충, 콘텐츠의 충실, 정보활용능력의 습득의 일체적 추진
- 세계최고수준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의 형성,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그 외의 조치
- 국민의 정보활용능력의 향상 및 전문적 인재의 육성
- 규제개혁,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이용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촉진
- 전자정부, 전자지자체의 추진(행정의 간소화, 효율화, 투명성의 향상)
- 공공분야의 정보화
-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의 확보, 개인정보의 보호
- 창의성 있는 연구개발의 추진
- 국제적인 협조 및 공헌(국제규격의 정비)

5) 중점계획

기본이념 및 시책의 기본방침에 따라 정부에 의해서 신속하게 강구되어야 하는 시책을 정한 중점계획을 책정하여 인터넷 등에 공표(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추진전략본부의 소관사항)한다. 원칙으로서 각 시책의 구체적 목표 및 달성기한을 첨부하고 목표의 달성상황을 적시에 조사하여 공표한다.

6)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추진전략본부

내각에 설치하며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한다. 민간의 총력을 다해 결집(모든 각료, 내각정보통신정책 및 민간유식자에 의한 구성)한다. 본부장은 본부의 사무의 일부(각 기관의 횡단적인 계획의 작성, 경비의 견적방침, 시책의 실시에 관한 지침작성, 시책의 평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내각정보통신 정책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본부장은 내각정보통신 정책감으로부터 의견·보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공공단체로부터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7) 책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상호연계

(2) 행정의 정보화 및 공공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의 추진

- ① (전자장부보존법)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국세관계 장부서류의 보존 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② (정보공개법)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③ 주민기본대장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④ 행정절차온라인화법 관련 3법
 - 행정절차에서 정보통신의 기술이용에 관한 법률(행정절차온라인법)
 - 행정절차 등에 있어 정보통신의 기술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동반하여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정비법)
 - 전자서명에 관한 지방공공단체의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공적 개인인증법)

(3) 전자상거래 등의 촉진

- ① (전자서명법) 전자서명 및 인증작업에 관한 법률
- ② (IT서면일괄법)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③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④ 인터넷의 도메인을 악용하는 행위에 관해서 국제적인 규정을 참작하여 조치를 강구하는 관련법
- ⑤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⑥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⑦ e-문서법: 민간사업자등이 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용

에 관한 법률, 민간사업자가 행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동반하는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기록채권법(사업자의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자기 디스크 등을 가지고 전자채권기록기관이 작성하는 기록원부의 전자기록을 채권의 발생, 양도 등의 효력요건으로 하는 전자기록채권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

(4) 세계최고수준의 고도정보유통 네트워크의 형성

- ①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②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진전하는 것에 대한 대응
- ③ 정보통신법

(5)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

- ① 부정액세스금지법(부정액세스행위의 금지등에 관한 법률)
- ② 특정메일송신적정화법(스팸메일차단에 관한 내용)
- ③ 지적재산기본법
- ④ 개인정보보호법
- ⑤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
- ⑥ 금융상품거래법

(6) 교육 및 학습 진흥과 동시에 인재의 육성

2. 농업정보화를 위한 법제

(1) 食料・農業・農村基本法(1999년 7월 16일 법률 제 106호)

이 법률은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기본이념 및 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을 명확히 함에 따라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나은 국민생활의 안정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법 제1조).

이 법의 주요내용은

1) 국가의 책무규정: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는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이념에 따라,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호).

2) 국민의 이해고취: 국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서 기본이념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제7조 제2호).

3) 지식 및 정보제공: 식료소비에 관한 시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국가는 소비의 개선 및 농업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위해서 건전한 식생활에 관한 지침의 책정, 식료의 소비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제16조).

4) 추진기구로서의 농촌정책심의회: 인재의 육성 및 확보, 기술연구개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이를 위한 내용을 처리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식료 농업 농촌정책심의회를 두고 있다(제16조).

(2)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업·어업자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0년 10월 3일 법률 제67호)

1) 제정배경과 목적

“농산어촌은 오랫동안 걸쳐 일본의 풍부한 풍토와 근면한 국민성을 육성하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여 왔다. 또한 농림 어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은 농림수산업 등의 안정적인 공급의 기능 및 국토의 보전 등의

다방면에 걸쳐 기능이 발전해 오게 됨에 따라 농산어촌의 활력의 유지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향상에 공헌하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의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은 내외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가격의 저하 등에 따른 소득의 감소, 고령화나 과소화의 진전 등에 따른 농산어촌의 활력은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우리들은 일차산업으로서의 농림어업과 2차 산업으로서의 제조업, 3차 산업으로서의 소매업 등의 사업과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추진을 도모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6차 산업화와 지역의 농림수산업의 이용을 촉진함에 따른 국산의 농림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는 지역산물의 지역소비정책과 함께 융합하여, 농림어업자의 소득 확보를 통한 농림어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농산어촌의 활력의 재생, 소비자의 이익의 증진, 식료자급 등의 향상 등에 중요한 역할을 부담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동시에 이들 조직은 농산어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토지, 물, 그 외의 자원의 유효한 이용, 지역에서 식품순화자원의 재생이용, 농림수산업의 생산지와 소비지와와의 거리의 감축 등을 통하여 환경에 負荷를 감소시키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여기서 이러한 시점에 따라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농산어촌에서 6차 산업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산의 농림수산업의 소비를 확대하는 지역산물 지역소비 등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법률전문에서).

이 법률은 농림어업자등에 의한 사업의 다각화 및 고도화, 새로운 사업의 창출 등에 관한 시책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의 촉진에 관해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농림어업 등의 진흥,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조건에 맞게 지역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농림어업자 등의 필요에 따라서는 농림어업자등 이외의 자의 협력을 얻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국가가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촉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제2조).

3) 사업계획과 추진: 이를 위해서 종합화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성과이용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농업개량자금융통법의 특례를 두어 지원한다.

4) 국가의 노력: 국가는 농림어업자 및 관련사업의 종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제공, 인재육성, 연구개발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과 그 외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법상에서 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①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의 촉진에 대해서 소비자가 스스로 소비하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와의 교류나 그 농림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있는 한편, 생산자가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정보 및 스스로 생산한 농림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나 이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6조)

② 도시와 농촌어촌의 공생·교류의 일체적 추진: 도시와 농어촌에 생활하는 사람이 상호 각각 지역의 매력을 존중하여 활발한 인적 물적 정보의 왕래가 이루어지도록 도시와 농어촌의 공생을 일체적으로 추진한다.

③ 직매소등을 이용한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 직매소 등을 이용한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농림수산물 등의 판매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매장의 운영 및 기능의 고도화, 직매장간의 제휴의 확보 및 강화, 판매하는 지역의 특성 등에 따른 농림수산물의 가공품의 개발의 촉진, 직매장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43조).

④ 학교급식 등에서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의 촉진: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학교급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농림수산물 및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하거나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제44조)한다.

(3)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형성 기본법(2000년 11월)
전반부분 참조

(4) 미곡 등의 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기록 및 산지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2009년 4월 24일)

이 법률은 미곡사업자에 대해서 미곡 등의 양수, 양도 등에 관한 정보의 기록 및 산지정보의 전달을 의무화하여, 미곡에 관해서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을 결하고 있는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표시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적정하고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위한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미곡 등의 산지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의 보호,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과 함께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5) 미곡의 신용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09년 4월 24일)

이 법은 일본의 水田이 농업생산 및 식료의 공급을 위해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水田의 주요한 생산물인 미곡의 신용도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미곡의 새로운 수요의 개척 및 그 유효한 이용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6)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기본법(2007년)

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현재 및 장래의 국민이 안심하고 풍부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하여 지리공간정보를 고도로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지리공간정보의 활용의 추진시책에 관한 기본이념, 책무, 추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사항을 정하고 위해 제정되었다.

제2조에 따르면, 지리공간정보란 공간상의 특정한 지점 또는 구역의 위치를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타내는 정보로서 당해정보에 관한 시점에서 관련하는 정보를 포함하며,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농지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1) 농촌지리공간정보활용시스템의 필요성

규모확대나 농업의 효율화가 요구되며, 정밀농업, 농업기계의 자동화, 효율적인 작업계획 등을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상세한 지도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데이터는 지역의 자원량을 명확하게 하는 기초데이터와 함께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농상공연계활동을 지원한다.

2) 농업·농촌활성화에서 지리공간 활용정보시스템의 개발방향

지리공간정보의 이용은 이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3가지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가) 농업자를 위한 시스템

농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지리공간정보에 기대하는 것은 정밀농업 등 생산효율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농장의 상세한 지도, 데이터, 주변정보의 정비와 작업계획과 결과의 평가가 요구된다.

(나) 농·상·공연대를 위한 시스템

농·상·공연대는 지역의 농업, 상업, 중소기업이 활성화하는 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역자원의 유효활용과 부가가치의 부여에 따라 지역브랜드창조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생산데이터, 수요데이터, 미이용자원 데이터의 수집과 시뮬레이션이 요구되며, 지리공간정보로서 연대를 지원한다.

(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간단하게 지리공간정보를 수집 작성 편집할 수 있고, 정보내용의 식별에 따라 데이터화, 휴대전화에 의한 현지의 상황파악을 할 수 있는 리포트 등이 요구된다.

3) 지리공간활용정보시스템의 활용효과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에 따라 농업자에 대해서는 농장정보의 記帳과 정밀농업, 농업작업계획책정과 효율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Web서비스의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지역산업진흥에 대해서는 지역생산물 지역소비의 추진, 지역브랜드화, 농상공업 연계, 미이용 자원의 활용을 지원한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식향상, 유비쿼터스 사회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7) 농산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생산정보공표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2005년 농림수산성 고시 제1163호, 약칭 일본농림규격), 생산정보공표농산물의 생산과정에 대한 검사방법(2005년 농림수산성 고시 제1210호): 여기서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정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농산물의 식별번호마다 생산과정의 관리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화학합성농약삭감비율 및 평균사용 횟수 등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8) 도매시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1) 취지

최근에 도매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에 맞게 생산 소비 양측면의 기대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의 전환을 도모하여 도매시장에서 거래규제의 완화 및 적정할 품질관리의 추진, 도매시장의 재편을 위한 원활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2) 법개정의 개요

(가) 도매시장에서 품질관리의 고도화(상물일치규제의 완화: 전자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거래방법에 따라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도매할 때는 시장 내에 현물을 반입하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도매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관한 규제의 완화(도매시장의 재편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유통의 광역화 및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중앙도매 정비계획에 따라 지역의 지역성과 요망을 충분히 배려한 시장마다의 자주성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의 광역화 또는 도매시장의 재편을 위한 절차규정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도매업자가 하는 거래정보의 공표에 따라 투명성 높은 시장거래를 확보함에 따라 판매량, 정량수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VIII. 일본의 농업정보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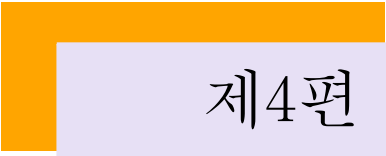
앞서 본바와 같이 일본의 농업정보화는 우루과이 라운드 등 세계적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정보화의 추진이라는 측면과 격차사회의 심각화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결하고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의 농업정보화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첫째,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부단한 정부의 노력이다. 일본은 새로운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맞게 발전하고자 1999년에 새로운 농업기본법과 함께 2000년 고도정보화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기본법을 주축으로 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정보화를 위한 발전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농업의 정보화는 정보격차의 해소의 방안으로 이루어진 점이다.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농업정보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취업이나 정주환경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보다 살기 좋은 농촌, 경쟁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는 것은

일본 사회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격차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화노력을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시대의 흐름에 맞게 농촌만을 위한 미시적 정보화가 아니라 국가전체의 정보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다는 점이다. 1999년 농업기본법의 새로운 제정과 함께 2005년 e-Japan 戦略 그리고 2013년에는 세계최첨단 IT국가창조선언을 통하여 농촌만을 위한 정보화가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하나의 형태로 국가적인 적극적인 농업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농업분야에서 IT를 활용한 농업과 주변산업의 고도화·지식산업화와 made by japan 농업이라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표설정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제4편 법률(안) 및
그 제안이유

제4편 법률(안) 및 그 제안이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농식품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안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화가 필요한가를 간명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며, 이 법률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특별)‘촉진법’의 법률형태임을 분명히 함.⁷⁵⁾
- (특별)촉진법의 형태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이므로 제5조의 제안이유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한 우선적 효력을 가짐.
- 국가차원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범지역적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서의 특유하고도 시급한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이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함.
- 정보화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경쟁력 하락과 국내 농업생산성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

75) 후술하는 제5조의 제안이유 참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는바,⁷⁶⁾ <농업·농촌의 정보격차 해소→농식품업의 경쟁력 제고→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존의 법률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정보화’를 매개로 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다양한 관련 법률과의 체계정합성(Systemgerechtigkeit)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농촌 정보화를 위한 개별 법률이 필요함.
- 체계정합성(=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하나의 헌법적 요청으로 보고 있으며,⁷⁷⁾ 체계정당성 위반이 곧 바로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됨.⁷⁸⁾
- 비교법적으로 유럽연합 및 독일에서 국가차원의 정보화가 경제관련부처를 통하여 추진되는 한편, 농업관련부처(독일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의 주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참고함.
- 동 법안이 제정될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가 삭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동법과 본 법안은 조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가 필요하지 않음.

□ 입법례

76) 고석남, 산업경제연구 19-5, 2006.

77) 헌법재판소 2005.06.30. 2004헌바40.

78) 헌법재판소 2004.11.25. 2002헌바6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2.14.]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업·농촌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정보화
2. 농식품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하는 정보화
3. 농식품업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4. 정보자원의 낭비와 중복을 방지하는 체계적·종합적 정보화

□ 제안이유

-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념을 설정하여 규정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됨으로써 농업·농촌의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우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기술을 통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농식품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
- 농식품업 현장의 애로점을 해결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가 촉진되도록 함. DB사업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현장과의 연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이나 기관, 학계의 데이터로 수집되어 왔다고 평가받고 있음.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음. 또한 농가의 현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정보나 데이터의 활용도가 떨어짐. 농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영농 현장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요구나 영농 현장의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 그러나 영농 현장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농가에서 실제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름. 또한 정보격차가 심한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 환경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농가에서 사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농가 현장업무는 작목위주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작목위주가 아닌 주제위주로 카테고리가 구성되었음(가격정보, 유통정보, 작물정보 등). 따라서 농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각 주제별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정보를 취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한번 접속으로 농가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얻을 수 있는 One stop 서비스가 불가능. One stop 서비스가 되지 않는 불편함과 PC에 능숙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정보들을 찾아 취합하기 어려운 점 등 때문에 사용자(농가) 입장에서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함.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되어 수집·관리되고 있는 농업·농촌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정보화를 추진함.

□ 입법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사회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화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정보화
3. 우수한 국방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정보화
4. 국방전력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 정보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 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농어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어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으로 정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농산물로서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것과 그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을 말한다.
4. “식품산업”이란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또는 이러한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농식품업”이란 농업과 식품산업을 말한다.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농식품업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 또는 농촌에서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보 통신기술 융복합”이란 농식품업과 정보 통신기술을 융복합함으로써 농식품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보격차”란 농업·농촌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0.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이란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3.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가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안이유

- 기존의 정보화관련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법률 간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농업의 의미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취하면서, 정보화의 요청이 요구되는 분야인 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시설산업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통하여 포함시켰음.
- 그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농업의 개념범위에 이보다 넓은 농업 관련 산업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정보화의 필요성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향후 동 법안의 농업개념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임.
- 농촌개념에 대해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개념을 사용하여 법률간의 개념혼동이 없도록 함.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와 같은 정보화 일반에 관한 정의규정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농업·농촌의 정보화에 관한 정의규정을 중심으로 조문화함.

□ 대통령령(안)

○ 법 제3조 제1호 관련 대통령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1. 농업기계산업
2. 농업자재산업
3. 농업시설산업

○ 법 제3조 제11호 관련 대통령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조 제11호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2. 산림청
3. 농림축산검역본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 농식품공무원교육원
6. 한국농수산대학
7. 국립종자원
8.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 한국마사회
11.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12. 축산물품질평가원
13.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1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부령(안)

제2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식품업 생산 정보
2. 농식품업 병해충 및 질병정보
3. 농식품 유통 정보
4. 농식품업 경영정보
5. 농업 기상정보
6. 농자재 정보
7. 농식품업 정책정보
8. 농식품 소비 정보
9. 농식품업 관측 정보
10. 그 밖에 농식품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보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입법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 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증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이란 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포획, 양식(養殖),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수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조(농림수산업 관련 산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 수산업 관련 산업: 수산물 유통업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및 산업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정보통신 관련 연구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제조·제작된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유통·제공하는 등 경영활동으로 연결시키거나 경영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7. "디지털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8. "디지털콘텐츠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복제·전송·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 관련 장치·기계·기구(器具)·부품·선로(線路)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송통신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정보"란 국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국방정보화"란 국방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방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국방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국방정보시스템"이란 국방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국방정보자원"이란 국방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유선·무선 및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기술·인력 및 자금 등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국방정보보호"란 국방정보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정지·제한·예방·확인·점검·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국방정보화사업"이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9의2.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2. "정보통신기반"이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13. "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
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4.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
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
다.

15.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
용되는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16.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
비스를 시험·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7.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
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
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19.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
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

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1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정의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두고 있음.

【정부조직법】

-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장 총칙
-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4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5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제6장 한국농수산대학
- 제7장 국립종자원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부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행정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책무규정은 그 구체적 효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법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사용의 취지에서 ‘시책’ 대신 ‘정책의 마련·시행’의 책무로 함.
-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정보화 사업을 위한 시책 강구 및 정보화 사업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의무가 있음.

□ 입법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안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를 추진하는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다음의 4유형을 검토할 수 있음.⁷⁹⁾

표 4-1.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4유형

제1유형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5조 제2항
제2유형	그 법령을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유형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유형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시 그 법령의 목적이나 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5조 제1항

- 이상과 같은 4개의 유형 가운데 본 법안과 관련하여 검토한 유형은 <제1유형>과 <제2유형>임.

- 이 중 <제1유형>은 그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령

79)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법제교육포털 교육자료 “법령입안심사기준” 참조.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법령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해당 법령이 기본법적 성격이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려는 경우에 두는 방식임.

- 만일 <제1유형>을 취할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와 같은 규정을 가지게 될 것임.

- 이에 비하여, <제2유형>은 그 법령을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 그 법령의 제정 목적상 필요하거나 정책 목적상 또는 법체계상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임.

- 동 법안의 제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 법안은 (특별)촉진법의 형태로서, 일반적인 국가정보화에 관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2유형>의 입법방식을 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한 동 법안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동 법안과의 관계는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계와 유사한 것이 될 것임.

- 법안 제5조는 <그 법령을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①법령의 제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②정책목적상 합리적인 경우, ③법체계상 합리적인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의미임. 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정보화에 관하여는 동법안을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하는 것이 그 법령의 제정목적상 필요하거나 정책목적상 또는 법체계상 합리적인 경우로 보고 있음.

- 동 조항은 현실적 법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규범들간의 체계성을 미처 갖추지도 못한 채 수 많은 관련된 법률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자의 특별한 조치로서, 규범모순(Normenwiderspruch), 즉 모순되는 법효과의 의미들 사이에 분석(해석)의 모순(analytischer Widerspruch)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모순될 수 있는 법규범 중 어느 하나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자가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⁸⁰⁾

□ 입법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80) C. Bumke, Relative Rechtswidrigkeit : Systembildung und Binnendifferenzierungen im Öffentlichen Recht, 2004, Mohr Siebeck, S. 39; 이에 관한 상세는 김현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법연구 39-2(2010) 참조.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림수산물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농촌진흥법」, 「수산물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화 촉진의 추진체계

제6조(정책의 관장 등)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 촉진에 관한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실시법의 성격을 가지게 될 동 법안의 특성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동 규정을 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의 조문으로 함.

□ 입법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추진체계 등)

①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등(이하 "국방정보화추진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군의 전투와 군령 등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책무규정 또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 (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에 전략기획단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주요산업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단장과 투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업경영이나 기업 연구소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기술사·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⑥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촉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보화 촉진의 기반조성
3. 각 분야별 정보화 촉진
4.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고도화
5. 정보의 체계화·표준화
6. 정보의 상호 운용성 확보
7. 정보격차 현황조사 및 그 정보격차의 해소
8. 정보화 촉진에 관한 재원의 조달·운용
9. 그 밖에 농업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안이유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본 법안에 따른 독자적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규정하는 방안(제1안)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설정하는 방안(제2안)으로 검토하였으나, 제1안에 따라 본 법안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대하여 실시법 또는 특별법의 위상을 가지게 되는 동 법안을 제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촉진에 관한 규정」은 정비되어야 함.
- 국방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훈령과 같은 정보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통하여 정보화에 관한 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만함.

□ 입법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3. 국방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4. 국방정보화에 관한 제도 정비
5. 국방정보보호
6. 국방정보화 연구개발
7. 국방정보화 인력의 양성
8. 국방정보화 재원의 확보
9. 국방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명령 등 제도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본부 정보화책임관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 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림축산식품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 등에 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각 분야별 농림축산식품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의 표준화 및 정보 공동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의 정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정보통신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정보화 추진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기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본부 정보화책임관은 관계기관의 정보화사업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④본부 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제8조에 의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⑤본부 정보화책임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EA지원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제12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3.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4.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6.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국가적 표준의 연구·보급 및 기술기준의 관리
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

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 2의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융합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4.02.14]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당년도 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시행계획과는 별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이란 법안 제3조 제11호 및 동 법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기관 및 단체를 말하며, 농림축산식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표 4-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구분	기관 및 단체	비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정부조직법」 제36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그 밖의 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그밖에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을 받는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이지만, 금융업무 등을 함께 하고 있어 동 법안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향후 금융업무와 경제업무의 구분이 될 경우 동 법안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입법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실행계획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4.02.14]

제9조(정보화촉진위원회) ①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보화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정보화 법령의 제·개정
3. 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변경
4. 중요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선정 및 지원
5.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계 종사자로서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생산자단체의 대표 또는 농업인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보화촉진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 위상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무 총괄하는 방안(제1안)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방안(제2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제1안의 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본 법안에서는 제도도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제2안을 채택하여 조문화함.

□ 대통령령(안)

제4조(정보화촉진위원회의 위원장)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화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입법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⑧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13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②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1.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2.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3.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자
 - 5. 그 밖에 국무총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기본계획의 확정
 -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 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치 요구
 -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협안 및 업무의 조정
 - 6.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7.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④ 전략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라 한다) 등을 둔다.

⑤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략위원회,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4.02.14]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⑦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 5.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6.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 8. 제64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 9.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10. 제6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1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의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및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보화촉진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나 정보 통신기술 융복합,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등 중요한 정보화 정책을 검토·자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분야별 정보화촉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보화책임관 또는 해당분야 공무원
2.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이나 중요한 정보화 정책을 검토·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정보화촉진전문위원회를 설치함

□ 대통령령(안)

제6조(정보화촉진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정보화촉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회의)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법례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16조 (전문위원회)

-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연구·검토한 결과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이하 “농업등 정보”라 한다)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정보화 촉진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2. 정보화 예산 수립 및 조정
3.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4.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보화 추진
5. 농림축산식품부와 다른 기관 사이의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연계·조정
6. 그 밖에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촉진 정책의 조정 또는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할 수 있고, 책임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책임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본 법안에서는 농업정보화와 농촌정보화의 기본계획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양자를 구분하여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추진체계의 경우 묶어서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함
- 농업·농촌 정보화의 추진체계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등의 추진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규정함.
- 동 법안이 제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이외의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동 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제정된 별도의 정보화법률인 「국방정보화 기반 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추진체계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처간 협의가 필요할 것임.
- 종래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의 상세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법안에서는 담을 필요가 없으며, 하위법령에의 위임 또는 훈령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 대통령령(안)

제9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구성·운영) ①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협의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간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정보화 목표 및 비전 설정
2. 정보화 정책
3.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4.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 활용
5. 여러 공공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보고 등) ① 협의회 위원장은 제10조에 의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입법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추진체계 등)

①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등(이하 "국방정보화추진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군의 전투와 군령 등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① 국방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자원의 획득·배분·활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3.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국방정보화와의 연계·조정
4. 행정처리 과정의 정보화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분임책임관)

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책임관(CIO)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정보화분임책임관은 본부의 경우 각 국(관)의 주무과장이 되고 소속기관은

해당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맡는다. 다만, 본부의 경우 정보화사업 담당 부서의 장이 정보화분임책임관이 될 수 있다.

③ 산하기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정보화책임관이 된다.

제6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2.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3.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4.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예산 수립 및 조정
5.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6. 농림축산식품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연계·공동활용 촉진
7. 농림축산식품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조정
8.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종합설계도(EA)의 체계적인 관리
9.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수준 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
10. 농어업인 정보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정책 추진
11. 기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②본부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국(관)·소속기관·양청·산하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정보화분임책임관의 임무)

정보화분임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구성·운영)

① 효율적인 정보화추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모색, 정보교류 촉진 등을 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하여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본부 정보화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의 정보화 책임관 또는 정보화분임책임관으로 하며, 협의 안건에 따라 협의위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 부재시 본부 정책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본부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농림축산식품 정보화관련 목표 및 비전 설정
2.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관련 정책
3.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확정 및 기본계획의 변경
4.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 이용
5. 여러 관계기관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보고 등)

① 협의회 위원장은 제9조에 의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화책임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급 책

임자로 구성된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책임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본부 정책기획관이 되고, 의장 부재시 본부 정보화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의 임무)

① 실무협의회는 제9조 각 호의 실무적 협의 및 협의회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협의회 구성)

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정보화정책 자문 등을 위하여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가협의회 위원장은 본부 정책기획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협의 안건에 따라 위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4조 각 항의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하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본부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가협의회의 역할)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관련 정책 및 법령·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2. 정보화 추진과제 자문 및 사업화방안 모색
3.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하는 조직은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등)

①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각종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각종 정책·계획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4. 각종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이 제1항 각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책임관의 임무수행을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화책임관의 자격)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실제 업무처리과정 전반에 정통한 자
2. 정보화분야에 관한 넓은 이해와 안목을 가진 자
3.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전반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제7조 (정보화책임관 후보인력의 육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정보화책임관 후보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화 기반 구축

제12조(정보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등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농업등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는 그 특성상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가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지식화하여 공유·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바로 취약한 지식·정보기반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일찍이 지적되어 왔음.⁸¹⁾
- 이러한 단편적으로 산재한 자료 및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 법안은 이에 관한 법적 토대가 됨.

□ 입법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1) 한원식·신재훈·정무남, “농업정보화 현황과 발전방향”, 경상대학교 개교50주년 심포지움자료, 1998, 366면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5.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기관 및 부대에 대한 정보자원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도입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전략적 활용과 안전한 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효율적관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관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전담하게 하거나 조직 및 인력을 특별 편성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제23조 (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의 수집)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등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업 관련 사업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농업경영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농업경영체 또는 기업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 여기서 정보의 수집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 즉,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함(행정조사기본법 2조1호).
- 행정조사에 대한 법률로는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 행정조사의 방법·절차 등을 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이 있으며, 법안의 이 규정은 「행정조사기본법」의 특별법의 지위를 가짐.
- 특히 사인에 대한 정보의 수집의 경우 「행정조사 기본법」상의 최소침해원칙 및 권한남용금지(1조), 조사대상자의 한정(4조2항, 8조1항), 중복조사의 제한(4조3항, 15조), 예방조사중심주의(4조4항), 내용공표금지(4조5항), 타용도이용금지(4조6항) 등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임.
- 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경우나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될 것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예외사유에 대하여 규율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안)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 제2항 정보 교류·확대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무
3. 법 제23조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출연이나 보조 사무
5.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사무

□ 입법례

【행정조사 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검사 및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식육의 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인증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의 보호) ① 농업등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등 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이유

- 제13조에서 정보의 의미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보를 말하며, 정보관장 기관은 이러한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훼손·침해·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
- 제2항의 정보의 ‘침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 입법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4.2.14.]

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에 따른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2. 제11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3.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을 위한 전문기관

4. 제17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인증기관

5.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6. 제24조에 따른 연구소

7. 제29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8.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설립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9. 제37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10.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의 보호 등)

① 중앙인사관장기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관리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

이스를 침해 또는 훼손하거나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복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관리기관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0 (내용 훼손·변경의 방지조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2.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 화재·수재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15조(정보의 공동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등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등 정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교류·확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를 담당하는 폐쇄성, 정보보호의 잘못된 과잉 의욕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보의 교류·확대의무 부과.
- 기관별로 진행한 사업들의 원본 데이터에 대한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왜냐하면 한 기관에서 예산과 노력을 들인 사업의 데이터를 다른 필요한 기관들에게 넘겨줄 때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임.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사업을 이미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과 시간, 인적 자원을 중복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발생함.
- 농업 관련 데이터들은 많은 곳에 산재되어 있는바, 직접적으로 연관된 데이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통계를 관리하고, 통계청에서 농식품 통계를 관리하며, 농진청 및 농촌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표본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
- 농업관련 기관 간 농업정보 협력 서비스 체계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분산된 정보를 연동 할 필요성 존재
- 예를 들어 수요자 맞춤형 농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정보(정책, 통계), 농진청의 정보(기술정보), 농정원의 정보(가격정보), 유통공사의 정보(유통), 농경연의 정보(관측정보) 등을 연동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민간활용도가 높은 실시간 정보들만이 Open API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13년) 35종, ('17년) 356종 예상("정부 3.0 추진 기본 계획", 안전행 정부, 2013.06) 그러나 농업의 특성상, 민간활용도가 낮은 정보들도 농가 및 농업 경영체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어 농업관련 데이터는 Open API형태로 제공해줄 필요가 있음.
- 2013년도 10월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공공데이터의 공동활용이 용이하여졌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법은 그러한 일반적 수준을 넘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에 특유한 공동 활용의 정책을 강구할 필요를 선언하고 있음.

□ 입법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가기관등 간의 정보 공동활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행정업무 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로 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정하고 다른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동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의 요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상호운용성 지침 개발 및 보급
2.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3. 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한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시책에 따라 해당 국방정보기술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

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사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표준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 시스템 구축, 상호 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화와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 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안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정보의 상호운용이 가능함
- 기관별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할 때 가장 큰 문제로 데이터에 대한 코드체계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는 많은데 코드체계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이 데이터들을 융합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산출하기 힘들. 가격 데이터나 유통 데이터 등은 쉽게 통합이 되지만, RFID 및 기타 센서 등이 수집한 데이터에 코드체계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작물 성장 정보는 많이 쌓이고 있으나 이 많은 데이터들이 통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농식품 ICT융합 관련 기업의 제품 품질인증·표준화 인증을 받은 업체는 49.0%로 다소 낮은 수준임. 장비 업체의 경우 78.6%가 품질인증·표준화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반면,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40.9%만이 품질인증·표준화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았으며 인력 규모별로는 1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의 경우 품질인증·표준화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17.6%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임.⁸²⁾
- 품질인증·표준화 인증을 아직 받지 않은 기업 중 향후 품질인증·표준화

82) '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사업 강화를 위한 ISP 수립', 농림축산식품부(2013.07).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업은 9.8%에 불과한데,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고, 표준화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 호환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

□ 입법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 인력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1조 (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4조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간정보 표준화)

-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표준화)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의 표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이전·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보급 및 확산
2.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보급 및 확산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29조 (산업융합 표준화)

①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산업융합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제50조 (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3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4.2.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게 그 제품을 수거·반품하도록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방법·절차 및 인증표시, 제5항에 따른 수거·반품·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7조(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단체·기업 등을 정보화 기초연구 개발·선도모델 발굴 및 테스트베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된 기술 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시설·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정보통신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확산을 위한 근거 규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를 사업별로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함.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융합 관련 기업의 개발·생산·판매하고 있는 제품(부품)의 국산화율 및 해외대비 기술 수준을 보면 제품(부품)의 국산화 비율은 평균 81.7% 수준이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어’ 분야는 제품(부품)의 87.1%가 국산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비 분야의 국산화 비율은 58.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⁸³⁾
- 해외 최고수준 기술 보유기업과 국내기업의 기술을 비교하였을 때 국내기업의 수준은 최고 수준의 기업 대비 평균 79.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⁸⁴⁾

83) ‘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사업 강화를 위한 ISP 수립’, 농림축산식품부(2013.07).

84) 해외대비 기술수준의 경우, 개발·생산·판매하는 정보통신기술 융합 분야 관련 제품(부품)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해외 최고기술보유기업의 경쟁업체와 비교하였을 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국내기업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응답임. 출처 : ‘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사업 강화를 위한 ISP 수립’, 농림축산식품부(2013.0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농식품ICT 기업체들이 제품(부품)을 개발·생산·판매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사업화 자금부족’이 46.0%이며, 이어서 ‘R&D자금 부족’이 41.0%로 자금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개발 전문 인력부족(40.0%)’, ‘판로확보 어려움(28.0%)’, ‘시장·기술 정보 부족(22.0%)’ 등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남.⁸⁵⁾
- R&D 관련 기관 중 기술 개발에 앞서, 타 기관의 R&D 진행 상황 및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중복 투자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함. 정보화를 통한 R&D 통합 DB구축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R&D관련 총괄을 맡아줄 정보화 부서가 필요함

□ 입법례

【산업융합촉진법】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85) ‘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사업 강화를 위한 ISP 수립’, 농림축산식품부(2013.07).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연(産學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8조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예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벤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3.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홍보·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4. 2. 1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2조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통계
 2.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3. 전문인력의 양성
 4.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5. 정보통신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7.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축
 8.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외 협력
 9.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창업·법률·회계·경영 등에 대한 지원
 10. 정보통신기술등의 유통구조 개선 및 보급 촉진
 11.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보화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농가들 간의 정보화 격차에 비해 정보화 교육은 평균 수준만을 대상으로 진행됨
- 잘 사용하지 않았던 PC, 스마트폰, SNS 등에 대한 기초를 배우는 와중에 이들을 농가 경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반면 농촌에도 PC, 스마트폰 등이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 기기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농가의 입장에선 이런 기기들을 경영활동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요가 있음. 그러나 현 정보화 교육은 예산 및 인력문제로 평균 수준 이상의 강의를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 도농업기술원, 시군구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이는 단기간에 다량의 정보화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 개별 농가의 전산환경과 작업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교육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후관리 및 연장교육이 힘듦
-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보화 교육이 진행되지만, 마찬가지로 농가 개별 상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 내용과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함
- 농업인의 경우 정보화 역량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으로, 이는 국가에서 지정한

4대 소외계층의 정보화 역량지수 중에서도 가장 떨어짐. 4대 소외계층의 역량 격차지수는 '11년 47.2점에서 '12년 43.9점으로 '11년 대비 평균 3.3점 개선.⁸⁶⁾

- '12년 일반국민의 정보역량(컴퓨터·인터넷 사용능력) 수준을 100으로 할 때, 농어민의 정보역량 수준이 일반국민의 39.0%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장노년층(48.0%), 저소득층(76.8%), 장애인(79.0%)의 순으로 정보역량 수준이 낮게 조사되었고, '12년 일반국민의 질적 정보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농어민의 질적 정보활용 수준이 일반국민의 46.2%로 4대 소외계층 중 가장 낮은 수준임.⁸⁷⁾
- 일반국민의 정보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계층별 정보역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정보선도계층인 월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정보역량 수준은 일반국민에 비해 26.2%, 사무직 종사층은 46.8%, 20대 연령층은 60.2% 높은 수준이며, 남성, 저연령층, 전문/사무직, 학생, 도시지역 거주층, 고학력일수록 정보역량 수준이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⁸⁸⁾

□ 입법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86) 일반국민의 역량 부문 정보화 수준을 기준으로 놓고, 일반국민 대비 4대 소외계층의 평균 정보화 수준은 '11년 52.8%에서 '12년 56.1%로 전년 대비 3.3%p 상승. 소외계층별 전년 대비 역량 격차지수 감소폭은 장노년층(5.2점↓), 장애인(3.9점↓), 농어민(1.0점↓), 저소득층(0.2점↓)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국민 대비 장노년층의 정보역량 수준이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 출처 : 2012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87) 2012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88) 2012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국민보다 정보역량 수준이 높은 계층은 남성, 30대 이하 연령층, 전문/사무직, 학생, 고졸 이상,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층, 도시지역 거주층인 반면, 반면, 일반국민보다 정보역량 수준이 낮은 계층은 여성, 40대 이상, 농어민, 주부, 생산직, 서비스/판매직, 무직, 중졸 이하, 월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층, 군지역 거주층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농어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어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수산물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
2.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홍보
3. 농어업경영체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5. 농수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

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정보화사업 및 교육·훈련)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수산생명자원의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사업
 2. 농수산생명자원의 수집·등록·보존·평가 및 분야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3. 그 밖에 농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1. 농수산생명자원의 수집방법
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기술
3. 농수산생명자원의 특성 분석·평가기술
4. 그 밖에 농수산생명자원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정보화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지수(이하 “정보화지수”라 한다)를 개발·공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보화지수 측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농촌정보화 실태조사

-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보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실태조사의 법적 성격은 행정조사(行政調査)에 해당하므로, 조사의 실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 필요성

- 정보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서는 정보화 실태조사가 필요

- 실태조사 결과를 지수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보화 현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정보화정책 추진에 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음
- 정보화 실태를 조사하여 지수화함으로써 전국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를 계량적으로 분석,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임

○ 내용

-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부령으로 위임
- 농촌정보화 평가지수 개발

○ 활용

- 농촌정보화 평가지수를 통해 지역별 정보격차를 계량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간 정보화 편차 모니터링 가능
- 평가지수를 기초로 정보화 촉진지역(법안 제29조) 선정
- 평가지수를 토대로 지역간 정보화 격차 해소방안 마련 및 추진

□ 부령(안)

제4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 촉진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② 실태조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 실태 및 통계
 2. 정보화 인적자원
 3. 정보화 인프라
 4. 표준화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정보화 실태조사는 농업경영체 간 정보화 수준 비교에 도움이 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입법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3조 (연차보고 등)

-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2.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3.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4. 인터넷중독 실태 및 조치 현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실태조사)

①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 실태
2. 국가기관등의 민간 분야 정보화 지원 실태
3.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의 활용 및 이용규범에 대한 정보문화 실태
4.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접근·보유·이용 등에 관한 정보격차 실태
5.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해당 기기에 대한 중독 실태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실태 및 그 추진 성과
7. 국가기관등의 지식정보자원 보유량 및 디지털화 현황
8. 국가기관등의 지식정보자원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실태
9. 그 밖에 국가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국가기관등,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6조 (실태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항목·방법·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8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등
 - 2. 전자거래사업자
 - 3.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법인·단체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실태조사 등)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실태 및 통계
 2. 분야별·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기능별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4. 2.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비료·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등 정보 및 정보화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근거조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입법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협력)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공공데이터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4조 (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제협력)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합작전능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기술 표준화와 검증
2. 국방정보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조사와 분석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어업 및 식품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농어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 및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어업·농어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30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융합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제31조 (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약체 운영 등)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해외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약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글로벌협약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글로벌협약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4.2.1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6조 (국제협력)

- ①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

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정보화 재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예산편성이나 배정과정에서 정보화 사업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 등 특정재원을 지정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상황 등 국가재정현황에 알맞은 정보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특히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 3.0」 정신에 맞추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관계되는 여러 부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입법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6조 (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의 창달
2. 정보격차의 해소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재원의 확충)

-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 ① 정부는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술지원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보조 또는 용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③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재원마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 2014.2.1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 (재원 등)

-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제11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거래사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다.
- ④ 산업진흥원은 제27조제11호나목에 따라 산업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8조 (재원의 확보)

-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 촉진 사업

제22조(정보화 사업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의 기술동향과 투자방향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 농업식품산업의 정보화 사업의 실시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종 정보화 사업의 체계와 중복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 입법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이 조에서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주요 국가의 국방정보화에 관한 개발 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를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의 상용기술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한다. 이 경우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용기술 우선 도입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지침에 신속한 전력화, 정확한 요구사항의 도출 및 적시 반영, 적정 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화적 획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사업추진절차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⑦ 사업추진지침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제65조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3.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5.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시범사업의 추진)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과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정보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의 확보 등 연구수행의 기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정보 시스템의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업등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효율적 가공·활용과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정보시스템은 대내적 정보화 및 대외적 정보화를 위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이 조문은 양자에 대한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각종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포털시스템과 농림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는 애그릭스 시스템까지 포함. 이 조문은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근거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탁의 가능성 부여하고 있음.
- 사업 중복 문제, R&D 중복 문제, 중복 지원 방지 및 정보통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현재 각 기관별 기본 업무는 중복되지 않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경우 중복 사업의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사업이 완료된 경우 보고서를 통해서 각 기관의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적으나, 현재 진행 사업의 경우 중복 가능성 존재함.
- R&D관련 기관 중 기술 개발에 앞서, 타 기관의 R&D 진행 상황 및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중복 투자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데, 이는 정보화를 통한 R&D 통합 DB구축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R&D관련 총괄을 맡아줄 정보화 부서가 필요함
-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사업을 수행할 때, 여러 기관에서 한 농가가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알아낼 수 있는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홈페이지 가입 시 가입 데이터 연동을 통한 여러 농식품 관련 기관의 가입 간소화 및 가입 데이터 연동을 이용한 중복 투자 지원을 사전 차단할 필요성 존재
- 관련 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 변경을 통해 통합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관의 요청 시 제공해 줄 필요 있음
- 농업·농촌 정보통계의 경우 조사기관에 따른 통계의 편차가 존재함.
- 따라서 기존의 조사기관과 제휴 및 시스템 연동을 통한 조사항목 추가 및 농가표본선정 개선을 수행하거나, 농식품부에서 공식통계 인증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러한 이유로 정보의 효율적 가공·활용과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시급한 실정임.

□ 입법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 ①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산업법】

제96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연안어업·근해어업 또는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소프트웨어 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를 위하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단체·기업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본조 제1항의 경우, 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선행하는 국가의 의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걸친 소프트웨어 개발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본조 제2항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임
-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히 정보화라는 사업의 특성상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의 역할이 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구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정보화 촉진사업의 추진에 있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가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본 항에 규정함

- 본조 제3항의 경우, 위와 같은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임

□ 입법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舊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기술(이하 "관련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사업자와 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 ①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기술(이하 "관련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사업자와 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1조(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콘텐츠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을 비롯하여 농업등 정보를 콘텐츠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0조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동 조항은 일반적인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일반적 조항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조항으로 원용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정보화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적인 물적 설비의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정보화 촉진을 위해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한 바 있음
 - 동법에 따르면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제2조 제1항 제1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의 목표는 정보화 그 자체에 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를 통하여 산업발전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소득증가와 국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경제에의 기여에 이르도록 하는 창조농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정보화의 결과로 중요하고 품질 좋은 콘텐츠가 다량 생산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국가적 노력 의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부과하는 것에 본조의 제안목적이 있음

□ 입법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0조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

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콘텐츠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정부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기술의 연구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유망 디지털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지원
 - 2.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역협력 및 시범사업
 - 3. 디지털콘텐츠 인프라 구축 지원
 - 4. 디지털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 5.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사업
 - 6.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제22조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일: 2014.2.14]

제26조(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융복합모델 연구·개발 및 보급
2. 융복합지원센터 운영
3. 융복합 기기 및 서비스 표준화
4. 융복합 기술 전문인력 양성
5. 융복합 관련 기관 및 국제협력 지원
6. 통계자료 작성·제공
7.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 촉진과 관련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ICT 융복합 사업 추진방식의 한계 및 확산 부진

- 공모방식의 모델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방식으로는 주요 국정(농정) 과제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사업규모도 작아 다양한 모델개발에도 한계(연간 모델개발 과제 수 : 5개(사업비 : 국비 12억원 내외))

- R&D 및 품목(사업)부서와의 업무 협조체계 미흡. 모델개발 및 실증이후 품목(사업) 부서와 공동으로 확산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실정

○ 농식품 ICT 융복합기술 및 모델에 관한 표준화 미흡 및 관련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민간 주도의 농식품 ICT융합 활성화에 한계

- 개발된 모델도 현장점목을 위한 표준화가 미흡하여 확산이 부진. 센서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기술(센서, 제어기, 통신장치 등)의 단순 조립 보급으로 동일 목적의 부품이
지만 규격 및 제원이 상이하여 상호 호환성 미흡
- ICT융복합 관련 설비 및 SW 등 외국산 점유율 비중 증가 추세. 고가격, 외
산기술 종속화 가속 및 축적Data 시설 보급국으로 유출
 - 첨단 농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ICT융복합 확산 기반 취약
 - ICT 융복합 성과 홍보 부족 및 최신기술 활용에 대한 두려움 존재
 - 농업분야 IT전문가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ICT 융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
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흡(A/S 문제로 고가 장비를 철거하는 시설원에
및 축산 농가 발생하고 있음)
 - 농식품분야의 ICT 활용한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의 핵심은 ICT·BT 융합을 통한 창조농업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을 규정하는 본 조항은 본 법률안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은 기존의 1차 산업 중심의 기술에 한정되어 있었으
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 융합시킨다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전 과정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으로 나아
갈 수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ICT 융합은 대단히 중
요한 정책목표라 할 수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ICT 융합을 위해서는 먼저 융복합모델의 연

구, 개발 및 보급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융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융복합 기기와 서비스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되어야 함
- 그 밖에도 융복합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과 국제협력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ICT 융합정책을 추진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ICT 융합을 위해 정부와 여러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시험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ICT 융합 촉진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ICT 융합촉진정책을 선도하게 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항을 규정

-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ICT 융합 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안)

제12조(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분야의 전문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컨설팅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전문기관 사업의 범위와 내용

제13조(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금의 지원

□ 입법례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융합 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성화 지원
 2. 융합 신산업 사업모델의 개발과 확산
 3.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지원
 4. 융합 신산업의 표준화와 보급에 관한 지원
 5.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6.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이종(異種) 분야 간 교류의 촉진
 7.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용자
 8.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와 그 지원 사업의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관련 연구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연구 성과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실시 및 교류 활성화 등과 관련한 사업
2.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시험제품 또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자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증개·알선 등의 사업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2. 산업 간 연구인력의 교류 활성화
3. 해외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의 유치
4.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과 산업융합 연구개발과제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산업 간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산업융합 연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이 수행하는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분석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연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인력 교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산업융합의 성과를 내는 기업을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와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산업융합의 촉진
 - 2. 산업융합 신제품과 산업융합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 3. 허가등이 있기 전에 시행하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기술의 효용 또는 위해(危害) 등에 대한 검증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이하 "산업융합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산업융합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산업융합사업으로 적합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보조 또는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 고용창출이나 그 밖에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의 촉진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융합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
 2. 산업융합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3. 산업융합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산업융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산업융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융합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산업융합을 통한 중소기업자등의 신제품 개발과 융합 신산업 발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이나 융합 신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센터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3항에 따라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을 파견한 소속 대학,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소속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신분상·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정보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 활성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정보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농장업무의 종합성과 농장관리의 계층이 미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농장의 하부작업을 위한 TPS수준임. 현재는 상위경영층(농장경영자, 경영주)을 위한 MIS, DSS개발이 되고 있고 ERP같이 통합된 소프트웨어가 보급중이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함
- 농장의 경우 농장 내부 정보공개 우려로 회계관련 프로그램 사용을 주저함. 웹서비스에서 농가별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그동안 농가 소프트웨어 개발은 단기 개발 사업이고, 기업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 소프트웨어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음
-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 이러한 의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 구체화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정보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농림축산부장관에게 부과하였음

- 이전의 경험으로는 농업정보 118사업이 있었음. 농가의 현장을 중심으로 방문하여 교육, 대학생들과 연결하여 기본적인 PC 활용법부터 농가 소프트웨어 사용법까지 농가별 맞춤형 교육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경영지식은 전달하기 힘들. 대학과 농가간의 산학협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현재 사업 중단됨

- 본 법률안 제23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정보서비스가 운영되고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가 개발된 경우에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만 정보화 기반을 구축한 정책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본 조항은 본 법률안에서 부과한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구축관련 의무의 이행으로 산출된 결과물을 실제 농정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창조농업의 실현이라는 정책결과를 달성하게 하려는 데에 제안목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서비스와 소프트웨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으로는 각종 농림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정책이 집행될 것인데, 주로 농업정보, 농업경영정보 등을 농업경영체에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지원, 스마트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스마트 농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입법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1조(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4.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5.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1.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0조 (정보통신융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제32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1조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콘텐츠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정부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기술의 연구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농식품 전자거래 활성화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비용절감 및 운영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정보화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전체 전자상거래 발전 속도에 비해 느리게 발전하고 있음
- 농가들이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
- 농가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작업 시간 외로 따로 전자상거래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
- 농식품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유지 등을 통해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를 보호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면서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정책적 필요에서 전자거래의 활성화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에의 ICT 융합을 통하여 농식품의 전자거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본 조의 제안목적이 있음
- 통상적으로 농산물의 전자거래란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서는 농수산물의 전자거래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동 규정은 전자거래 촉진의 대상으로 “농수산물”만을 규정*하고 있어,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식품까지도 적용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본 법안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음
 - *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식품까지 포괄하는 전자거래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규정과는 별도로 본 조항의 입법이 필요하게 됨

□ 입법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관리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2조(개인정보 보호)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관리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互換性)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의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연(産學研)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정보화 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정보화 정책 및 정보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안 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여러 방면에서 각종의 정보화 촉진사업이 추진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여러 주체에 의하여 여러 방면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본 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보화 촉진사업을 평가하여(제1항) 향후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추진에 반영하게 함으로써(제2항), 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규정되었음

- 다만 평가의 종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하위법령(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3항)

□ 부령(안)

제5조(평가의 종류) 법 제29조에 따른 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제6조(자체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화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
2. 제출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전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공기관은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 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평가의 시기) 법 제29조에 따른 정보화 평가는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당연도의 전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 사업을 지정하여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평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기획의 타당성
2. 사업 집행의 효율성
3.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성과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업무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자문위원회는 정보화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임한다.

제11조(전문평가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2. 제5조에 따른 자체평가 지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 입법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시행계획의 평가)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지역발전위원회는 제4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 5.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 및 기관 간의 성과 비교
 2. 지식정보자원의 현황 및 활용도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방정보화 평가)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기간 중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2조제6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다.

-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기본계획 등의 평가)

-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4.2.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농촌정보화 촉진

제30조(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그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조항이 있으나, 동 조항만으로는 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의 지원에 한계가 있음
-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3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4대 소외계층 중에서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뒤떨어져 있음이 확인되어, 4대 소외계층 중 농어민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수요 존재

* '12년도 기준, PC 기반 일반국민의 종합 정보화 수준을 100%(1)로 가정할 때 소외계층별 일반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 수준은 장애인 83.4%, 저소득층 82.2%, 장노년층 71.2%, 농어민 64.8% 순으로, 이른바 4대 소외계층 중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뒤떨어져 있음을 확인

-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화 관련사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조항으로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입법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7조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용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제71조 (기술지원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설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2조 (농어촌산업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립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9조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②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문서·전자거래 촉진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정보격차의 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 주민이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일반적 조항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항은 일반적인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내용일 뿐, 농업인과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아, 농촌정보화 촉진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근거조문으로는 부족함이 있음
 - 특히, 동법 제32조에서는 특별규정으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만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 농촌주민과 농업인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농업인과 농촌주민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별도 조문이 필요하게 됨
-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 목표는 농업인과 농촌주민이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민들과 비교할 때 정보부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이를 위하여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였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향후 각종 정책의 추진에 있어 농촌 지역의 정보화 촉진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놓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타법과의 관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는 농어촌의 정보화촉진 규정이 있어 중복규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동법의 경우,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정보화촉진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정보화촉진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임
- 정보화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본법에서 위의 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도, 본법은 구체적인 정보화촉진을 위한 규정들과의 체계조화를 위해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중복규정이라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봄

□ 입법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舊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

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가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을 ‘정보화 촉진 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실태조사(법안 제16조)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화 격차가 심각한 지역으로, 시급하게 정보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보화 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지원의 내용
 - 정보화 촉진지역 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제2항)
 - 정보화 촉진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므로,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낙후지역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 (비교) 영국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 지역에 광대역 인프라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인·허가에 대하여 단 한번의 허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광대역 인프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법안에서는 영국 수준의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자 하는 것임

○ 촉진 지역의 지정

- 정보화 촉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유사사례

- 성장촉진지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교육투자우선지역(교육부에서 지원사업으로 추진)

□ 대통령령(안)

제14조(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시·군에 비하여 정보화 현황이 열악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군 또는 그 시·군의 일부 지역을 정보화 촉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의 정보화 촉진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화 촉진 지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촉진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화 사업의 우선적 추진
2. 정보화 촉진 지역 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그 밖에 정보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우선적 추진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촉진 관련 사업자 지원) ① 제1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2.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
3.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신비용 감면 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자의 통신비용 감면율
2. 해당 사업자가 산정한 전기통신설비 설치비용의 합리성

□ 입법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 (의의)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동법 제2조 제7호)

-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 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동법 제16조)

○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지역발전위원회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속한 시·군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장은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농업인에 대한 통신비용 감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한 통신비용 감면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이유

- 농촌주민에 대한 통신비용 경감의 필요성이 큼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금의 감면대상에는 농촌주민이 제외되어 있음

※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 마.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사.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농촌 주민에 대한 통신비용 경감을 위해 사업자에게 요금감면 의무 부과

- 국가로부터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농촌 주민에 대한 통신비를 경감해 줄 의무를 부과
- 설치비용 지원액에 따라, 해당 비용이 소요된 농촌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요금감면을 시행하도록 함
- 구체적인 지역과 감면비율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사업자의 통신요금 감면의무를 '부담'의 성격을 갖는 '법정부관'의 형식으로 부과하여, 부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로 설정

※ 참고: 전기통신사업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터넷 등)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
 -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등의 설비

-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 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 기간통신역무: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 별정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부가통신사업: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예: 카카오톡)
 - *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 기간통신사업자
 - 회선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시내, 시외, 국제)/전기 통신 회선 임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전기 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현황)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등 118개 전기, 통신, 케이블방송 사업자('13.8월 기준)

※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의무

-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내용: 1. 유선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 유선전화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 가.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 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 다. 도서통신 서비스: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에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 가. 기간통신역무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 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 기간통신역무 중 육지와 선박 사이 또는 선박과 선박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
 -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 마. 인터넷전화 서비스
 - 바. 휴대인터넷 서비스
- “농촌 주민”은 보편적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입법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3조 (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① 정부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0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경영·기술·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2.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훈련 관련 비용
3. 농어촌지역에 대한 컴퓨터·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비용
4.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보급 비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요금의 감면 대상)

법 제29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2. 군사·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가통신망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에 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기관이 사용하는 전용회선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3. 전시(戰時)에 군 작전상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5. 정보통신의 이용 촉진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6.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7.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8. 우정사업(郵政事業) 경영상 특히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34조(무료 무선데이터전송구역 확대를 위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주민이 무선데이터전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 농촌지역 주민들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공공 Wi-Fi 구축 확대를 추진

<공공 WI-FI 구축현황 (단위:개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공공 Wi-Fi 신규 구축	-	1,000	2,500	2,500	-	-	6,000
기구축 Wi-Fi 개방	2,000	1,000	500	500	1,000	1,000	6,000
합계	2,000	2,000	3,000	3,000	1,000	1,000	12,000

그림 4-1. 공공 WI-FI 구축현황 (단위:개소)

- * 정부는 공공 Wi-Fi 구축을 확대하고 既 구축 Wi-Fi 망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13.9월)
-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Wi-Fi 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본 조를 규정
- 공공 Wi-Fi 신규 구축 정책이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만을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도시지역 주민들과 농촌지역 주민들 사이의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향후 망 구축 추진시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를 유도하려는 것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입법 목적이 있음

- 농촌 지역에 Wi-Fi 망을 구축할 경우 농가별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사실상 통신비용 감면 효과가 발생함

□ 입법례

- 무선 데이터 전송(Wi-Fi)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음. 정부의 정보통신망 구축 노력에 대한 입법례들을 간접적으로 참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 간 비용부담의 조정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보칙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의 효과적 촉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일반적인 권한의 위임, 위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법률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의 정비, 기타 시행준비를 위한 각종 행정적 준비절차를 위해 공포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

참고문헌

가. 농업 정보화 부문

하상건, 농업 환경 지도의 작성과 농업 환경자원 정보 통합관리 방안 연구 제3차년도 완결보고서, 농촌진흥청, 2008.

남수연, 친환경과 정보화요인이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2007. 03.

최영찬,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숙과 IT산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12.

최영찬, 농림정보화 성과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김충실, 농업정보화를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경북대학교출판부, 2007.

이성우, 정보화와 농촌사회, 명진씨앤피, 2005.

김동환, 모바일 컴퓨팅을 이용한 산지유통 전문조직의 유통관리시스템 개발 최종연구보고서, 농림부, 2004.

이인우, 일선 농협의 조합원 정보시스템 구축 고삼농협의 사례와 시사점, 농협조사부, 2003.

농업인 정보화교육 운영실태 조사, 농림부, 2002.

정보화로 농업을 살린다 농업·농촌 정보화 성공사례, 농림부, 2001.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계획, 농림부, 2001.

21세기 지식·정보·기술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계획, 농림부, 200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農業情報化年鑑. 1987~2000, 農文協, 2000.

강정혁, 농업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 KREI, 1995.06.

한원식, 농업농촌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방안, KREI, 1995.06.

농축산물 유통정보와 대응전략 정보화 농업 및 유통개선을 돕기위한,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1991.

유홍재 채은희, 농촌정보화마을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32권 3호. 2009 pp.85-106.

유병민 김수욱 박성열 박혜진 이은진, 농업정보화를 위한 농업인 ICT리터러시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산업교육학회,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4), 2009.12, 93-119 (27 pages).

유찬주, 이영만, 연구논문 경제학 농업정보화에 대한 농업인의 수용태도 분석.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경상대학교 농업자원이용연구소), <농업생명과학연구> 42권 3호. 2008 pp.43-51.

강민구 김경량, 농촌정보화를 통한 농촌관광의 활성화, 농촌관광연구 14(2), 한국농촌관광학회, 2007.12, 121-149 (29 pages).

고석남, 농촌·농업종합대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보화 전략, 산업경제연구, 2006.10, 한국산업경제학회, 1761-1778 (18 pages).

하영수, 정보화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1권 3호, 대한정치학회, 2004 pp.75-94.

김주원, 특집, 정보화마을의 활성화, 민관협력을 통한 농촌정보마을 발전전략 - 운영실태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구 자치정보화조합), 지역정보화 27권 0호. 2004 pp.39-45.

김주원 김주익, 정책논단 강원도 농촌정보화마을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한국공

공관리학보 18권 2호, 한국공공관리학회, 2004 pp.201-234.

윤준상 김정태, 농업정보화를 위한 농업정보 119사업의 활성화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5권 3호, 한국농업교육학회, 2003 pp.39-51.

유병규, 디지털농업을 위한 농촌정보화사업의 단계별 적용, 산업경제연구 16권 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3 pp.131-149.

유찬주, 특집, 한국 농촌의 미래, 우리나라 농업, 농촌정보화의 현황과 과제, 농촌사회 13권 1호, 한국농촌사회학회, 2003 pp.115-141.

강신호 한경식 임지영 김세현, 낙농분야 농업정보화의 실태와 효율적 지도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지 19권 1호,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 2001 pp.22-29.

김영식 전은경, 논문 농업정보화를 위한 추진 사례와 농촌지도사의 역할, 농촌지도와 개발 7권 2호, 한국농촌지도학회, 2000 pp.321-325.

이영주, 농업정보화 사업의 발전방향 한국 농업정보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육종학회 학술발표회 발표요지 30권 3호, 한국육종학회, 1998 pp.391-414.

한원식 신재훈 정무남, 농업정보화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작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작물학회, 1998.10, 353-367 (15 pages).

한원식 정무남, 특집 농업정보화 농업, 농촌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방안, 농촌경제 18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pp.141-152.

왕인근, 농촌정보화의 필요, 현황, 전망, 그리고 외국의 사례,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4권 2호, 한국농업교육학회, 1992 pp.1-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신양수, 지역 속으로 자치단체 정보화 사업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농작물피해 모바일 서비스로 최소화-농업기술정보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구축, 지역정보화, 2012, 76(0): 78-81

오태석 정남수 김창호, 연구보문 농업인의 정보화 수준에 따른 농업정보 개선에 관한 연구 -4대강 농경지를 대상으로,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011, 23(3): 239-246

김홍연 정남수 장우석 오태석 임창수, 지식기반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민 정보화 실태 및 지식수요 조사, 농촌계획, 2010, 16(4): 139-145

박성열 최승철 차승봉 김학섭 임종훈, 농업인 ICT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개선 방안, 농업경영·정책연구, 2009, 36(4): 1045-1064

강명희 최형신 김민정, 농업경영정보화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규명, 교육연구와 실천, 2009, 74(0): 1-30

나. 농촌 정보화

농촌생활지표 조사보고서, 인구 및 사회 가족생활 여가생활 사회복지 지역개발 및 정보화, 농촌진흥청, 2011.

유홍재, 농촌정보화마을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10.

신윤식, 유비쿼터스 시대의 농촌정보화 모델 연구, 정보통신부, 2006.

이호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농촌인력 육성방안, 경상북도의 농촌여성인력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

이동필,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와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2001 12.

정보화로 농업을 살린다, 농업 농촌 정보화 성공사례, 농림부, 2001.

이동필, 지역간 정보격차와 농촌지역의 정보화, KREI, 1997 06.

이동필,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와 발전방향, 농촌지역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농정연구포럼,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와 발전구상, 농정연구포럼, 1997.

농촌지역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 농촌지역 정보화추진 실태와 문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1996.

한원식, 농업농촌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방안, KREI , 1995 06.

남수연 조중구, 이성우, 친환경과 정보화요인이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농촌경제, 2007, 29(5) 45-62

유병민,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지역정보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005. 37(1) 199-214

이성우 임형백 조중구, 농가 정보화의 결정요인과 지역간 차이, 농업경제연구, 2004. 45(1) 47-81

이병렬, 지역농업기상지원을 위한 정보화기술 전망 및 활용, 한국농림기상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3(1), 189-201

이종환, 정보처리 및 복학기술, 젯소의 개체인식 및 형상 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시각 시스템 개발(2),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한 체위 분석, 바이오시스템공학(구 한국농업기계학회지), 2003, 28(1) 65-76

심미옥 김화님,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사업 효과 평가, 농촌지도와 개발, 2001, 8(1) 107-119

나승일, 정보화 사회의 초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양농업교육의 내용에 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999, 31(1) 21-41

이정규, 지역정보화활성화, 농업 농촌의 정보화를 위한 농학계 대학의 역할,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1999, 1999(0) 81-89

소순열 유찬주 황수인, 지역농업정보화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 1998, 29(0) 80-96

송유한, 농업정보화 사업의 발전방향, Internet을 활용한 병해충 발생예찰, 한국육종학회 학술발표회 발표요지, 1998, 30(3) 415-445

이정규, 경상대학교 개교 50 주년 기념, 한국작물학회 한국육종학회공동주관 심포지움 회보(제 3 부), 농업정보화 사업의 발전방향 - 농업정보의 특성과 지역 농업정보망 구축에 있어 대학의 역할, 21 세기 한반도 농업전망과 대책, 1998, 0(0): 368-390

노재선 김한호, 정보화 시대의 선물시장과 개발수입의 명암, 한국농업경제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초청논문, 농업경제연구, 1997, 38(2) 305-323

강정혁 박세권, 농촌지역정보의 수요과약과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방안, 농업정책연구, 1996, 23(2) 175-197

정영진 이용현,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전남지역 사회교육자원 정보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995, 27(4) 79-98

강정혁, 농업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 농업정보화, 농촌경제, 1995, 18(2) 109-124

오치주 이장호, 특집 : 농업정보체계의 현황과 통합화방안, 농업정보화, 농촌경제, 1995, 18(2) 93-108

이장호 오치주, 특집 : 농업관측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축방안, 농업정보화,

농촌경제, 1995, 18(2) 125-140

김영건, 농촌 정보화 마을 실태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 연구, 2009, 18(2) 83-109

심정아, 정보속으로 기획연재: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충청남도 u-농촌체험관광 시범사업 추진. 지역정보화, 2009, 56(0) 42-47

조영임, 정보속으로 기획연재: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Opinion 「아산시 U-농촌 체험관광」, 지역정보화, 2009, 56(0) 48-49

허우궁, 정보통신기술과 농촌 경제: 한국과 일본 정보화마을의 사례 연구, 대한 지리학회지, 2008, 43(5): 728-742

박영철, 2006 전국도시평가 우수 도시 : 새로운 농촌발전 모델 구축으로 정보화 도시 정착-진주시, 도시문제, 2007, 42(466) 73-78

유승주 조중구 이성우, 정보화가 농가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2006, 12(3) 81-95

황영기, 벤치마킹 - 우수 정보화 마을을 찾아서 : 우리 마을 한줌의 "흙"도 소중한 자원... - 무서운 기세로 차세대 농촌 혁신을 이끄는 전남 해남 두륜산버섯마을 -. 지방행정, 2005, 54(625): 104-114

김원동, 연구논문 : 정보화마을 사업의 정책적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정보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005, 15(1) 7-57

정우열, 희망은 지방에 있다! : 제6분과 ; 지방정책과 관리 : 제4주제: 농촌마을의 정보화와 농촌의 변화: 정보화마을의 사례, 2003년도 동계학술발표회 자료집, 2004, 0(0) 471-495

주성재, 농촌지역의 정보화와 지역발전: 원주 정보화시범마을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2001, 36(5) 516-5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주성재, 논문 : 농촌지역의 정보화와 생활변화 : 강원도 원주시 정보화시범마을 사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2001, 36(6) 137-151

허우궁, 농촌지역의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 강원도 횡단 정보화마을의 사례. 대 한지리학회지, 2001, 36(5) 501-515

조동범, 도시주변 녹지경관의 보전 , 관리에 있어 경관잠재력 지표의 경관정보 화와 가시화 연구, 2001, 농촌계획, 7(1) 37-48

이찬우, e - korea 건설을 위한 e - 비즈니스 전략과 IT 패러다임 : 국가정보 화 : 농촌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거점방식의 정보화 확산 전략 : 물리적 거점과 인적 거점을 혼합한 거점방식, 2001년도 경영정보 계열 공동 국제학술대회, 2001, 0(0) 43-52

김진균 박성준, 논문 : 21 세기 지식정보화시대 패러다임 전환과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방안, 농촌지도와 개발, 2000, 7(2) 279-288

최영찬, 정보화시대 농촌지도자의 경영전략, 농촌지도와 개발, 1999, 6(2) 39-51

이동만 장홍섭 김병근, 대구 . 경북지역 농촌 경제발전을 위한 정보화 추진방 안. 정보시스템연구, 1998, 7(1) 129-158

정인성 이계성, 농림지역개발을 위한 정보화방안에 관한 연구 - 전북 5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1998, 23(1) 215-243

최영찬, 정보화시대의 농촌지도사업, 농촌지도와 개발, 1994, 1(1) 29-36

다. 농촌 정보격차

이종순, 정보 격차를 넘어 평등 사회로 - 농촌과 도시 간 정보격차, 어떻게 해 소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06-28.

이동필,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와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2001.12.

이동필, 지역간 정보격차와 농촌지역의 정보화KREI, 1997.06.

김미영 최영찬,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한 개인의 정보화 격차 결정요인, 농촌계획, 2008, 14(3): 63-73

라. 일본문헌

消費者取引における情報力の格差と法規制—消費者法と市場秩序法の相互關係に着目して(特集 集团的消費 集团的消費者利益の実現と実体法の役割(日本消費者法学会第4回大会資料) 2011. 9.

障害者・高齢者に情報格差—読書をバリアフリー化<論点> 宇野和博 読売新聞 2010. 2. 6

情報格差拡大とその背景に関する一考察—東京—宮崎を中心とした検証的分析 『法と情報—石村善治先生古稀記念論集』所収 菊住昌一, 信山社出版, 1997. 8

自治省の地域情報化施策—電気通信格差是正事業を中心として(特集各省庁の情報化施策) 古川康地方自治コンピュータ, 1992. 7

情報化に対応する憲法(政策研究フォーラム 「憲法研究委員会」中間報告) 土居直美, 改革者, 2001. 6

地域活性化とITライフ—中心市街地に人を呼び戻せ!木更津モバイルタウン構想(地方分権と経済—自治体活性化への試み8), 片岡勝, 時の法令1631, 2000. 12. 15

平成7年度の自治省情報化関連重点施策について, 堀内和成, 地方自治コンピュータ, 1995.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自治省における地域情報化施策（特集 各省庁の情報化施策），村上英嗣，地方自治コンピュータ24-5，1994. 5

自治省における地域情報化施策の概要（特集 各省庁の情報化施策），古川康，地方自治コンピュータ23-5，1993. 5

平成5年度の自治省情報化関連重点施策について（特集 地域情報化の展望），牧野清文地方自治コンピュータ23-1，1993. 1

自治省の地域情報化施策—電気通信格差是正事業を中心として（特集 各省庁の情報化施策），古川康，地方自治コンピュータ22-7，1992. 7

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行政情報化の推進状況の概況，安藤大介，月刊L A S D E C [地方自治情報誌] 35-2，2005. 2

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行政情報化の推進状況の概況<T o p i c s>，田浦武徳，地方自治コンピュータ 32-2，2002. 2

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行政情報化の推進状況の概況<T o p i c s>，今道雄介，地方自治コンピュータ31-1，2001. 1

転換期を迎えた地域情報化—新たな環境変化を踏まえた幾つかの提言，小林宏一，地方自治コンピュータ30-7，2000. 7

農村情報化ハンドブック/ 農林水産大臣官房企劃室情報化對策室 監修. 農林統計協會, 1988.

마. 독일문헌

Anika D. Luch, Sönke E. Schulz, eDaseinsvorsorge - Neuorientierung des überkommenen (Rechts-)Begriffs „Daseinsvorsorge“ im Zuge technischer Entwicklungen?MMR 2009, 19

Arnhold, Katja 2003: Digital Divide. Zugangs oder Wissensklufft, Munchen: Verlag Reinhard Fischer.

Baumgartner, Christian 2001: Kampf gegen die digitale Spaltung. Web-Loser als Hemmschuh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Neue Zuricher Zeitung, 16.05.2001, S.10.

Deutscher Bundestag 2000: 14. Wahlperiode (06.12.2000), Bericht der Bundesregierung "Politik fur landliche Raume - Ansätze fur eine integrierte regional und strukturpolitische Anpassungsstrategie", Drucksache Nr. 14/4855, Berlin.

Exler, Andrea 2000: Deutschland droht digitale Spaltung, Suddeutsche Zeitung, 25.08.2000, S. 6.

Gehrke, Gernot; Andrea Koenen; Bertram Konert; Thomas Tekster (2004): Empfehlungen zur erweiterten "Digitalen Integration": 10-Punkte-Katalog, <http://www.digitale-teilung.de/content/empfehlung>

Gerhards, Maria/Mende, Annette 2008: Ein Drittel der Deutschen bleibt weiter offline. In: Media Perspektiven Nr. 7, S. 365-376.

Gorsler, Daniela 2002: Informelle raumliche Planung: Stand der aktuellen Forschung und Forschungsbedarf, Hannover (=Akademie fu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ARL-Arbeitsmaterial Nr. 286)

Groebel, Jo, Gehrke Gernot (Hrsg.) 2003: Internet 2002: Deutschland und die Digitale Welt. Internetnutzung und Medieneinschätzung in Deutschland und Nordrhein-Westfalen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Schriftenreihe Medienforschung der LfM, Band 46, Opladen. Leske und Buderich. 23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Hahn, Herwig, Preus, Hans-Joachim 1994: Regionalplanung in der landlichen Entwicklung (= Materialien des Zentrums für regionale Entwicklungsforschung Giessen, Nr. 31), Giesen.

Hahne, Ulf 2009: Zukunftskonzepte für schrumpfende ländliche Räume. Von dezentralen und eigenständigen Lösungen zur Aufrechterhaltung der Lebensqualität und zur Stabilisierung der Erwerbsgesellschaft, in: Neues Archiv für Niedersachsen. Zeitschrift für Stadt-, Regional- und Landesentwicklung. Heft 1/2009. Hannover, S. 2-25.

Jackel, Michael/ Lenz, Thomas/ Zillien, Nicole 2005: Die regionale digitale Spaltung. Eine empirische Studie zu Unterschieden in der Internetnutzung in Stadt und Land. Trier: ceb-Schriftenreihe zum E-Business, Band 4.

Jackel, Michael; Lenz, Thomas; Zillien 2005: Nicole Stadt-Land-Unterschiede der Internetnutzung .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der regionalen digitalen Spaltung. In: merz | medien + erziehung | zeitschrift für medienpädagogik 6 (2005), S. 17-28.

Lachmayr, Norbert 2003: Digitale Divide und kommerzielle Internetcafes. Utopie der unbeschränkten Zugangsmöglichkeiten, Wien, 3s Verlag.

Langer, Christian 2007: Digitale Spaltung : eine kritische Analyse, Saarbrücken : VDM Müller.

Lanzke, Stephan, Digitale Spaltung und Regionalentwicklung in ländlichen Räumen, Dissertation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2011

Matthias Freund, Die Überbrückung des „Digital Divide“ – Telekommunikations-Universaldienstkonzepte in Asien und Europa, MMR 2002, 666

Nora, Simon und Alain Minc, Die Informatisierung der Gesellschaft, Campus-Verlag 1979.

Rotzer, Florian, Anmerkungen zur digitalen Spaltung. In: Roters, Gunnar; Turecek, Oliver; Klingler, Walter (Hrsg.) 2003: Digitale Spaltung. Informationsgesellschaft im neuen Jahrtausend - Trends und Entwicklungen, Berlin, Vistas-Verlag.

Schleife, Katrin 2008: Empirical Analyses of the Digital Divide in Germany. Age specific and Regional Aspects, Darmstadt.

Spellerberg, Annette 2008: Ländliche Räume in der hoch technisierten Dienstleistungsgesellschaft: mittendrin oder ausen vor?, in: Barlosius, Eva, Neu, Claudia (Hrsg.), Peripherisierung . eine neue Form sozialer Ungleichheit?

TMS Emnid 2008: (N)Onliner-Atlas 2008. Eine Topographie des digitalen Grabens durch Deutschland. Nutzung und Nichtnutzung des Internets, Strukturen und regionale Verteilung. Inklusive der Sonderstudie "Online-Banking - Mit Sicherheit! Vertrauen und Sicherheitsbewusstsein bei Bankgeschäften im Internet", Bielefeld.

Zillien, Nicole 2009: Digitale Ungleichheit. Neue Technologien und alte Ungleichheiten in der Informations- und Wissensgesellschaf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Zwiefka, Natalie 2007: Digitale Bildungskluft. Informelle Bildung und soziale Ungleichheit im Internet. Reihe INTERNET Research, Band 28. München: Verlag Reinhard Fischer.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마. 미국문헌

Lennard G. Kruger, Broadband Internet Access and the Digital Divide: Federal Assistance Program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7-5700(August 1, 2012)

Curt Stamp, Left Behind: The Lack of Advanced Telecommunication Service in Rural America and Its Strain on Rural Communities-Policy Options f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7 Drake J. Agric. L. 645(2002)

바. 프랑스 문헌

La diffusion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2009)

Auteur(s) :

CENTRE DE RECHERCHE POUR L'ETUDE ET L'OBSERVATION DES CONDITIONS DE VIE (France); FRANCE. Conseil général de l'industrie, de l'énergie et des technologies; FRANCE.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

Appui méthodologique à l'évaluation du développement des zones rurales - Fascicule 1 : diagnostic des espaces ruraux

Auteur(s) : France.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 Pêche

Éditeur :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 pêche

Année de remise : 2006



부 록

1. 법률(안)
2. 시행령(안)
3. 시행규칙(안)
4. 법령(안) 3단비교

부록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부록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화 촉진의 추진체계

제6조(정책의 관장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9조(정보화촉진위원회)

제10조(정보화촉진전문위원회)

제11조(정보화책임관)

제3장 정보화 기반 구축

제12조(정보의 관리)

제13조(정보의 수집)

제14조(정보의 보호)

제15조(정보의 공동 활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제16조(표준화)

제17조(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

제18조(정보화교육)

제19조(정보화 실태조사)

제20조(국제협력)

제21조(정보화 재원)

제4장 정보화 촉진 사업

제22조(정보화 사업의 추진)

제23조(정보 시스템의 운영)

제24조(소프트웨어 개발)

제25조(콘텐츠 개발)

제26조(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 촉진)

제27조(정보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 활성화)

제28조(농식품 전자거래 활성화 지원)

제29조(정보화 사업 평가)

제5장 농촌 정보화 촉진

제30조(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원)

제31조(정보격차의 해소)

제32조(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

제33조(농업인에 대한 통신비용 감면)

제34조(무료 무선데이터전송구역 확대를 위한 지원)

제6장 보칙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농식품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업·농촌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정보화
2. 농식품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하는 정보화
3. 농식품업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4. 정보자원의 낭비와 중복을 방지하는 체계적·종합적 정보화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으로 정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농산물로서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것과 그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을 말한다.
4. “식품산업”이란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또는 이러한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농식품업”이란 농업과 식품산업을 말한다.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농식품업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 또는 농촌에서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보 통신기술 융복합”이란 농식품업과 정보 통신기술을 융복합함으로써 농식품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보격차”란 농업·농촌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0.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이란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3.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가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정보화 추진의 추진체계

제6조(정책의 관장 등)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 촉진에 관한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촉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보화 촉진의 기반조성
3. 각 분야별 정보화 촉진
4.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고도화
5. 정보의 체계화·표준화
6. 정보의 상호 운용성 확보
7. 정보격차 현황조사 및 그 정보격차의 해소
8. 정보화 촉진에 관한 재원의 조달·운용
9. 그 밖에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당년도 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화촉진위원회) ①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보화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정보화 법령의 제·개정
3. 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변경
4. 중요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선정 및 지원
5.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계 종사자로서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생산자단체의 대표 또는 농업인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보화촉진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나 정보 통신기술 융복합,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등 중요한 정보화 정책을 검토·자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분야별 정보화촉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보화책임관 또는 해당분야 공무원
2.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이하 “농업등 정보”라 한다)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정보화 촉진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2. 정보화 예산 수립 및 조정
3.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4.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보화 추진
5. 농림축산식품부와 다른 기관 사이의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연계·조정
6. 그 밖에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촉진 정책의 조정 또는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할 수 있고, 책임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책임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보화 기반 구축

제12조(정보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등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농업등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의 수집)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등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업 관련 사업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농업경영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농업경영체 또는 기업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의 보호) ① 농업등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등 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의 공동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등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등 정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교류·확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상호 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화와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 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단체·기업 등을 정보화 기초연구 개발·선도모델 발굴 및 테스트베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된 기술 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시설·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화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보화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정보화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지수(이하 “정보화지수”라 한다)를 개발·공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보화지수 측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제협력)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등 정보 및 정보화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정보화 자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 촉진 사업

제22조(정보화 사업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의 기술동향과 투자방향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 시스템의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업등 정보를 관

장하는 공공기관은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효율적 가공·활용과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소프트웨어 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를 위하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단체·기업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콘텐츠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을 비롯하여 농업등 정보를 콘텐츠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융복합모델 연구·개발 및 보급
2. 융복합지원센터 운영
3. 융복합 기기 및 서비스 표준화
4. 융복합 기술 전문인력 양성
5. 융복합 관련 기관 및 국제협력 지원
6. 통계자료 작성·제공
7.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 촉진과 관련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정보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 활성화)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정보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보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농식품 전자거래 활성화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비용절감 및 운용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정보화 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정보화 정책 및 정보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농촌정보화 촉진

제30조(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그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정보격차의 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주민이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보화가 시

급하게 필요한 지역을 ‘정보화 촉진 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농업인에 대한 통신비용 감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한 통신비용 감면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4조(무료 무선데이터전송구역 확대를 위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주민이 무선데이터전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의 효과적 촉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부록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제2조(농업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제4조(정보화촉진위원회의 위원장)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정보화촉진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의 회의)

제8조(수당의 지급)

제9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구성·운영)

제10조(협회의 임무)

제11조(협회의 보고 등)

제12조(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 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제13조(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제14조(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15조(정보화촉진 관련 사업자 지원)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산업
2. 농업자재산업
3. 농업시설산업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조 제11호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2. 산림청
3. 농림축산검역본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 농식품공무원교육원
6. 한국농수산대학
7. 국립종자원
8.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 한국마사회
11.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12. 축산물품질평가원
13.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1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정보화촉진위원회의 위원장)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화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정보화촉진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정보화촉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회의)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구성·운영) ①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협의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간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 1. 정보화 목표 및 비전 설정
- 2. 정보화 정책
- 3.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 4.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 활용
- 5. 여러 공공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보고 등) ① 협의회 위원장은 제10조에 의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라.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정보 통신기술 융복합 분야의 전문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 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컨설팅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전문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 2. 전문기관 사업의 범위와 내용

제13조(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2. 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보 통신기술 융복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금의 지원

제14조(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시·군에 비하여 정보화 현황이 열악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군 또는 그 시·군의 일부 지역을 정보화 촉진 지역으로 지정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의 정보화 촉진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화 촉진 지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촉진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정보화 사업의 우선적 추진
 - 2. 정보화 촉진 지역 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3. 그 밖에 정보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우선적 추진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촉진 관련 사업자 지원) ① 제1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 2.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
 - 3.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신비용 감면 계획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해당 사업자의 통신비용 감면율
 - 2. 해당 사업자가 산정한 전기통신설비 설치비용의 합리성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 제2항 정보 교류·확대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무
3. 법 제23조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출연이나 보조 사무
5.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사무

부록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부록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제2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제4조(실태조사)

제5조(평가의 종류)

제6조(자체평가)

제7조(종합평가)

제8조(평가의 시기)

제9조(평가의 기준)

제10조(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1조(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식품업 생산 정보
2. 농식품업 병해충 및 질병정보
3. 농식품 유통 정보
4. 농식품업 경영정보
5. 농업 기상정보
6. 농자재 정보
7. 농식품업 정책정보
8. 농식품 소비 정보
9. 농식품업 관측 정보
10. 그 밖에 농식품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보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1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 촉진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 실태 및 통계
2. 정보화 인적자원
3. 정보화 인프라
4. 표준화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보화 실태조사는 농업경영체 간 정보화 수준 비교에 도움이 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평가의 종류) 법 제29조에 따른 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제6조(자체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화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
2. 제출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전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공기관은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 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평가의 시기) 법 제29조에 따른 정보화 평가는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당연도의 전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 사업을 지정하여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평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기획의 타당성
2. 사업 집행의 효율성
3.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성과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업무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자문위원회는 정보화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임한다.

제11조(전문평가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2. 제5조에 따른 자체평가 지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부록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3단 비교

부록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3단 비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농식품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업·농촌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정보화 2. 농식품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하는 정보화 3. 농식품업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4. 정보자원의 낭비와 중복을 방지하는 체계적·종합적 정보화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제2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

<p>제1호 가목으로 정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p> <p>2. “농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 <p>3. “농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농산물로서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것과 그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p> <p>4. “식품산업”이란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또는 이러한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p> <p>5. “농식품업”이란 농업과 식품산업을 말한다.</p> <p>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p>	<p>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기계산업 2. 농업자재산업 3. 농업시설산업 <p>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조 제11호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진흥청 2. 산림청 3. 농림축산검역본부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 농식품공무원교육원 6. 한국농수산대학 7. 국립종자원 8.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 한국마사회 11.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2. 축산물품질평가원 13. 농림수산물식품교육 	<p>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식품업 생산 정보 2. 농식품업 병해충 및 질병정보 3. 농식품 유통 정보 4. 농식품업 경영정보 5. 농업 기상정보 6. 농자재 정보 7. 농식품업 정책정보 8. 농식품 소비 정보 9. 농식품업 관측 정보 10. 그 밖에 농식품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보 <p>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1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p>
--	---	--

<p>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농식품업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 또는 농촌에서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p> <p>8. "정보 통신기술 융복합"이란 농식품업과 정보 통신기술을 융복합함으로써 농식품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p> <p>9. "정보격차"란 농업·농촌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p> <p>10.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p> <p>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이란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문화정보원</p> <p>1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p> <p>1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p>1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p> <p>13.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가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p>		
<p>제2장 정보화 촉진의 추진체계</p> <p>제6조(정책의 관장 등)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 촉진에 관한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p>		

<p>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p> <p>② 기본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화 촉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보화 촉진의 기반조성 3. 각 분야별 정보화 촉진 4.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고도화 5. 정보의 체계화·표준화 6. 정보의 상호 운용성 확보 7. 정보격차 현황조사 및 그 정보격차의 해소 8. 정보화 촉진에 관한 재원의 조달·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p>9. 그 밖에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당년도 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정보화촉진위원회) ①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보화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정보화 법령의 제·개정 3. 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변경 4. 중요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선정 및 지원 5.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p>제4조(정보화촉진위원회의 위원장) ① 법 제9조에 따른 정보화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p>	

<p>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p> <p>2.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계 종사자로서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3. 생산자단체의 대표 또는 농업인</p> <p>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위원회의 회의)</p> <p>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0조(정보화촉진전문위원회)</p> <p>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등 중요한 정보화 정책을 검토·자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분야별 정보화촉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관리실장이</p>	<p>제6조(정보화촉진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정보화촉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p> <p>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p>	

<p>되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정보화책임관 또는 해당분야 공무원</p> <p>2.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p> <p>④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전문위원회의 회의)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8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이하 “농업등 정보”라 한다)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정보화 촉진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p>	<p>제9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구성·운영) ①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협의회는 농업·농촌</p>	

<p>· 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p> <p>②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2. 정보화 예산 수립 및 조정 3.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4.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보화 추진 5. 농림축산식품부와 다른 기관 사이의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연계·조정 6. 그 밖에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p>③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촉진정책의 조정 또는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할 수 있고, 책임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책임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및 식품산업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p> <p>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p> <p>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간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다.</p> <p>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p> <p>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화 목표 및 비전 설정 2. 정보화 정책 3.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4.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 활용 5. 여러 공공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p>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1조(협의회)의 보고 등) ① 협의회 위원장은 제10조에 의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하여금 세부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3장 정보화 기반 구축</p> <p>제12조(정보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등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농업등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3조(정보의 수집)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등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p>		

<p>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업 관련 사업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농업경영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농업경영체 또는 기업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4조(정보의 보호) ① 농업등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농업등 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5조(정보의 공동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등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농업등 정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교류·확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p>		
<p>제16조(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상호 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p>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p>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화와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 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7조(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단체·기업 등을 정보화 기초연구 개발·선도모델 발굴 및 테스트베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된 기술 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시설·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8조(정보화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9조(정보화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지수(이하 “정보화지수”라 한다)를 개발·공표할 수 있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보화지수 측정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조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 촉진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p>② 실태조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화 실태 및 통계 2. 정보화 인적자원 3. 정보화 인프라 4. 표준화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p>사항</p> <p>③ 정보화 실태조사는 농업경영체 간 정보화 수준 비교에 도움이 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p>
<p>제20조(국제협력)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등 정보 및 정보화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21조(정보화 재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p>		

원을 요청할 수 있다.		
<p>제4장 정보화 촉진 사업</p> <p>제22조(정보화 사업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의 기술동향과 투자방향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3조(정보 시스템의 운영)</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업 등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효율적 가공·활용과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4조(소프트웨어 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를 위하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p>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단체·기업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제25조(콘텐츠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을 비롯하여 농업등 정보를 콘텐츠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6조(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융복합모델 연구·개발 및 보급 2. 융복합지원센터 운영 3. 융복합 기기 및 서비스 표준화 4. 융복합 기술 전문인력 양성 	<p>제12조(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p>	

<p>5. 융복합 관련 기관 및 국제협력 지원</p> <p>6. 통계자료 작성·제공</p> <p>7.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 촉진과 관련된 사항</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갖춘 기관을 말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일 것</p> <p>가. 국공립연구기관</p> <p>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p> <p>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p> <p>라.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분야의 전문기관</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p> <p>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p> <p>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	---	--

	<p>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컨설팅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전문기관 사업의 범위와 내용 <p>제13조(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정보통신기술과 농식품업의 융복합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 	
--	--	--

	<p>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p> <p>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금의 지원</p>	
<p>제27조(정보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 활성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정보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28조(농식품 전자거래 활성화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비용절감 및 운영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9조(정보화 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평가를</p>		<p>제5조(평가의 종류) 법 제29조에 따른 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p>

<p>실시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정보화 정책 및 정보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구분한다.</p> <p>제6조(자체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화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사업 2. 제출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전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공기관은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종합평가) ① 농</p>
---	--	---

	<p>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8조(평가의 시기) 법 제29조에 따른 정보화평가는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전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 사업을 지정하여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p> <p>제9조(평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기획의 타당성 2. 사업 집행의 효율성 3.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성과
--	--

	<p>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p> <p>제10조(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평가업무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평가자문위원회는 정보화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한다.</p> <p>③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선임한다.</p> <p>제11조(전문평가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보화 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전문평가기관은 다</p>
--	---

		<p>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2. 제5조에 따른 자체 평가 지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p>제5장 농촌정보화 촉진</p> <p>제30조(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31조(정보격차의 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 주민이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2조(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가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을 ‘정보화 촉진 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시·군에 비하여 정보화 현황이 열악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군 또는 그 시·군의 일부 지</p>	

	<p>역을 정보화 촉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의 정보화 촉진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화 촉진 지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화 촉진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화 사업의 우선적 추진 2. 정보화 촉진 지역 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그 밖에 정보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우선적 추진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p>	
--	---	--

	<p>관은 정보화 촉진 지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p>	
<p>제33조(농업인에 대한 통신비용 감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한 통신비용 감면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p>	<p>제15조(정보화촉진 관련 사업자 지원) ① 제1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2.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 3.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신비용 감면 계획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자의 통신비용 감면율 2. 해당 사업자가 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정한 전기통신설비 설치비용의 합리성	
제34조(무료 무선데이터전송구역 확대를 위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주민이 무선데이터전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의 효과적 촉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 제2항 정보 교류·확대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무 3. 법 제23조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 제3항	

	에 따른 출연이나 보조 사무 5. 법 제26조 제2항 에 따른 지원 사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